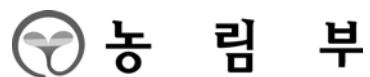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2007. 4.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





# 목 차

제 I 장 총괄편 .....	1
1. 2007년도 시행계획 개요 .....	3
가. 추진배경 .....	3
나. 2007년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4
2. 2007년도 주요 추진목표 .....	5
3. 2007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방향 .....	7
가. 복지기반 확충 .....	8
나. 교육여건 개선 .....	14
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	18
라.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	26
4. 2007년도 투융자 계획 .....	31
5. 점검·평가 .....	32
6. 기대효과 .....	33

## < 참고 >

-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사업별 투융자 계획

제Ⅱ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	47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	49
가.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49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51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	53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	55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57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59
나. 농산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	61
1-2-1-1. 농산어촌지역 응급지역 인프라 확충 .....	63
1-2-1-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66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69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	71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환경개선 .....	74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77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	80

다.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강화 .....	83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	85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87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 .....	89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	95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	97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	100
1-3-3-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	103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	106
1-3-5-2. 여성농업인 생산제춤 품질향상 지원 .....	108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111
라.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	113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 .....	115
1-4-2-3.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	117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	120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124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	126
가.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	126
2-1-1-1.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 .....	128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	130
2-1-2-1. 학교군 구성·운영 .....	132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134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동화 지원 .....	137
2-1-3-5.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 지원 .....	140
2-1-4-1.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	143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145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147
나.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 .....	150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52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154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지원 .....	156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	158
2-2-3-2. 자영 농업계고 급식비 지원 .....	160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	162
2-2-3-2.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	164
다.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	167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	169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	170
2-3-2-2. 교직원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	172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	174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	177
가. 인적역량 강화 .....	177
3-1-1-0.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	178
나.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 개발 .....	180
3-2-1-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182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	185
3-2-1-3.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188
3-2-2-1. 소도읍 육성사업 .....	191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	193
다. 기초생활여건 개선 .....	196
3-3-1-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201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	205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	208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	210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	212
3-3-2-4. 소하천 정비사업 .....	214
3-3-2-5.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	218
3-3-2-6. 농촌폐기물 수거비 지원 .....	220
3-3-2-7. 다목적 인양기설치 지원 .....	223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구매사업 .....	225
3-3-2-9. 양식어장 정화사업 .....	227

3-3-2-10.	해수욕장 주변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	229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사업	232
3-3-3-1.	농어촌도로 정비	234
3-3-3-2.	교통서비스 강화	236
3-3-3-3.	국고여객선 건조	238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40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42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245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248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50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252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254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57
3-3-5-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261
3-3-5-7.	산림박물관 건립	263
3-3-5-8.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265
3-3-6-1.	정보화마을 조성	267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270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272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274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276
3-3-7-3.	농어업관련 정보제공 확대	278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	281
가. 향토산업의 진흥 .....	281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	283
4-1-1-2. 향토산업 육성 .....	285
4-1-1-3.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	288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292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	294
나.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구축 및 활성화 .....	297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299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302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	305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	308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	311
4-2-1-6.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수목원조성 .....	314
4-2-1-8.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	320
4-2-1-10.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	322
4-2-1-11. 해양관광자원 개발 .....	324
4-2-2-1. 도농교류 페스티벌 개최 .....	327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 .....	329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	332

다.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	335
4-3-1-0. 경관보전 직불제 .....	337
4-3-2-1.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기반 기술구축.....	340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343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 · 보급 .....	346
4-3-4-0. 자생식물단지 조성 및 생태숲 조성 .....	348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351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353
라. 도 · 농교류 활성화 .....	357
4-4-1-0. 1사1촌운동 .....	359
4-4-2-0.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 .....	362
4-4-3-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	365
4-4-3-3.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	367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370

# 제 I 장 총괄편



# 1. 2007년도 시행계획 개요

## 가.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서 인구와 소득원이 적은 농산어촌의 지속적 발전과 활력증진이 중요
  - 농산어촌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의 악화 등으로 활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 이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을 통한 농산어촌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04.3.5 공포, 6.6. 시행)하여 법적기반 마련
- 정부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개발 정책을 포괄하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05~'09) 기본계획을 수립 ('05.4)
  -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농산어촌 지원 사업들을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계획에 종합하여 체계화
-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관계부처별로 업무소관에 따라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 '05년도 시행계획 수립('05.6) 이후 '07년에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기본계획 투융자의 효율성과 계획추진의 신뢰제고를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운영

◇ 법적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6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나. 2007년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07년은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의 시행 3차년도로서 삶의질향상 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코자 함
  - 각 부처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07년도 사업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07년도 시행계획의 대상사업은 15개 중앙행정기관 (12개부처, 3개청)에서 수행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113개 사업임
  - 예산사업 107개, 비 예산사업 6개 등
- '07년부터 새롭게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세부추진과제에 포함된 13개 사업은 관계부처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도모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등 신규사업은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 금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08년 상반기중 점검·평가하여 이를 '09년 예산에 반영
  -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점검·평가단의 현지점검 등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사전점검 실시

## 2. 2007년도 주요 추진목표

비 전	◇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 조성
--------	---



		최종목표 (2009)	2006년까지 실적	2007년 추진목표	
'07 년 목 표	복지 기 반 확 충	사회안전망 확 충	○ 건강보험료 경감율 : 50% ○ 연금보험료 지원등급 : 18등급 - 최고 지원액 : 394천원/년인	○ 50% ○ 13등급 - 259천 원	○ 50% ○ 14등급 - 281천 원
		보건·의료 기반확충	○ 보건(지)산증축 : 2,243개소 ○ 건강관리실 설치 : 1,436개소	○ 1,604개소 ○ 1,150개소	○ 250개소(1,854) ○ 192개소(1,342)
		여성 및 노인 복지기반 확충	○ 보육시설 확충 : 722개소 ○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 163개소 ○ 재가노인복지센터 : 202개소	○ 377개소 ○ 38개소 ○ 90개소	○ 37개소(414) ○ 1개소(39) ○ 14개소(104)
	교육 여 건 개 선	학 생 의 교육기회 강화	○ 우수교 육성 : 88개교 ○ 학교군 구성 : 86개	○ 44개교 ○ 20개	○ 88개교(44) ○ 20개(40)
		교 육 비 부담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	○ 고교생 학자금 지원 : 458천명 ○ 대학생 학자금 지원 : 48천명/연간	○ 205천명(누계) ○ 25천명/연간	○ 99천명(전농가) ○ 26천명/연간

		최종목표(2009)	2006년까지 실적	2007년 추진목표	
'07 년 목 표	농산어촌 지역 개발 추진	인적자원 개발	○ 지역개발 교육 10,890명 ○ 지역개발 新직업군 활성화	○ 3,965명 ○ 100명	○ 3,400명(7,365) ○ 150명(250)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 생활권별 종합개발 - 농촌 : 276개 권역 - 어촌 : 190개 권역 - 산촌 : 188개 권역	○ 생활권별 - 농촌 : 56개 - 어촌 : 152개 - 산촌 : 138개	○ 생활권별 - 농촌 : 40개(96) - 어촌 : 24개(176) - 산촌 : 33개(171)
		기초생활 여건개선	○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 347개소 ○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 6,251개소 ○ 면단위 하수처리장 : 394개소	○ 226개소 ○ 5,364개소 ○ 115개소	○ 22개소(248) ○ 252개소(5,616) ○ 14개소(129)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향토산업의 진 흥	○ 농공단지 354개소	○ 322개소	○ 7개소(329)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 축	○ 체험마을 687개 육성	○ 373개	○ 131개(504)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 경관보전직불 2,800ha	○ 470ha	○ 800ha
		도농교류 활 성 화	○ 1사1촌 자매결연 실적 : 13,500마을	○ 12,100마을	○ 400마을(12,500)

- ※ 1. 2009년 목표는 누계기준임  
2. ( )는 '07년까지 누계임



### 3. 2007년도 부문별 주요 추진방향

- ◇ 고령화·이농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에 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기초생활비 부담을 줄여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확대, 농어업재해보상 지원 강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대 등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건강관리실 확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 ◇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
  - 우수고교 육성,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등 교육기회 확대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와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 등 농림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
  
- ◇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중소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고, 농어촌을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
  - 문화·체육시설, 정보화 인프라,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보완 추진
  - 읍·면 등 중심지와 인구유지, 소득창출이 가능한 배후마을들을 연계한 종합개발 지속 추진
  
- ◇ 향토산업 육성, 농어촌관광기반 확충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등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기반 확충 지원

## 가. 복지기반 확충

### (1)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를 통하여 농산어촌의 사회안전망을 점진적으로 확충

#### □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특별지원 확대

##### ○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로 유지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 건강 보험료 경감 지원율 : ('06) 50% → ('07) 50%
- 가구당 연간 평균 경감액 : ('06) 420천원/년 → ('07) 426천원/년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06.7), 보험료 지원 대상지역 확대

- 취약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림어업인을 지원대상에 포함

#### □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 표준소득월액 14등급을 기준으로 동 등급이하인 농어민에게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률지원하며, 14등급을 초과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14 등급 연금보험료의 50%를 정액지원

- 지원 표준소득 월액 등급 : ('06) 13등급 → ('07) 14등급
- 1인당 연간 보험료 최고 지원액 : ('06) 259천원/년 → ('07) 281천원/년

\* 지원인원 ('07년 기준) : 275천명

## □ 농어업 재해보상 지원 강화

○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협 안전공제의 보상 수준 및 가입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장해 공제금과 사망 공제금을 대폭 확대하여 사고에 대한 대비 강화

· 사망공제금 : ('06) 25백만원 → ('07) 35백만원

· 1급 장해 공제금 : ('06) 25백만원 → ('07) 35백만원

· 기타재해 사망공제금 : ('06) 3백만원 → ('07) 5백만원

- 농업인들의 농협 안전공제 가입률을 51% 수준으로 제고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농업인 가입율 : ('06) 37% → ('07) 51%

※ 농어업인들이 가입하는 농작업 안전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제도의 가입율을 74%까지 제고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홍보 강화를 통해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 및 가입율 제고 추진

· 어선원의 보험 가입율 : ('06) 74% → ('07) 76%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율 유지

·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국고지원율 : ('06) 60% → ('07) 60%

※ 30톤 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국고보조

## □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적용 확대를 통한 영세농업인의 기초생활 보장 강화

○ 농어업인 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재산평가에서 농업인 가구의 지출 요인 인정 및 기준완화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 강화

## (2) 농산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 보강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고 및 농작업 관련 질환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 확충

### □ 농산어촌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을 대상으로 군지역당 1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응급의료인프라 구축비 지원
  - 39개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 및 시설·장비 보강 비용 지원
  - ('06) 27개소 → ('07) 39개소 (기존 27개소 포함)

### □ 공공 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기능보강 및 서비스 확충
  - 시설 지원 : ('06) 217개소 → ('07) 250개소
  - 의료·전산장비 지원 : ('06) 95개소 → ('07) 419개소
  - 차량지원 : ('06) 19개소 → ('07) 21개소

### □ 농산어촌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고령화되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
  - ('06) 158개소 → ('07) 192개소 (총 1,342개소 설치완료)
  - \* 건강관리실 시설 :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기구, 찜질방, 건강측정기구 등

### (3)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강화

◇ 농산어촌 여성, 영유아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창업지원 확대

#### □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민간보육시설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농산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대상 : ('06) 27개소 → ('07) 37개소
- 산재된 농림어가 및 농림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보육, 휴일 운영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도입 추진

#### □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취학유예 만6세) 양육비 지원 대상을 경지면적 5.0ha미만 농림어업인에게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단가의 70%까지 지원 확대
  - 지원범위 : ('06) 5.0ha미만, 0~5세, 27천명 → ('07) 5.0ha미만, 0~취학유예 만6세, 30천명
  - 지원금액 : ('06) 정부보육료의 50%, 2,100천원/년(월 175천원)→ ('07) 정부보육료의 70%, 3,036천원/년(월 253천원)
  - ※ 지원금액은 0세아 기준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대상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만0~5세 및 취학유예 만6세)를 둔 농림어업인에게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단가의 35%를 지원

- 지원범위 : ('06) 5.0ha미만, 0~5세, 48천명 → ('07) 5.0ha미만, 0~취학  
유예 만6세, 46천명
- 지원금액 : ('06) 정부보육료의 25%, 1,050천원/년(월 87.5천원)→ ('07)  
정부보육료의 35%, 1,512천원/년(월 126천원)

※ 지원금액은 0세아 기준

##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등 중소농 지원 확대

-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농업인의 영농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범위 확대
  - 지원범위 : ('06) 3.0ha미만, 65세미만, 4천명 → ('07) 5.0ha미만, 69세  
이하, 8천명
  - 지원금액 : ('06) 사고농가당 농촌평균임금(남자 57천원, 여자38)의 70%인  
남자 40천원, 여자 26천원 → ('07) 사고농가당 농촌평균임금  
50천원의 70%인 35천원, 10일 이내, 민간보조
- 농촌 고령·편조손 가구 또는 사고농가 등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범위 : ('06) 12천명 → ('07) 15천명, 65세이상 농촌 고령단독·  
편조손 농가 또는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지원금액 : 자원봉사자 10천원/일, 민간보조

#### (4)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 농산어촌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보호 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 확충

□ 농산어촌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치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보호 욕구를 해소하고자 가정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편재 해소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 ('06) 90개소 → ('07) 104개소 (신규 14)

□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보호체계 기반 조성

○ 농산어촌 지역내에 건강·장수마을 50개소 신규 조성 (계속 300)

- 농산어촌 노인에게 농업·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 발굴과 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 체계적 실천방안 지원

·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 제공 등으로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도모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 확충

○ 10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72세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소유농지를 완전 탈농 조건으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사업물량 : ('07계획) 2,000ha

## 나. 교육여건 개선

### (1).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 우수고교 집중 육성,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교육기회 제공

#### □ 농산어촌 우수고교 44개소 신규 육성

- 농산어촌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교단계에서 이촌향도 예방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자율권 부여,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원어민 강사 지원, 다목적실, 특별실, 어학실, 기숙사 설치와 장학금 지원 등 혜택부여
- 향후 1군에 1 우수고교를 선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모델 정착
  - 우수고교 육성 : ('06) 44개교 → ('07) 88개교 (신규 44개교)

#### □ 농산어촌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내실화

- 농산어촌 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하여 지역 사회 및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농수산계고의 학과개편과 이에 따른 시설 및 기자재 구입 지원 등

#### □ 학교군 구성·운영으로 소규모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 통학거리내에 있는 인근 2~3개의 소규모학교를 하나의 학교군 (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교육인력 및 시설 공동운영으로 교육의 질 제고
  - 학교군 구성 : ('07) 20개 학교군



□ 한국농업전문학교 내실화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후계 농업인 육성

-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따른 관련분야 학과신설 및 장기현장 실습 교육 내실화

□ 농산어촌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복식수업 운영을 지원체제 마련으로 소규모학교 활성화 지원

- E-learning 지원등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형의 교육자료 개발 보급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풀제 활용, 지역사회 문화시설과 문화자원 활용 및 교재·교구 지원 등을 통한 방과 후 교육 활성화로 농산어촌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 등 교육기회 확대

- 방학캠프 운영지원

- 면 지역이하 초등학생의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방학캠프 운영 지원  
· 대상학교 : ('07) 2,000개교

□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을 위한 교실 개·보수비 지원

- 지원규모 : ('07) 30학급

-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

- 만 5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

- 지원인원 : ('06) 142천명 → ('07) 152천명

- 만3,4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

- 지원인원 : ('06) 155천명 → ('07) 168천명

## (2)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

◇ 고교생,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농림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 확대

###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전 농어가로 확대 ('05이후)

- 지급대상 확대 : ('06) 98천명 → ('07) 99천명
- 지원단가(인문계 기준) : ('06) 843천원/년 → ('07) 926천원/년

###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지원인원 : ('06) 연간 25천명 → ('07) 연간 26천명(학기당 13천명)
  - 지원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농림어업인 자녀인 성적우수·저소득층 자녀 및 농과대 영농종사 희망자 학자금 보조 지원
  - 지원인원 : ('06) 연간 6,000명 → ('07) 연간 6,500명

### □ 농산어촌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 농산어촌 학교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06) 779천명 → ('07) 724천명
- 전국의 자영농·수산계 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 지원단가 : ('07) 3,090원/일, 1인당 연간지원일수 260일
  - 지원대상 : ('06) 2,854명 → ('07) 3,042명

### □ 농산어촌 특수 교육 지원

-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60개소의 순회교육비 등 운영비 지원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 등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와 특수교육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 지원

### (3)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 농산어촌 학교에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정보화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 추진

#### □ 농산어촌학교 우수교원 확보

- 유능한 교장을 농산어촌 학교에 초빙하고 희망교원에 대하여는 농산어촌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내실화 도모
  - 교장 초빙·공모제를 농어촌지역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특성화 중·고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 운영 ('06년 9월, 50개교)

#### □ 농산어촌학교 순회교육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원

- 농산어촌 학교 교원중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에게 근무수당을 지원 교원사기 진작 및 우수교원 유치체제 마련
  - 지원대상('07) : 63,788명, 지원금액('07) : 50천원/월

#### □ 교직원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교원에게 주거편의 제공

#### □ 학교 도서관 및 장서확충

-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지원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 (1) 인적역량 강화

◇ 지역에서 상향식 농산어촌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및 지원시스템 마련

#### □ 농산어촌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이장 등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시행
  - 농촌지역개발 리더쉽 육성과정, 동기화 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교육과정, 동기화 과정 등
  - 세부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시행을 민간기관 중심으로 추진(위탁 방식)하여 농촌지역개발 교육시장 활성화 유도
  - 교육 실시인원 : ('06) 3,965명 → ('07) 7,365명 (신규 3,400)

#### □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이해 제고 및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 마련
- 농촌지역개발 교육생의 교육이력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풀(Pool)을 관리하는 「학적관리 및 인재뱅크시스템」 운영
- 농산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 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제도 추진
  - 지원내용('07) : 150명 지원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 (2)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

◇ 생활권별(배후마을-면소재지-소도읍) 기능과 역할에 맞는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속 추진

### □ 체계적인 농산어촌 마을권역의 종합정비로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구축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 확충,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및 지역혁신을 위한 S/W관련사업 등 지원

· 농촌마을종합개발 : ('06) 56개 권역 → ('07) 96개 권역 (신규 40개)

○ 사업권역의 중심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다수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업지원시설 및 수산물 생산·저장·유통시설 등 **소득기반시설을 집중 지원**

- 다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관광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사업을 우선 지원

· 어촌종합개발 : ('06) 152개 권역 → ('07) 176개 권역 (신규 24개)

○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녹색체험시설, 마을기획 및 운영 등을 통해 숲이 있는 귀농마을을 연계하여 추진
- 자연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 기여
- 산촌지역을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이바지
- 주민의 의욕과 참여도가 높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정비가 시급한 마을 등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
  - 산촌종합개발 : ('06) 138개 권역 → ('07) 171개 권역 (신규 33개)

## □ 주요 읍·면을 농산어촌 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읍·면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 육성**

- 성장잠재력이 높은 거점소도읍을 선정하고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으로 추진
-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복지시설을 면소재지에 집중 배치하여 중심 지역의 회복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생활편익시설, 문화·복지시설, 경관개선시설, 지역상권시설, 주민문화 활동, 지역홍보 등
  - 소도읍 육성 : ('06) 66개 지역 → ('07) 72개 지역 (신규 6개)

### (3) 기초생활여건 개선

◇ 주거, 상·하수도, 교통,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농산어촌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개선을 위해 낡고 험악하거나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방치된 빈집 정비

- 농어촌 주민의 맞춤형 주택개량을 위해 신·개축(동당 40백만원) 및 부분 개량(동당 20백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4%, 5년 거치 15년 상환

-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철거 등 지원

· 주택개량 등 : ('06) 406천동 → ('07) 417천동 (신규 11천동)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확대를 위한 10개 마을 사업추진

- 친환경적인 농촌계획으로 마을 및 농가특성에 맞춰 농촌고유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주거공간을 살린 합리적 공간정비로 농촌 주거생활의 가치 향상과 농촌체험 소비자들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 제고

- 농촌주택 리모델링 및 옥외공간 정비 등 지원

· 부엌·방의 연결, 다용도 공간 설치 등 수납공간계획에 의한 리모델링 및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주택내부 개선

· 생울타리, 건물외벽녹화 등 생태적 담장·정원 조성으로 친환경 공간확충

- 시범마을수 : ('06) 15개 마을 → ('07) 25개 마을 (신규 10개 마을)

## □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

- 면단위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확대
  -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 ('06) 226개소 → ('07) 248개소 (신규 22개소)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농산어촌의 면지역 소규모 자연마을(50호 이하)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 ('06) 5,364개소 → ('07) 5,616개소 (신규 252개소)
- 농산어촌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확대 : ('06) 115개소 → ('07) 129개소 (신규 14개소)
- 마을단위 생활오폐수를 정화로 농산어촌 하천·상수원 등의 오염방지
  - 마을하수도 정비 : ('06) 2,436개마을 → ('07) 2,751개 (신규 315개)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된 농산어촌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
  - 소하천 정비 : ('06) 13,226km → ('07) 13,459km (신규 193km)
- 매립·재활용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 비효율적인 면단위 소규모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군단위 또는 광역단위 처리시설을 유도하여 오염원 산재를 방지
  - 폐기물처리시설 수 : ('06) 130개소 → ('07) 145개소 (신규 15개)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30원/kg)으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 □ 농산어촌 도로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

- 농산어촌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정비 지속 추진
  - 농어촌도로 정비 : ('06) 19,114km(포장율 : 31.0%) → ('07) 19,569km (신규 455.9km)
- 전국 읍·면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구입자금 및 대폐차비 지원 추진 ('07 : 1,800만원/대)
- 선령 10년 이상된 노후 일반 여객선은 연차적으로 항로 특성에 맞는 차도선형 여객선 등으로 대체 추진
  - 차도선형 여객선 : ('06) 29척 → ('07) 30척 (신규 1척)
-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여건개선을 위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지원

## □ 면단위 기초생활환경 종합정비 지속 추진

-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300개면에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
  - 마을내·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 정비
  - 마을회관, 빈집정비, 소공원, 담장정비, 주택 신축·개량 등 생활환경 개선
    - 농촌정주기반 확충 : 800개면을 대상으로 실시 ('07 : 300개면)
-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낮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
  - 오지종합개발 : 361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실시 ('07 : 223개면)
  - 도서종합개발 : 410개 도서를 대상으로 실시 ('07 : 373개도서)

## □ 과학·문화·예술·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 농산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센터, 평생교육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
  - 공공도서관 : ('06) 221관 → ('07) 225개관 (신규 4개관)
- 간이 운동시설, 체력단련기구, 휴게시설, 산책로, 조깅로 등을 구비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 ('05) 5,151개소 → ('07) 5,271개소 (신규 120개소)
-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생활친화적인 과학·문화공간 조성
  - 복합문화공간 조성 : ('06) 51개소 → ('07) 66개소 (신규 15개소)
  - 테마과학관 조성 : ('06) 13개소 → ('07) 18개소 (신규 5개소)
- 산림자원의 영구보전·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박물관 건립
  - 산림박물관 : ('06) 9개소 → ('07) 10개소 (신규 1개소)
-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대규모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방문화원별(224개)로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공연·전시등의 관람, 판소리 배워보기 등 문화 체험과 향교·서원체험 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농산어촌의 정보화기반 확대

-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인프라 환경구축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대 구축
  - 초고속 인터넷망이 미구축된 50가구 미만 2,4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
-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마을에 정보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서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 추진
  - 정보화 마을 조성 : ('06) 306개소 → ('07) 338개소 (신규 32개소)
- 농업경영체의 경영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구축
  -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 ('06) 21개 → ('07) 38개 (신규 17개)
- 정보화 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에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생활 영위와 농어업정보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위한 농어업인 양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농업인정보화 교육 : ('06) 500천명 → ('07) 555천명 (신규 55천명)
  - 어업인정보화 교육 : ('06) 81천명 → ('07) 88천명 (신규 7천명)
  -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 : ('06) 265명 → ('07) 312명

## 라.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 (1) 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별 향토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제공으로 향토자원의 산업화 지원 및 이를 활용한 농공단지 개발

#### □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 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로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향토자원 발굴·DB 개발 및 산업화 모델 개발 연구 추진

####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산업화하여 1·2·3차산업이 융·복합화된 지역 전략핵심 산업으로 육성

- '07 지원대상 19개 향토자원은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08 지원대상 30개 자원에 대해서는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향토자원 발굴(매년 30개 수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농산물이의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 적극 발굴

####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2013까지 총 400개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농촌인력과 도시민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 매년 10개소 수준 준공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도개선 추진

## (2) 농산어촌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활성화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소득을 창출

### □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 농산어촌체험, 친환경농업, 전통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육성
  - 녹색농촌체험마을 : ('06) 190개마을 → ('07) 274개마을 (신규 84개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 ('06) 97개마을 → ('07) 131개마을 (신규 34개마을)
  - 문화역사마을 : ('06) 10개마을 → ('07) 12개마을 (신규 2개마을)
  - 어촌체험마을 : ('06) 76개마을 → ('07) 87개마을 (신규 11개마을)
-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체험형·문화형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산림휴양시설 확충
  - 자연휴양림 : ('06) 107개소 → ('07) 115개소 (신규 8개소)
  - 수 목 원 : ('06) 22개소 → ('07) 40개소 (신규 18개소)
- 어촌의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어항·어촌의 통합개발을 통해 고유 자원 및 특성을 활용하여 어촌관광통합모델 개발·조성
  - '07년에 19개소(어촌·어항복합공간 6개소, 다기능어항 4개소, 어촌관광단지 9개소) 공사 추진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등 실시

### □ 향토 문화관광축제 육성

-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과 문화를 연계한 지역별 대표축제 및 유망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농산어촌 관광과 연계체계 구축
  -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및 유망축제 발굴

### (3)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득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경관보전 직접지불 시범사업 추진 ('05~'07)
  -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에 경관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이행결과를 평가
  - 경관보전직불 사업량: ('06) 470ha → ('07) 800ha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 (예 :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야생화 등)

#### □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와 정책프로그램의 신규 도입 및 기존시책 조정에 관한 로드맵 마련
  - 농촌경관의 유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농촌경관지표 제정 기초 작업 수행 및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추진

#### □ 농산어촌 경관주택 및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보급

- 농촌지역의 자원권역별, 자원 기반형 공간정비시스템,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체계, 정보활용방안 및 홍보 기법 등 개발 보급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은퇴도시민, 농산어촌 주민들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관심 유도

## □ 지역별 고유경관 조성 및 생태숲 조성

-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생식물단지를 조성
  - 자생식물단지 : ('06) 2개소 → ('07) 5개소 (신규 3개소)
-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수집·증식·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숲 조성
  - 보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 생태천이 등을 고려한 생태숲 조성
  - 생태숲 조성 : ('06) 21개 → ('07) 23개소 (신규 2개소)

## □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농촌경관지표 제정·적용, 농촌경관맵 작성·활용, 경관보전 협약 체결 등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보전 개선의 기반 구축

##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 지원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휴경 촉진, 공동화, 농업인 소득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통한 특색있는 농촌개발 및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 조건불리 직불 사업량 : ('06) 173,000ha → ('07) 187,000ha

#### (4) 도·농교류 활성화

◇ 농산어촌 체험관광, 향토산업 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농교류촉진 및 도시민의 농촌생활 활성화 추진

##### □ 1社1村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및 내실화

###### ○ 1사1촌 운동의 교류성과 창출('06~08)을 위한 내실화 추진

- (사)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한 범국민적 운동 추진
- 1사1촌 교류 실태점검 강화를 통한 부실사례 정리와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차별화

###### ○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마케팅 추진

- 마을지도자, 기업·단체, 개인 등 도농교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도시와 농촌의 농촌사랑 340만 회원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다양한 교류활동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한 벤치마킹 유도

※ 1사 1촌 자매결연실적 : ('05까지) 8,677개 마을 → ('06까지) 14,498개 마을

##### □ 도농교류 활성화 및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으로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는 등 도·농간 상생 구현

- 도농교류 수요창출사업, 농산어촌체험마을 사후지원 사업,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으로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추진

###### ○ 농촌 빈집을 웰빙개념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농교류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촉진

- 도시민 5도2촌 전원생활, 귀농인 농촌정착 활용, 마을주민의 문화공간 활용



#### 4. 2007년도 투융자 계획

□ 2007년도 투자 규모는 4조 3,912억원으로 이는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 투융자 총액 20조 2,731억원의 21.6%

○ 국비는 2조 4,024억원으로 2007년도 전체 투자 규모의 54.7%

○ 지방비는 1조 7,472억원으로 전체의 39.8%, 민자 등 기타는 2,416억원으로 5.5% 차지

○ '06년의 4조 2,746억원 대비 1.02배 증가 수준

#### □ 분야별 투융자 규모

○ 부문별로는 복지 6,480억원(14.8%), 교육 8,097억원(18.4%), 지역개발 2조 5,086억원(57.1%), 복합산업 4,249억원(9.7%)

(단위 : 억원, %)

구 분	2006	제1차 삶의질 향상 5개년계획 투융자		A/B
		2007(A)	'05~'09총액(B)	
총투자소요	42,746	43,912	202,731	21.7%
○ 국 비	22,409	24,024	115,527	20.8%
- 119조재원	9,287	17,143	76,862	22.3%
- 관련재원	13,122	6,881	38,665	17.8%
○ 지방비	18,971	17,472	81,659	21.4%
○ 기 타	1,366	2,416	5,545	43.5%

## 5. 점검·평가

- ◇ 투융자의 효율성과 기본계획 추진의 신뢰 제고를 위한 '0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추진
- ◇ '06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점검·평가체계 보완 등

- '08년 상반기에 '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추진
  - 1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07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상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
  -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단에 제출
    - 평가단은 자체평가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 평가단은 점검·평가 결과를 위원회 등에 보고
- 평가결과를 토대로 '09년도 투융자계획 등 조정 추진
- '06년도 점검·평가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점검·평가시스템을 보완하여 환류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조정, 현지 점검 실시, 업무담당자와 인터뷰 실시 등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평가 실시
  - '06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시·도는 시·도, 시·군 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점검·평가단은 외부전문가, 농림어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구성
    - 시·도에서는 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보완

## 6. 기대효과

-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농산어촌 대책들을 통합·연계하여 추진하므로서 시너지 효과 기대
  - 그 동안 각 부처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농산어촌 정책을 분산·추진하여 왔으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한 총괄·조정으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됨
  
-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림어업인 연간 보험료 최고 지원액 : ('06) 259천원 → ('07) 280천원
  - 노후 보건소 등 신·개축 : ('06) 1,604개소 → ('07) 1,854개소
  - 농산어촌 국공립보육시설 : ('06) 377개소 → ('07) 414개소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 ('06) 90개소 → ('07) 104개소
  -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 : ('06) 44개교 → ('07) 88개교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 지원단가 : ('06) 843천원/연 → ('07) 926천원/연
  
- 정부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로 대국민 만족도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해 농어업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점검·평가단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참 고 1 >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사업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균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합 계</b>	<b>7,600</b>	<b>9,291</b>	<b>4,592</b>	<b>2,541</b>	<b>24,024</b>	<b>17,472</b>	<b>2,416</b>	<b>43,912</b>	
<b>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소계)</b>	<b>3,685</b>	<b>48</b>	<b>613</b>	<b>238</b>	<b>4,584</b>	<b>1,328</b>	<b>568</b>	<b>6,480</b>	
<b>1-1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b>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1,272				1,272			1,272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760				760			760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227				227		226	453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201		201			201	
<b>1-2 농산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b>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35				35			35	
1-2-1-2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	620				620		310	930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238	238	190		428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48			48	48		96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4		4			4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3			3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7				7	6		13	
<b>1-3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강화</b>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67		67	66		133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311		311	311		622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원 지원	268				268	268		536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40				240	239		479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8	6	44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46	10	56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39				39		16	55	
1-3-3-3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19				19	7		26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2				2	2		4	
1-3-5-2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2				2	2		4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1				1			1	
<b>1-4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b>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26		26	25		51	
1-4-2-3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1		1			1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80				80	80		160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113				113			113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소계)</b>	<b>1,013</b>	<b>0</b>	<b>2,244</b>	<b>76</b>	<b>3,333</b>	<b>4,760</b>	<b>4</b>	<b>8,097</b>	
<b>2-1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b>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240				240	240		480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68			6	74			74	
2-1-2-1 학교군 구성·운영	30				30	30		60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2				2	2		4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132		166		298	696		994	
2-1-3-5 방학캠프 운영 지원	11				11	10		21	
2-1-4-1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6				6	6		12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2,078		2,078	2,078		4,156	
2-1-4-4 농어촌지역 시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22				22	22		44	
<b>2-2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b>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920		920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441				441			441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70	70			70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660		660	
2-2-3-2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 자영 농업계고 급식비						18	3	21	
○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1	1	2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30				30	30		60	
<b>2-3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b>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31				31			31	
2-3-2-2 교직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38		38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9		9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소계)</b>	<b>1,867</b>	<b>7,808</b>	<b>1,510</b>	<b>2,160</b>	<b>13,345</b>	<b>10,020</b>	<b>1,721</b>	<b>25,086</b>	
<b>3-1 인적역량 강화</b>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8				8			8	
<b>3-2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b>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2	669			731	108		839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286			286	53	18	357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11			211	83		294	
3-2-2-1 소도읍 육성사업		677		907	1,584	1,816	558	3,958	
<b>3-3 기초생활여건 개선</b>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180		1,154	1,080	2,414	1,040	440	3,894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4		4	3		7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1,380			1,380	345		1,725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342			342	85		427	
3-3-2-3 면단위 하수도	795				795	341	36	1,172	
3-3-2-4 소하천 정비	589	3			592	593		1,185	
3-3-2-5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109				109		481	590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30				30			30	
3-3-2-7 다목적 인양기 설치		7			7	7		14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98	24	122	16		138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76			76	9	8	93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26		26			26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	4				4	4	2	10	
3-3-3-1 농어촌도로 정비						3,284		3,284	
3-3-3-2 교통서비스 강화						340		340	
3-3-3-3 국고여객선 건조	16				16			16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3	54		57	57		114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920			1,920	480		2,400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1,134			1,134	486		1,620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1,001			1,001	429		1,430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5			55	86		141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8	18	18		36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20	20			20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	20			20	
3-3-5-6 테마과학관 건립지원				54	54	106		160	
3-3-5-7 산림박물관 건립		43			43	43		86	
3-3-5-8 농어촌복합체육시설				37	37	15		52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1	84		85	80		165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90		90	88	176	354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5				5	1	1	7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7				7			7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31				31	4	1	36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31				31			31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소계)</b>	<b>1,035</b>	<b>1,435</b>	<b>225</b>	<b>67</b>	<b>2,762</b>	<b>1,364</b>	<b>123</b>	<b>4,249</b>	
<b>4-1 향토산업의 진흥</b>									
4-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2		2			2	
4-1-1-2 향토산업 육성		43			43	38	52	133	
4-1-1-3 향토음식 자원화	4				4	3		7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314			314	177		491	
4-1-3-0 농어어업인 고용촉진훈련	12				12			12	
<b>4-2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구축 및 활성화</b>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84			84	83		167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3				33	32		65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22	22	11		33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41			41	36	4	81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391	119			510	120		630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 국유자연휴양림			210		210			210	
○ 공유자연휴양림		281			281	197		478	
○ 수목원 조성		122			122	122		244	
4-2-1-8 농업농촌 테마마을조성		16			16	15		31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46			46	53	60	159	
4-2-2-1 도농교류 페스티벌	5				5			5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6				6	6	3	15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40	40	40		80	
<b>4-3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b>									
4-3-1-0 경관보전 직불제	10				10	4		14	
4-3-2-1 농촌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			1		1			1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3		3			3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5	5		4	9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 생태숲조성		138			138	138		276	
○ 자생식물식재			9		9	9		18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523				523	222		745	
<b>4-4 도·농 교류강화</b>									
4-4-2-0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갯기 활성화		231			231	57		288	
4-4-3-1 도농교류활성화	50				50			50	
4-4-3-3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				1	1		2	

< 참 고 2 >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부처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합 계</b>	<b>7,600</b>	<b>9,291</b>	<b>4,592</b>	<b>2,541</b>	<b>24,024</b>	<b>17,472</b>	<b>2,416</b>	<b>43,912</b>	
<b>1. 교육인적자원부(13)</b>	<b>504</b>	<b>0</b>	<b>2,244</b>	<b>0</b>	<b>2,748</b>	<b>3,821</b>		<b>6,569</b>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240				240	240		480	
2-1-2-1 학교군 구성·운영	30				30	30		60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2				2	2		4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132		166		298	696		994	
2-1-3-5 방학캠프 운영 지원	11				11	10		21	
2-1-4-1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6				6	6		12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2,078		2,078	2,078		4,156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22				22	22		44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660		660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30				30	30		60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31				31			31	
2-3-2-2 교직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38		38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9		9	
<b>2. 과학기술부(1)</b>	<b>0</b>	<b>0</b>	<b>0</b>	<b>54</b>	<b>54</b>	<b>106</b>		<b>160</b>	
3-3-5-6 테마과학관 건립지원				54	54	106		160	
<b>3. 행정자치부(4)</b>	<b>0</b>	<b>1,679</b>	<b>84</b>	<b>907</b>	<b>2,670</b>	<b>5,609</b>	<b>558</b>	<b>8,837</b>	
3-2-2-1 소도읍 육성사업		677		907	1,584	1,816	558	3,958	
3-3-3-1 농어촌도로 정비						3,284		3,284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1,001			1,001	429		1,430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1	84		85	80		165	
<b>4. 문화관광부(7)</b>	<b>0</b>	<b>55</b>	<b>0</b>	<b>157</b>	<b>212</b>	<b>170</b>		<b>382</b>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5			55	86		141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8	18	18		36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20	20			20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	20			20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22	22	11		33	
3-3-5-8 농어촌복합체육시설				37	37	15		52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40	40	40		80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5. 농림부(33)</b>	<b>4,314</b>	<b>4,753</b>	<b>1,154</b>	<b>1,155</b>	<b>11,376</b>	<b>4,337</b>	<b>760</b>	<b>16,473</b>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1,272				1,272			1,272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760				760			760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227				227		226	453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원 지원	268				268	268		536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40				240	239		479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8	6	44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46	10	56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39				39		16	55	
1-3-3-3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19				19	7		26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113				113			113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920		920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441				441			441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70	70			70	
2-2-3-2 지역농·수산계급 급식비						19	4	23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8				8			8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2	669			731	108		839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농어촌주택개량	180			1,080	1,260	540	440	2,240	
○ 마을하수도정비			1,154		1,154	500		1,654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342			342	85		427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30				30			30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920			1,920	480		2,400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1,134			1,134	486		1,620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5				5	1	1	7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31				31	4	1	36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31				31			31	
4-1-1-2 향토산업 육성		43			43	38	52	133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314			314	177		491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84			84	83		167	
4-2-1-8 농업농촌 테마마을조성		16			16	15		31	
4-2-2-1 도농교류 페스티벌	5				5			5	
4-3-1-0 경관보전 직불제	10				10	4		14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5	5		4	9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도	523				523	222		745	
4-4-1-0 도농교류활성화	50				50			50	
4-4-2-0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갯기 활성화		231			231	57		288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6. 정보통신부(1)</b>	<b>0</b>	<b>0</b>	<b>90</b>	<b>0</b>	<b>90</b>	<b>88</b>	<b>176</b>	<b>354</b>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90		90	88	176	354	
<b>7. 보건복지부(4)</b>	<b>655</b>	<b>0</b>	<b>26</b>	<b>238</b>	<b>919</b>	<b>215</b>	<b>310</b>	<b>1,444</b>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35				35			35	
1-2-1-2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	620				620		310	930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238	238	190		428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26		26	25		51	
<b>8. 환경부(3)</b>	<b>904</b>	<b>1,380</b>	<b>0</b>	<b>0</b>	<b>2,284</b>	<b>686</b>	<b>517</b>	<b>3,487</b>	
3-3-2-3 면단위 하수도	795				795	341	36	1,172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1,380			1,380	345		1,725	
3-3-2-5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109				109		481	590	
<b>9. 여성가족부</b>	<b>0</b>	<b>0</b>	<b>378</b>	<b>0</b>	<b>378</b>	<b>377</b>		<b>755</b>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67		67	66		133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311		311	311		622	
<b>10. 노동부(1)</b>	<b>12</b>	<b>0</b>	<b>0</b>	<b>0</b>	<b>12</b>	<b>0</b>		<b>12</b>	
4-1-3-0 농어어업인 고용촉진훈련	12				12			12	
<b>11. 건설교통부(1)</b>	<b>0</b>	<b>0</b>	<b>0</b>	<b>0</b>	<b>0</b>	<b>340</b>		<b>340</b>	
3-3-3-2 교통서비스 강화						340		340	
<b>12. 해양수산부(13)</b>	<b>418</b>	<b>578</b>	<b>379</b>	<b>24</b>	<b>1,399</b>	<b>355</b>	<b>92</b>	<b>1,846</b>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201		201			201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286			286	53	18	357	
3-3-2-7 다목적 인양기 설치		7			7	7		14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98	24	122	16		138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76			76	9	8	93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26		26			26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	4				4	4	2	10	
3-3-3-3 국고여객선 건조	16				16			16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3	54		57	57		114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7				7			7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41			41	36	4	81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391	119			510	120		630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46			46	53	60	159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13. 소방방재청(1)</b>	<b>589</b>	<b>3</b>	<b>0</b>	<b>0</b>	<b>592</b>	<b>593</b>		<b>1,185</b>	
3-3-2-4 소화전 정비	589	3			592	593		1,185	
<b>14. 농촌진흥청(18)</b>	<b>204</b>	<b>48</b>	<b>18</b>	<b>6</b>	<b>276</b>	<b>183</b>	<b>3</b>	<b>462</b>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48			48	48		96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4		4			4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3		3			3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7				7	6		13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2				2	2		4	
1-3-5-2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2				2	2		4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1				1			1	
1-4-2-3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1		1			1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80				80	80		160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68			6	74			74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4		4	3		7	
4-1-1-1 향토자원의 조사 발굴 및 DB구축			2		2			2	
4-1-1-3 향토음식 자원화	4				4	3		7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3				33	32		65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6				6	6	3	15	
4-3-2-1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자원관리			1		1			1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3		3			3	
4-4-3-3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				1	1		2	
<b>15. 산림청(4)</b>	<b>0</b>	<b>795</b>	<b>219</b>	<b>0</b>	<b>1,014</b>	<b>592</b>		<b>1,606</b>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11			211	83		294	
3-3-5-7 산림박물관 건립		43			43	43		86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 국유자연휴양림			210		210			210	
○ 공유자연휴양림		281			281	197		478	
○ 수목원 조성		122			122	122		244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 생태숲조성		138			138	138		276	
○ 자생식물식재			9		9	9		18	

< 참 고 3 >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시행계획의 재원별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합 계</b>	<b>7,600</b>	<b>9,291</b>	<b>4,592</b>	<b>2,541</b>	<b>24,024</b>	<b>17,472</b>	<b>2,416</b>	<b>43,912</b>	
<b>I 119조 관련사업(76)</b>	<b>7,182</b>	<b>6,979</b>	<b>1,583</b>	<b>1,399</b>	<b>17,143</b>	<b>8,349</b>	<b>1,590</b>	<b>27,082</b>	
<b>1. 농산어촌 복지기반확충(22)</b>	<b>3,685</b>	<b>48</b>	<b>34</b>	<b>238</b>	<b>4,005</b>	<b>951</b>	<b>568</b>	<b>5,524</b>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1,272				1,272			1,272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760				760			760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227				227		226	453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35				35			35	
1-2-1-2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	620				620		310	930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238	238	190		428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48			48	48		96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4		4			4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3		3			3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7				7	6		13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원 지원	268				268	268		536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40				240	239		479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8	6	44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46	10	56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39				39		16	55	
1-3-3-3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19				19	7		26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2				2	2		4	
1-3-5-2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2				2	2		4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1				1			1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26		26	25		51	
1-4-2-3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1		1			1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80				80	80		160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113				113			113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17)</b>	<b>1,013</b>	<b>0</b>	<b>166</b>	<b>76</b>	<b>1,255</b>	<b>2,682</b>	<b>4</b>	<b>3,941</b>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240				240	240		480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68			6	74			74	
2-1-2-1 학교군 구성·운영	30				30	30		60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2				2	2		4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132		166		298	696		994	
2-1-3-5 방학캠프 운영 지원	11				11	10		21	
2-1-4-1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6				6	6		12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22				22	22		44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920		920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441				441			441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70	70			70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660		660	
2-2-3-2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 자영 농업계고 급식비						18	3	21	
○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1	1	2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30				30	30		60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31				31			31	
2-3-2-2 교직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38		38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9		9	
<b>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17)</b>	<b>1,840</b>	<b>5,702</b>	<b>1,158</b>	<b>1,080</b>	<b>9,780</b>	<b>3,612</b>	<b>959</b>	<b>14,351</b>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8				8			8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2	669			731	108		839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11			211	83		294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농어촌주택개량	180			1,080	1,260	540	440	2,240	
○ 마을하수도정비			1,154		1,154	500		1,654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4		4	3		7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1,380			1,380	345		1,725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함)	합 계	
	농특세	균 특	기타회 계	기금 등	소계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342			342	85		427	
3-3-2-3 면단위 하수도	795				795	341	36	1,172	
3-3-2-4 소하천 정비	589	3			592	593		1,185	
3-3-2-5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109				109		481	590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30				30			30	
3-3-4-1 농촌정주기본확충사업		1,920			1,920	480		2,400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1,134			1,134	486		1,620	
3-3-5-7 산림박물관 건립		43			43	43		86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5				5	1	1	7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31				31	4	1	36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31				31			31	
<b>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20)</b>	<b>644</b>	<b>1,229</b>	<b>225</b>	<b>5</b>	<b>2,103</b>	<b>1,104</b>	<b>59</b>	<b>3,266</b>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2		2			2	
4-1-1-2 향토산업 육성		43			43	38	52	133	
4-1-1-3 향토음식 자원화	4				4	3		7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314			314	177		491	
4-1-3-0 농어어업인 고용촉진훈련	12				12			12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84			84	83		167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33				33	32		65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 국유자연휴양림			210		210			210	
○ 공유자연휴양림		281			281	197		478	
○ 수목원 조성		122			122	122		244	
4-2-1-8 농업농촌 테마마을조성		16			16	15		31	
4-2-2-1 도농교류 페스티벌	5				5			5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6				6	6	3	15	
4-3-1-0 경관보전 직불제	10				10	4		14	
4-3-2-1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자원관리			1		1			1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3		3			3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5	5		4	9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138	9		147	147		294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523				523	222		745	
4-4-1-0 도농교류활성화	50				50			50	
4-4-2-0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갯기 활성화		231			231	57		288	
4-4-3-3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1				1	1		2	

(단위 : 억원)

사 업 명	'07년도 투융자계획								비고 (증감)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포 함)	합 계	
	농특세	군 특	기타 회계	기금 등	소계				
<b>II 119조 외 사업(30)</b>	<b>418</b>	<b>2,312</b>	<b>3,009</b>	<b>1,142</b>	<b>6,881</b>	<b>9,123</b>	<b>826</b>	<b>16,830</b>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201		201			201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67		67	66		133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311		311	311		622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2,078		2,078	2,078		4,156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286			286	53	18	357	
3-2-2-1 소도읍 육성사업		677		907	1,584	1,816	558	3,958	
3-3-2-7 다목적 인양기 설치		7			7	7		14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98	24	122	16		138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76			76	9	8	93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26		26			26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	4				4	4	2	10	
3-3-3-1 농어촌도로 정비						3,284		3,284	
3-3-3-2 교통서비스 강화						340		340	
3-3-3-3 국고여객선 건조	16				16			16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3	54		57	57		114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1,001			1,001	429		1,430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5			55	86		141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8	18	18		36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20	20			20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	20			20	
3-3-5-6 테마과학관 건립지원				54	54	106		160	
3-3-5-8 농어촌복합체육시설				37	37	15		52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1	84		85	80		165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90		90	88	176	354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7				7			7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22	22	11		33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41			41	36	4	81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391	119			510	120		630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46			46	53	60	159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40	40	40		80	





## 제 Ⅱ 장    부문별 시행계획편



#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 가.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1) 개 관

#### □ '07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경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로 복지증진 도모
    - 경감률 : ('03) 보험료의 22% → ('04) 30% → ('05) 40% → ('06이후) 50%
  - 경감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농어업인 일제조사 실시
-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 : 최고지원액 ('06) 259천원 → ('07) 280
  - 표준소득월액 지원기준등급 : ('06) 13등급 → ('07) 14등급
  -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원액 : ('06) 119천원~259천원 → ('07) 119천원~280천원
  -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상 강화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농작업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의 단계적 지원확대
  - 농작업 재해 사망시 보상액 : ('06) 25백만원 → ('07) 35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을 제고 추진
  - 보험가입대상척수 대비 보험가입율 : ('06) 76% → ('09) 80% → ('11) 85%
  - 어업인의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 추진
  - \*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율 : 10톤미만 60%, 30톤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 \*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율 : 예정사업비의 70%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인정하여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농어업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특례제도 도입)

□ 예산 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농어업인건강보험	127,176				127,176			127,176
농어업인국민연금	76,045				76,045			76,045
농작업재해보상	22,663				22,663		22,663	45,326
어선원재해보상			20,127		20,127			20,127
합 계	225,884		20,127		246,011		22,663	268,674

□ '08년도 추진 방향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적격대상 농어업인이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 일률적으로 50%지원되고 있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하거나 지원 배제하여 형평성 제고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단계적 확대 등 현실화하여 현행 표준 소득월액의 14등급기준에서 16등급 보험료수준으로 지원기준 향상
  - 지원 수준 : 1인당 9,900원/월 ~ 27,900원/월
- 농작업 안전 공제료의 단계적 지원확대와 홍보강화를 통한 가입율 제고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강화
- 어선원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어업경영 안전망 확충
  -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 : ('07) 70% → ('08) 100%
- 농어촌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어업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 (2) 세부과제

### <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농어업인의 의원, 병원 등 의료 기관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 의료기관 이용부담 완화로 건강검진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질병의 사전 예방가능

##### ○ 사업추진방향

-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완화
- 농어업인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경감을 통한 의료 복지 강화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총괄), 복지부(협조), 국민건강보험공단(집행)
- 사업추진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민) → 보험료 납입(농어민→공단)  
→ 보험료지원(농림부→공단)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농산어촌 및 준농산어촌 거주 농어업인
- 사업규모 : 532천명

- 지원형태 : 농어업인에 대한 경감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원
- 지원조건 : 건강보험료의 28% 추가지원(국고 100%) → 총 50%경감 지원
- 총사업비 : 127,176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04년부터 ~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6	135,865				135,865			135,865
2007	127,176				127,176			127,176
(증△감)	△8,689				△8,689			△8,689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격대상 농어업인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 보험료 지원 농어민 세대 중 부적격자 제외 및 신규 농업인 추가
- 일률적으로 50%지원되고 있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하거나 지원 배제하여 형평성 제고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정아름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1)

## <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농림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지원

#### ○ 사업추진방향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총괄), 복건복지부(협조), 국민연금관리공단(집행)
- 사업추진절차 : 농어업인 신청(가입자) → 농어업인 대상자 확인(공단) → 대상자 보험료 납부 확인(공단) → 국고지원금 확정 및 요구(공단, 매월) → 예산지원(농림부→공단) → 예산지원(공단)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당연적용·임의계속·특례) 가입자
- 사업규모 : 농어업인 가입자 275천명, 760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소득별 차등 지원(국고지원)
  - 표준소득월액 14등급 미만 시, 연금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 표준소득월액 14등급 이상 시, 14등급 연금보험료의 50%(280천원/년) 정액지원
  - 지원형태 : 직접 수행(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

- 지원조건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인에 대한 적용조건
    - .. 농업인 : 1,000㎡이상을 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 임업인 :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 어업인 :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1년 중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농어업인의 지원대상자 결정
    - .. 농업, 임업 또는 어업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기간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자
    - ..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 3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7,300				67,300			67,300
2007	76,045				76,045			76,045
(증△감)	8,745				8,745			8,745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수준을 단계적 확대 등 현실화하여 현행 표준 소득월액의 14등급기준에서 16등급 보험료수준으로 지원기준 향상
  - 지원수준 : 1인당 9,900원/월 ~ 27,900원/월
- 농어업인중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강화
-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가입을 제고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김낙신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6)



### <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기계의 각종 사고 및 파손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조성
-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시 지급하는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의 단계적 지원확대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재해 보상수준 강화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자금교부 요청(농협→농림부)→자금교부(농림부→농협)→가입신청(농업인)→공제증권발급(농협)→정산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22,663백만원

- 사업 시행대상 : 농업인
- 사업규모 : 818천건
- 사업 주요내용 : 농협재해공제 가입비 지원
- 지원단가 : 53,930원
- 재해시 보상 : 사망시 35백만원 보상

○ 예산

- 사업기간 : '96년부터 ~
- 재원형태 : 국비(농특세) 50%, 자부담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6	18,295				18,295		18,295	22,736
2007	22,663				22,663		22,663	45,326
(증△감)	4,368				4,368		4,368	8,73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업인 안전공제료의 단계적 지원확대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하여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강화
- 홍보강화로 가입을 제고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정아름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1)

## <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고 조업여건이 열악하여 조업이탈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어선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연근해 어선원의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 유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을 제고 추진
  - 보험가입대상 척수 대비 보험가입율 : ('06) 76 → ('09) 80% → ('11) 85%
- 휴어기 보험료 환불제도 등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지속 도입
- 장기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 등 보험의 형평성 제고
- 어업인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 사업추진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제4조(보험료 국고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위탁 운영)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해양수산부) → 보험가입(어업인 → 회원조합) → 보조금 지급신청(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 보조금 지급(해양수산부 → 중앙회) → 보험사업 결산보고 제출 및 승인(중앙회 ↔ 해양수산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인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소유자(가입대상 : 약 85천척) 중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국고보조율)
  - 순보험료 : 10톤미만 60%, 30톤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 부가보험료 : 예정사업비의 70%
- 사업 주요내용
  - 어업인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활동 강화
    - \* 어선원보험 가입율 : ('06) 74% → ('07목표) 76% → ('11목표) 90%
  - 어업인의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경감노력 지속 추진
    - \* 휴어기 보험 환불제도 도입 : 월 보험료의 40% 환급
    - \* 소손해 보상제도 도입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자진납부기간 운용 및 장기 미납자 채납처분 실시
  -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미비점 개선·보완

○ 예산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6			18,000		18,000			18,000
2007			20,127		20,127			20,127
(증△감)			2,127		2,127			2,127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어선원 보험의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로 어업경영 안전망 확충
  - 부가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 : ('07) 70% → ('08) 100%
- 어업인의 부담경감시키고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업담당자 : 수산경영과 박신철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62)

## <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보건복지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농어민가구 선정기준 특례 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 ○ 사업추진방향

- 농어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특례제도 도입

####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장기관(시·군·구청장)
- 사업절차 : 급여신청(본인, 친족 등) → 조사(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 급여결정(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 급여실시(생계, 주거비)  
→ 확인조사(매년 1회 이상, 수급자 적정여부) → 보장중지(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사유 발생시)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전체수급자 중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07.1월)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완화
  -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특례 운영

○ 예산

- 사업기간 : '04. 6 ~ 계속
- 재원형태 : 지자체 보조사업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기초생활보장 급여 전체 예산임(의료 및 자활급여 제외) - 별도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특례대상자들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에 집행되므로 별도의 예산 및 실적파악 곤란('07년 국비 2조 6,473억원, 지방비 8,432억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촌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어민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사업담당자 : 기초생활보장팀 이연실, 연락처 : 02-2110-6222)

## 나. 농산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 (1) 개 관

#### □ '07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39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군지역당 1개 의료기관등에 대한 응급의료인프라 구축비 지원
  - 의료기관에 대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 장비 보강비 및 시설확충비 지원
-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의료장비 등을 개선하여 보건의료 수요에 대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추진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지원하여 시설·장비의 현대화,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공공성 강화 및 국립대병원·보건소와의 연계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모델을 제시
- 농산어촌 마을에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 회복환경 조성 및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
  -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농업활동에 따른 농업인의 재해발생정도, 재해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여 재해 예방 및 농작업 환경 개선 추진
  - 재해 원인 규명 및 재해 경감방안 개발연구 등에 포괄적으로 지원
- 인터넷을 통한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원격진료 상담 추진
  - 농작업 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 : 26개소
- 농작업 재해질환 및 사고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 안전영농구역(Safe farm Zone) 조성 사업 17개소 추진(신규 8, 기존 9)
  - 농업인의 작업성질환 현황 파악 등 건강수준 및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실시
  - 현황 진단결과에 기초하여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개선방안 도출
  - 농작업환경 및 작업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비 보급, 운동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예산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3,484				3,484			3,484
공공보건기관 기반확충	62,053				62,053		31,027	93,080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23,845	23,845	19,038		42,883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충		4,805			4,805	4,795		9,600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등			350		350			350
농작업재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250		250			250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660				660	660		1,320
합계	66,197	4,805	600	23,845	95,447	24,493	31,027	150,967

□ '08년도 추진 방향

-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기초적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인력 장비 확충
-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인력 등 지속적인 기능 보장
-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소요경비 지원 확대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활용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 운동건강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 농업인 업무상재해 경감을 위한 농작업 보조도구를 개발하고 산업재산권화 하며 지도사업으로 연계하여 간접적인 복지 지원을 강화
- 농작업재해 예방·관리의 유관기관 관련자, 외부전문가, 정책입안자,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추진
- 시범마을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의 지속적인 실행과 보완, 정착 지원으로, 마을과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안전관리 모델 정립 추진



## (2) 세부과제

### < 1-2-1-1.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시설확충 및 장비지원으로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

##### ○ 사업추진방향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을 대상으로 군지역당 1개 의료기관등에 대한 응급의료인프라 구축비 지원
- 의료기관에 대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 장비 보강비 및 시설확충비 지원

##### ○ 사업추진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응급의료제공 의무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및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육성)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민간 의료기관 육성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 사업추진절차 :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시·도 통보(보건복지부→시·도)  
     → 해당 군 지역 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시·도) → 예산  
     지원(복지부→시·도→의료기관) → 사업시행(시·도 및 의료  
     기관) → 지원금 교부 및 사후 관리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의료기관
- 사업규모 : 39개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100% 지원
  - '07년 신규지원 12개 군지역 의료기관 : 개소당 의료인력 인건비 68백만원  
 및 시설·장비 보강비 69백만원 지원
  - '06년 기 지원 27개 군지역 의료기관 : 개소당 의료인력 인건비 68백만원  
 지원('06년 시설·장비보강비 64백만원 기 지원)
- 지원조건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취약 39개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에 24  
 시간 진료를 위한 의사 인건비 지원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취약지 39개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  
 시설·장비보강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장비 확보  
 및 시설 보강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의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및 시설·장비 확충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단위 : 군)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 개군	2	6	3	3	5	6	7	5	2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총 4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667				3,667			3,667
2007	3,484				3,484			3,484
(증△감)	△183				△183			△183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2008년까지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지역에 기초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009년까지는 취약 진료권을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의 향상을 꾀함
-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국가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

(사업담당자 : 의료자원팀 최순택 사무관, 연락처 : 031-440-9125)

## < 1-2-1-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보건복지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보건의료자원의 도시지역 집중과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농가 소득 정체 등의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 기반 마련 및 도서벽지, 의료취약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질병관리,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사업 추진기반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상대적으로 낙후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의료장비 등을 개선하여 보건의료 수요에 대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 효과적인 지역 보건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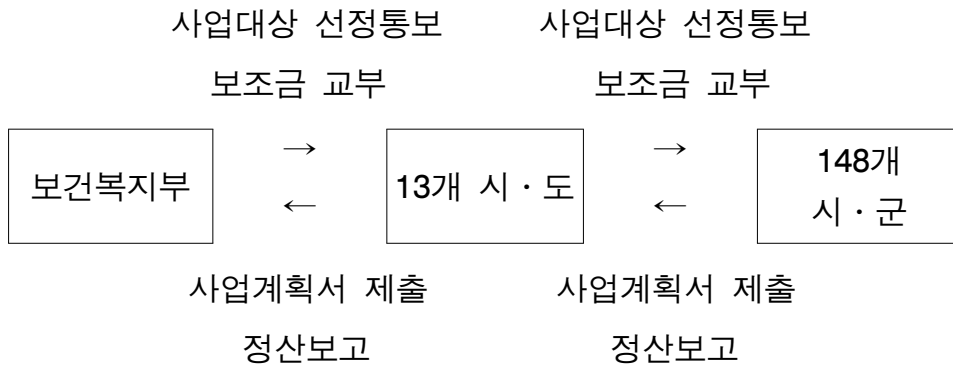
#### ○ 사업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9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2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2항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15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 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계획 제출 →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관 선정(현지실사) → 농특자금 지원 → 각 지자체에서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군 지역 및 도농 통합지역의 시 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
- 사업 규모(사업량)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시 설		의료장비		전산장비		차 량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690	62,053	250	57,748	419	4,133			21	172
보건의료원	13	2,803	3	2,289	9	506			1	8
보건소	130	15,634	20	13,297	90	2,173			20	164
보건지소	414	29,372	94	27,918	320	1,454				
보건진료소	133	14,244	133	14,244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사업대상기관 선정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의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4년 (총 20년)
- 재원형태 : 국비 2/3, 지방비 1/3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57,291				57,291		28,646	85,937
2007	62,053				62,053		31,027	93,080
(증△감)	4,762				4,762		2,381	7,173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백분율	합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방문보건차량
합계	100	62,053	15,586	27,917	14,243	4,134	173
부산	0.2	101			101		
대구	0.2	141			91	50	
인천	2.1	1,311	436	457	354	56	8
울산	0.6	358		236	81	41	
강원	10.9	6,776	4,228	1,592	524	399	33
경기	4.3	2,639	856	1,145	465	148	25
충북	8.9	5,524	1,210	2,315	1,819	180	
충남	9.1	5,619	428	3,327	1,472	392	
전북	12.6	7,836	2,343	3,173	1,630	682	8
전남	21.3	13,243	2,601	5,864	3,889	864	25
경북	18.3	11,330	3,484	5,261	1,904	656	25
경남	9.9	6,156		4,229	1,471	407	49
제주	1.6	1,019		318	442	259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차년도에는 20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사업담당자 : 보건정책팀 서문교, 연락처 : 2110-6298)

### <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노후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능개편을 통해 동 병원 경쟁력 확보 및 포괄적·지속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임직원의 혁신교육을 통하여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 사업추진방향

- 시설·장비의 현대화,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공공성 강화 및 국립대병원·보건소와의 연계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모델을 제시하여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 ○ 사업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각 시·도,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 사업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각 병원, 시도 및 대한적십자사 경유)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복지부) → 국고보조금 신청(선정병원, 시도 및 대한적십자사 경유) → 국고보조금 교부(복지부) → 사업추진(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40개 병원 (지방의료원 34, 적십자병원 6)
- 지원형태 : 기금 50%, 지방비 50% (일부 기금 100%)
- 지원조건 : 사업계획의 적절성, 의료수요·공급, 장비 교체·구매의 시급성 및 적절성 등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병상 증축, 모델사업, 시설·장비보강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시설·장비 보강
- 혁신 및 서비스촉진 교육 : 공공병원 임직원 대상 교육
-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민건강증진기금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1,904	31,904	27,097		59,001
2007				23,845	23,845	19,038		42,883
(증△감)				△8,059	△8,059	△8,059		△16,118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모델사업 : 노인장기요양, 재활 병상 등 추가 건립 지원
- 시설·장비보강 :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 전산장비 보강 : 노후 PC 교체 및 용량 증설 등 지원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노후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 혁신 및 서비스촉진교육 : 40개 공공병원 직원 800명 교육

○ 지역거점병원 운영평가 : 40개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운영상태 등 평가

○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지원 :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 지역사회 보건소 등 연계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공공의료팀 김인기 사무관, 연락처 : 031-440-9134)



## <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 해소 및 건강 증진
- 농촌주민 화합의 장 마련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

####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 조기 해소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
-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관리
-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42조 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적합성 현지조사(시·군) → 우선순위를 정하여 마을 추천(시·군→시·도) → 시군별 사업량 검토 조정(시·도) → 예산 신청(시·도 → 농촌진흥청) → 예산 확정 지원(농촌진흥청→시·도→시·군) → 사업대상마을 확정(시·군)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마을 및 시·군) → 사업추진(마을 및 시·군)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지원 조건에 맞는 농촌 마을

- 사업 규모 : 192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50백만원, 국비 50% · 지방비 50%
  -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 보조율 10% 상향 반영, 지방 여건에 따라 국비 요구비율 상이함
- 지원조건
  - 기본조건 : 반경 3km 이내에 피로회복 시설(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 등)이 없는 마을, 지방비 지원, 마을기금 활용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마을
  - 선정 우선순위 : 농작업환경이 열악한 마을, 인근 피로회복시설로부터의 거리가 먼 마을, 운영비 절감시설을 설치할 마을, 활용 가능한 농가인구수가 많은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에 동의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마을, 마을 주민 간에 화합이 잘 되고 마을내 조직 활동이 활발하며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고 타 사업의 추진효과가 높은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피로회복 시설 설치 :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
    - 기본시설 : 건강기구실, 샤워실 또는 목욕실
    - 권장시설 : 찜질방, 게이트볼장, 조리실, 휴식실, 노인실, 태양열이용시설, 식품가공실, 건강정보실 등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구입 : 벨트맛사지, 안마의자, 찜질기, 헬스자전거, 아령, 체중계 등 마을민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 및 기구 활용 : 마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 및 찜질방 가동 일수,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
  -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 건강관리교육, 요가, 단전호흡, 피로회복 마사지, 농작업체조 등 프로그램 실시. 보건소, 한의원, 병원 등의 협력 유치로 무료 검진 및 의료지원 확보
  - 운영비 확보 지원 : 지방비 지원, 소득원 확보, 출향인사 후원 촉진 등
- 시도별 배분내역('07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192	9	16	14	36	28	33	31	18	6	1

○ 예 산

- 사업기간 : '96년 ~ '07년 (총 12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 60, 지방비 40%, 지방 여건에 따라 국비 요구비율 상이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987			3,987	3,913		7,900
2007		4,805			4,805	4,795		9,600
(증△감)		818			818	882		1,7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활용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 운동건강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과 박정화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873)

### <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환경개선(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활동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따라 농부중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발생이 증가하므로 장기추적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구명하고 적합한 예방관리 기술 개발 지원
- 향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성 질환 및 사고에 대한 재해통계 및 재해판정 기준 등을 마련

#####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재해 진단기준 개발 ('06~'09)
  - 작목 및 농업활동에 따른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발생정도, 재해발생 원인 등을 구명하여 향후 업무상재해 예방 및 보상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 ('06~'09)
  - 농업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작업환경 요소 및 노출수준을 평가
  - 유해가스, 농약,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유해 작업환경 안전기준 설정
- 인간공학적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 지원
  - 유해 작업요소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농작업 보호구 및 보조장비 등을 개발하여 농업인 업무상재해 경감 : (현재) 18종 → ('09까지) 60종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 (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 편성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 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 심의회(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장기추적 연구군 관리(코호트 군, '07년 1,000명 내외) 및 농작업 보조장비 개발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100%
- 지원조건
  -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
  - 기존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해당과제 연구추진 능력이 검증된 부서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 운영절차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
  -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이 없는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업무상재해 원인구명 및 재해 경감방안 개발 등을 위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지원
- 시도별 장기추적 마을 구축('07)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	1	1	1	1	1	2	1	1	0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400		400			400
2007			350		350			350
(증△감)			△50		△50			△5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1차년도 장기추적조사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심층 조사 실행
- 농업인 업무상재해 경감을 위한 농작업 보조도구를 개발하고 산업재산권화 하며 지도사업으로 연계하여 농업인의 간접적인 복지 지원을 강화
- 농촌진흥청과 해당 부서는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안전 향상을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이경숙 연구관, 연락처 : 031-299-0470)

## <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 업무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보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의료비 및 손해를 최소화함
-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액 : 근로자 1,000만명, 약 10조
- 농작업재해로 인한 손실액 추정 : 농업취업인구 200만명, 약 2조
-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연구 결과를 기초로 재해예방 정책, 제도 및 지역단위 농업안전보건 사업을 수행하므로 국내에서도 향후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해통계 등을 마련

####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 안전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 농촌진흥청 농기계, 농약, 농작업 건강관련 연구 중장기 로드맵
- 농작업 안전보건 연구회 구성·운영
  - 의료계, 인간공학, 산업계 등 산·학·관·연 연구진 및 사업운영자 등
  - 워크숍 등을 통해 농작업 안전보건 연구지도 및 정책사업 관련 의견수렴
- 농작업 재해 질환 및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 농작업 안전모델 농가 인증, 중앙-지방 조직 강화 및 주요 기능 등
  -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우선 관리 작업 도출 및 안전관리 기준 제시
- 인터넷을 통한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운영 및 원격 건강·안전 상담
  - 인터넷을 통한 원격 건강·안전 전문가 상담 실시('07~'09)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구축·운영 : ('06) 18개소 → ('09) 165개소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 (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 편성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 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 심의회(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감시체계 구축(26개소) 및 농작업 안전보건 TFT 및 산·학·관·연 협력체 구축·운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100%
- 지원조건
  -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
  - 기존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해당과제 연구추진 능력이 검증된 부서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 운영절차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
  -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이 없는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작업 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지원 및 농작업 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지원
- 시도별 농작업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07)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	3	3	3	3	3	5	3	3	0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00		300			300
2007			250		250			250
(증△감)			△50		△50			△5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작업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조직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 및 기능강화에 노력
  - 유관기관 관련자, 외부 전문가, 정책입안자,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실시
- 1차년도 농작업사고 감시체계를 시작으로 감시대상 범위 확대
- 농촌진흥청과 해당 부서는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안전 향상을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김경란 연구사, 연락처 : 031-299-0471)

### < 1-2-3-3. 농작업 안전모델(Safe Farm Zone) 조성사업(농촌진흥청)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및 건강상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 활동을 실행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함
- 마을단위 농작업 안전관리의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 사업추진방향

-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실천 종합 모델 마을로 육성
- 전문가 컨설팅 등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 예방 대책 추진
- 사업추진단 운영으로 지도, 연구, 학계,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전문적 지원 확보
- 사업시행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실시와 피드백
-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력 기반 조성

#####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42조제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 기초조사 및 심사(시·군) →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마을 추천(시·군→시·도) → 검토 후 대상마을 확정(시·도) →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마을) → 세부사업추진 계획수립(마을, 시·군, 시·도) → 사업추진(마을, 시·군, 시·도, 중앙) → 기술지원 및 평가(시·도, 중앙)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설원예(채소, 화훼, 버섯 등), 노지채소, 과수, 축산 등 주산 단지 마을(리)
- 사업 규모 : 17개소 (신규 8, 기존 9), 개소당 3년간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신규 마을 : 마을당 120백만원, 국비 50% · 지방비 50%
  - 기존 마을 : 마을당 40백만원, 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조건
  - 농작업조건 : 주작목 농가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크며 농작업 유해요인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마을
  - 사업참여도 : 참여농업인수가 최소 50명 이상으로 전체 농업인 중 참여 희망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마을
  - 사업기반 : 이장/지도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마을민 조직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등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의 건강수준 및 농작업유해요인 등 진단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황 파악,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
  -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담당 지도사, 마을 운영위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실시
  - 현황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개선 방안 도출 : 올바른 작업자세, 농기계 · 기구의 안전가동, 보호구 사용, 밀폐공간 안전 작업, 유해물질 안전 보관 등
  - 개선안 실행 : 농작업환경 및 작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비 보급, 운동프로그램 및 건강요법 실시,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 시도별 배분내역('07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7	2	2	2	2	2	3	2	2
신규	8	1	1	1	1	1	1	1	1
기존	9	1	1	1	1	1	2	1	1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4년 (총 9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540				540	540		1,080
2007	660				660	660		1,320
(증△감)	120				120	120		24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신규사업 마을의 사업추진 기반조성 및 종합적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안 도출 지원
- 2차년도 사업마을의 개선방안의 지속적인 실행과 보완, 정착 지원
- 3차년도 사업마을 농업인의 자율적인 농작업 안전관리 역량 정착 지원 및 유형별 농작업 안전관리 표준안 도출
- 3년차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실시 및 성과 홍보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과 심미옥 생활지도관, 연락처 : 031-299-2872)

## 다.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강화

### (1) 개 관

#### □ '07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농산어촌에 국공립보육시설 37개소를 신축하여 도시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지속적 확대
  -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이하인 농산어촌 32천명을 대상으로 매월 162천원을 지원(농림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는 수혜가구는 지원배제)
-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 지원단가를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단가의 50%에서 70%까지 확대
  - 지원대상을 만5세 이하에서 만6세 취학유예 아동도 포함
-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 지원기간 30, 도우미 지원기준 단가 30천원/1일
- 사고농가 및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고농가 영농지원 8천명, 취약농가 가사지원 15천명 계획
- 최근 농촌지역의 외국여성과의 결혼하는 가정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가 등 기관·단체의 정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실시
  - 직접 방문이나 소그룹 형식의 교육과 상담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착지원

□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 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 계			
보육시설확충			6,679		6,679	6,678		13,357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31,104		31,104	31,104		62,208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 지원	50,743				50,743	50,743		101,486
여성농어업인 센터설치확대						3,792	643	4,435
농어기도우미지원						4,611	1,062	5,673
취약농가인력지원	3,860				3,860		1,654	5,514
여성결혼이민자지원	1,923				1,923	674		2,597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203				203	202		405
생산제품 품질 향상지원	225				225	225		450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100				100			100
합 계	57,054		37,783		94,837	98,029	3,359	196,225

□ '08년도 추진방향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보육시설 우선 설치하고 열악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 추진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전체 농어가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
- 영농도우미는 사고에서 질병으로 확대하고 지원일수를 15일까지로 확대, 가사도우미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실비 인상 추진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창업지원,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및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 (2) 세부과제

### <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여성가족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력의 안정된 사회참여

#####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에 매년 27~50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다양한 방안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시설 신축 이외에 민간보육시설 매입 및 공공시설과 복합설치 추진
  -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제공받아 국공립으로 전환
  - 농촌지역의 경우 보육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소규모(20~60명)로 건립토록 유도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

##### ○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시군구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지역 결정하여 세부운영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도에 송부

- 시·도 :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육시설 설치 수급사항 등을 파악 후 검토의견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송부
- 여성가족부 : 각 시도별 확정내시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 : 보육시설 이용 아동, 37개소
- 지원형태 및 금액 : 지자체 보조 (개소당 361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 361백만원/개소 (100평 기준)
  -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 (신규시설 : 50백만원/개소, 기존시설 : 30백만원/개소)
  -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 신규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0년 (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4,874		4,874	4,873		9,747
2007			6,679		6,679	6,678		13,357
(증△감)			1,805		1,805	1,805		3,61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보육시설 우선 설치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 추진

(사업담당자 : 보육지원팀 민영신 사무관, 연락처 : 02-2100-6835)



## <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여성가족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지역 취학전 만5세아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 도모
-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소득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사업추진방향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지속적 확대

#### ○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추진절차 : 여성부 → 시·도 → 시·군·구 → 보육아동(보육시설)
- 시행주체 :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4인가구 기준 369만원)이하 가구의 농산어촌 만5세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육아양육비 수혜가구는 제외

- 지원단가 : 월 162천원
- 사업규모 : 32,505명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의 자녀 만5세아에 대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산어촌 만5세아에 대한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월162천원)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2,259		32,259	32,259		64,518
2007			31,104		31,104	31,104		62,208
(증△감)			△1,155		△1,155	△1,155		△2,310

※ '06년도 전체 만5세아 계획대비 집행은 91.9%로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07년도 농산어촌 만5세아 계획은 31,104백만원(32,505명)으로 '06년도 집행실적 34,485백만원(36,037명)의 90.2% 적용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수준 유지
- 지원단가 인상
  - '07년 162천원 → '08년 167천원

(사업담당자 : 보육재정팀 한강희 사무관, 연락처 : 02-2100-6826)

###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농림부)>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업생산성 제고

##### ○ 사업추진방향

-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을 저하를 완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양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 □ '07년도 추진계획

#####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 추진절차

- 농업인은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읍·동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재 및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실적을 근거로 지원금을 매월 농업인 계좌에 입금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어가 농어업인의 영유아(만0~5세 및 취학유예 만6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및 취학유예 만6세 자녀 32천명/월
- 지원금액 및 형태 : '07년 사업비 26,782백만원, 사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지원금액)

< 보육료 지원 >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만5세아 및 취학유예 만6세아는 100%)
-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0세	'06.3.1 이후 출생	253,000	수업료 및 급식비
1세	'05.3.1 ~ '06.2.28	222,000	
2세	'04.3.1 ~ '05.2.28	183,000	
3세	'03.3.1 ~ '04.2.28	126,000	
4세	'02.3.1 ~ '03.2.28	113,000	
5세	'01.3.1 ~ '02.2.28	162,000	
6세(취학유예)	'00.3.1 ~ '01.2.28	162,000	

※ 참고 :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0세 361천원, 1세 317천원, 2세 262천원, 3세 180천원, 4~5세 162천원

< 교육비 지원 >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 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39,000	126,000	수업료 및 급식비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 만5세아에 대하여는 연1회에 한하여 입학금을 추가로 지급

※ 연령기준은 보육료와 동일

- 시도별 배분내역('07년)

시도	사업량(명)	예산(천원)	비고
계	30,379	26,782,685	
서울특별시	9	8,000	
부산광역시	152	130,000	
대구광역시	183	160,000	
인천광역시	166	145,000	
광주광역시	6	6,000	
대전광역시	14	13,000	
울산광역시	277	240,685	
경기도	4,661	4,110,000	
강원도	1,554	1,370,000	
충청북도	1,936	1,710,000	
충청남도	3,900	3,440,000	
전라북도	2,517	2,220,000	
전라남도	4,204	3,710,000	
경상북도	3,831	3,380,000	
경상남도	3,112	2,740,000	
제주도	3,857	3,400,000	

※ 시도별 배분은 '06년도 실적에 따라 배분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1,999				21,999	21,999		43,998
2007	26,782				26,782	26,782		53,564
(증△감)	4,783				4,783	4,783		9,56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전체 농어업인의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07) 농지소유 5ha 미만 → ('08이후)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확대
  - 지원단가 : ('07) 법정 저소득층 정부보육료 단가의 70% → ('08) 75%

②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추진절차

- 농업인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읍·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매월 농업인에게 계좌입금
- ※ 지원대상 결정내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사업내용(계속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어가로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만0~5세 및 취학유예 만6세)를 둔 여성농업인 등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및 취학유예 만6세 자녀 46천명/월
- 지원금액 및 지원형태 : '07년 사업비 23,961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지원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수준(단, 만5세아 및 취학유예 만6세아는 50%)

· 연령별 월 지급액 및 연령기준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비고
0세	'06.3.1 이후 출생	126,000	
1세	'05.3.1 ~ '06.2.28	111,000	
2세	'04.3.1 ~ '05.2.28	92,000	
3세	'03.3.1 ~ '04.2.28	63,000	
4세	'02.3.1 ~ '03.2.28	57,000	
5세	'01.3.1 ~ '02.2.28	81,000	
6세(취학유예)	'00.3.1 ~ '01.2.28	81,000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9,613				9,613	9,613		19,226
2007	23,961				23,961	23,961		47,922
(증△감)	14,348				14,348	14,348		28,696

- 시도별 배분내역('07년)

시도	사업량(명)	예산(천원)	비고
계	27,758	23,961,161	
서울특별시	2	2,000	
부산광역시	27	23,000	
대구광역시	59	51,000	
인천광역시	74	64,000	
광주광역시	2	2,000	
대전광역시	20	17,000	
울산광역시	69	59,685	
경기도	2,455	2,120,000	
강원도	2,111	1,822,000	
충청북도	1,718	1,483,000	
충청남도	3,019	2,606,000	
전라북도	2,565	2,214,000	
전라남도	4,419	3,814,000	
경상북도	5,400	4,662,000	
경상남도	4,909	4,238,000	
제주도	909	784,161	

※ 시도별 배분은 '06년도 실적에 따라 배분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전체 농어업인의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07) 농지소유 5ha 미만 → ('08이후)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확대
  - 지원단가 : ('07)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 ('08이후) 단계적으로 50%(5세아는 70%)까지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신우식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5)



## <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지방자치단체)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 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 사업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등 연차적으로 설치 확대
-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 모임, 나눔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위상 재정립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절차
  - 도 :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선정, 사업비 배정, 사업실적 평가 등
  -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이송, 사업비 교부, 센터 지도감독, 사업비 정산
  - 센터 운영자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시행, 사업추진 결과보고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 : 각 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센터 운영자

- 사업규모 : 전국 3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센터당 109~124백만원, 지방비 85% · 자부담 15%
- 사업 주요내용
  - 필수사업 :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 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 시·도별 운영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	4	3	3	4	7	4	2	6	6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재원형태 : 지방비 85%, 자부담 15%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624	620	4,244
2007						3,792	643	4,435
(증△감)						168	23	191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위주로 지속적 설치 확대 유도
- 필수사업 외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의 내실화 유도

(총괄담당자 : 농림부 여성정책과 신우식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5)

### <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어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어업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어업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 사업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어업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 기준 720천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사업으로 추진
-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에도 지역특성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절차 : 시도(지침통보, 예산지원) → 시군(지침통보) → 읍면동(지침홍보)  
→ 출산여성농업인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내용은 지방이양 전 '04년도 기준임. 각 자치단체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인 :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조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국고 12,000원, 지방비 12,000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어업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07년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계획(확대내용 위주)

- 지원인원 : 4,276명

- 지원예산 : 총 5,675백만원(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 사업내용
  - 지원단가 인상 : 30천원 → 대구 35천원, 울산38, 충북 35, 충남 35, 경북 (영양 35), 경남 35
  - 지원일수 확대 : 30일 → 인천 45일, 경기 60, 충북 45, 충남 45, 전북 50, 경북(안동 90, 영주 60)경남 60, 제주45
  - 자부담 비율 경감 : 20% → 대전 10%, 전북 10

○ 예산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재원형태 : 지방비 80%(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869	671	3,540
2007						4,611	1,062	5,673
(증△감)						1,742	391	2,133

※ 지방비는 분권교부세로서, 농어가도우미 사업비는 농업비항목(농어가도우미사업 등 6개사업)으로 통합 배정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 등의 복지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및 이용범위 확대, 지원단가 현실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본 사업을 지속 확대·발전

(총괄담당자 : 농림부 여성정책과 이상목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9)

### <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사고농가 영농지원,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지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희인력을 농촌의 취약농가에 연계하는 도농 인력지원체계 구축
- 영농도우미는 질병·교육도우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원일수·지원단가 등 점진적 확대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등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 사고농가 영농인력지원 >

- 사고가 발생한 농업인(69세 이하, 5ha미만) → 농협(영농인력지원 신청) → 지역 농협(사실 확인) → 인력지원단(영농인력 자료제공, 농가 자체추천 가능) → 지역 농협(영농인력 및 노임 지원)

< 고령취약농가 가사인력지원 >

- 지역 농협(고령취약농가 현황조사 및 지원대상농가 선정) → 인력지원단 (인력자료제공) → 지역농협(가사인력 및 실비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사고농가 영농지원 :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 65세이상 농촌 고령가구,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사업 규모(사업량)

- 사고농가 영농지원 : 8천명
- 취약농가 가사지원 : 15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고농가 영농지원 : 사고농가당 농촌평균임금 50천원의 70%인 35천원 지원, 10일 이내, 민간보조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 자원봉사자 10천원/일, 민간보조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재원형태

- 사고농가 영농지원 : 국비 70%, 자부담 30%
- 취약농가 가사지원 : 국비 70%, 농협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711				1,711		733	2,444
2007	3,860				3,860		1,654	5,514
(증△감)	2,149				2,149		921	3,07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지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희인력을 농촌의 취약농가에 연계하는 농촌 인력지원단을 구축하여 차질 없는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체계 확립
- 영농도우미는 질병까지로 확대, 지원일수를 15일까지로 확대. 가사도우미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실비 인상 추진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이상목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9)



### < 1-3-3-3.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으로 육성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여건조성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최근 농촌지역의 외국여성과의 결혼하는 가정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가 등 기관·단체의 정착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의 연차별 확대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원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지원), 제18조(농산어촌여성의 복지증진) 등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농림부(사업계획 수립)→전문기관(교육도우미 및 가족프로그램 운영 관리)→도 세부계획 수립(부부교실, 가족캠프)→시군(교육도우미 운영)

#####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 사업 규모(사업량) : 8도 30시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원금액 : 방문교육도우미 50천원/1일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교육도우미 수당 등), 민간경상보조(전문기관 운영비)

- 지원조건

- 한국어교육비용 등 : 국비 70%, 지방비 30%
- 도우미운영전문기관 : 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신속한 적응지원이 필요한 결혼초기 가정에 대하여 교육도우미를 통하여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교육과 상담 지원 (한국어교육 1,800명, 소그룹 600명)
- 농촌지역의 집합교육 등 적응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실시

\* '07 교육도우미 운영인원 : 300명(10명×30시·군)

- 상대국의 문화이해, 갈등해소 계기마련 등 가족으로의 통합 지원
- 가족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도록 부부교실(320명), 가족캠프(160명) 실시 지원
-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에 대하여는 모국방문(8명) 비용 지원 및 선진 농업 현장 견학·문화탐방(16명) 등 격려
- 우리 농촌생활 정착에 노력한 가정들의 사례집을 한글·영어·베트남어 등으로 발간·배포

- '07년 사업 실시지역

도별	시범실시 지역	시·군 수
경기도	이천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4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3
충청북도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3
충청남도	서산시, 논산군, 부여군, 당진군	4
전라북도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4
전라남도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함평군	4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봉화군	4
경상남도	함안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4
계		30

○ 예산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재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 : 국비 70%, 지방비 30%
  - 민간경상보조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007	1,923				1,923	674		2,597
(증△감)	1,923				1,923	674		2,597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07년도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지역 확대 및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추가 실시 등 지원내용 보완·확대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이상목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9)

### <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농외 경제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촌사회의 활력 부여 및 재촌영농(在村營農)을 지속하게 함
- 여성농업인 능력 활용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의 틈새시장 수요 충족
-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및 세계화 기반 구축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자원을 이용한 여성 보유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도
- 신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제품 생산 및 전문 기술지도 강화
- 사업주체에 대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등 지속적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사업절차 : 사업내용, 사업가물량 등 예산편성 요령, 시도 시달 (농진청) ⇒ 사업계획 수립,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여성농업인) ⇒ 사업 물량 확정, 시도 시달(농진청)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타당성 심사·확정 (시군 농업기술센터) ⇒ 국비, 지방비 지원신청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지원 여부 결정 (농촌진흥청) ⇒ 사업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진청에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외소득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
- 사업 규모(사업량) : 9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05백만원 (개소당 45백만원, 국비 50%)
- 지원조건
  - 소자본으로 여성특유의 솜씨를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 또는 마을단위,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 주요내용 : 전통식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사업을 위한 작업장 및 기구 설치, 기술습득, 포장개발, 유통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개소)	9	1	1	1	1	1	1	1	1	1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6년 (총 10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02.5					202.5		405
2007	202.5					202.5		405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여성이 보유한 솜씨를 활용하여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도록 장려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창업과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이수자 우선 선정
- 사업대상을 전통식품에서 다양화하여 농산물 가공분야 (수공예품, 천연염색, 임가공 등)로 확대하여 추진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과 유군선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9)

## < 1-3-5-2.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일감갓기 사업체의 상품성 제고로 판로확대와 소비촉진 유도
-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지역 특색 있는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 사업추진방향

- 기존 농촌일감갓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제품의 질과 생산성 향상
- 지역성과 상품특성을 살린 고유 브랜드 개발 및 제품의 차별화·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 농촌일감갓기 사업장 중심 품목별 연구회 및 시군단위 공동 브랜드화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사업절차 : 사업내용, 사업가물량 등 예산편성 요령, 시도 시달 (농진청) ⇒ 사업계획 수립,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여성농업인) ⇒ 사업 물량 확정, 시도 시달(농진청) ⇒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타당성 심사·확정 (시군 농업기술센터) ⇒ 국비, 지방비 지원신청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지원 여부 결정 (농촌진흥청) ⇒ 사업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진청에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추진 대상자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50백만원 (개소당 30백만원, 국비 50%)
- 지원조건
  - 농촌일감갓기사업장 중에서 농외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우선 지원
  - 지역별로 농촌일감갓기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별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었거나 필요한 경우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개발, 상표등록, 매뉴얼 제작 등
  - 포장/ 용기 디자인 개선 (소형화 · 고급화 · 다양화)
  - 상품성 유지를 위한 포장재질개선, 포장방법개선 등
  -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소포장 개발, 표준출하 규격 맞춤 등
  - 홍보물 제작 : 제품 소개를 위한 리플렛, 카타로그, 홍보물의 제작 기획, 디자인 편집, 사진촬영, 제작물 인쇄 등
  - 사업장 시설 및 기구보완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	1	2	1	2	2	2	2	2	1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16년(총 1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25					225		450
2007	225					225		45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원 사업장의 객관적 경영 평가의 강화와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실질적 품질 경쟁력 강화
- 우먼팜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트를 통한 전자마케팅 지원 강화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체 조직 위주의 사업추진 지도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도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과 유군선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9)



### <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의 농외 경제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취약한 경영, 마케팅, 제조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여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사업장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고객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농가의 홈페이지 관리 및 전자 마케팅 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연결

##### ○ 사업추진방향

-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 개별 홈페이지 및 우먼팜 홈페이지에 국가 공인인증 획득상황(품질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및 내용 등록 등
- 우먼팜 시스템 홍보 강화 (메인 시스템과 개별 홈페이지 연계홍보, 각종 검색 사이트 등록, 홍보 이벤트 실시 등)
- 사업주체에 대한 교육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업인의 전자 마케팅 능력 제고 및 자가 운영능력 지원
  - 권역별 교육 : 4개 권역, 년 3회 (총 12회)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사업절차 :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계획 등 시도 시달 (농진청) ⇒ 시군농업 기술센터에 사업 신청 (여성농업인) ⇒ 사업 물량 확정, 시도 시달(농진청) ⇒ 사업추진(농진청) ⇒ 사업결과 보고(시군농업기술센터) ⇒ 예산지원(농촌진흥청)

○ 사업 내용 (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추진 대상자
- 지원금액 및 형태 : 100백만원 (국비 100%)
- 지원조건
  - 농촌 일감갓기 사업장 중에서 농외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고 정보화 능력이 우수한 자
  - 컨설팅으로 사업장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유형별 우수 센터로 선정된 시군 우선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우먼팜 유지개선 : 농가별 홈페이지 보완개발, 기능개선, 위탁운영 등
  - 농촌일감갓기 사업장의 경영능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6년 (총 10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00				100			100
2007	100				100			10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외소득 활동지원 사업 추진 여성농업인 중 사업추진 우수자 대상 컨설팅 및 우먼팜 신규 개설 지원
-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창업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사업장 별로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사업추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추진으로 사업 효과 증대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과 유군선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9 )

## 라.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 (1) 개 관

#### □ '07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기능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06년 16개소 → '07년 14개소)
- 지역사회중심의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연구 수행 ('06~'08)
  - 농촌지역의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과 노인복지수준 진단지표 개발 지원
-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년생활 유도 등 장수문화 정립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350개소('05년 100, '06년 200, '07년 50) 육성 지원
-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의 확충
  - 경영이양계획('04~'13) : 48.2천ha

#### □ 예산 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2,550		2,550	2,550		5,100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개발			100		100			100
농촌건강장수 마을육성	8,000				8,000	8,000		16,000
경영이양직불제	11,263				11,263			11,263
합 계	19,263		2,650		21,913	10,550		32,463

## □ '08년도 추진 방향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27개소) 설치 지속 지원
  - '07년 신축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14개소)에 대한 의료장비, 목욕용 차량 등 장비비 지원
- 자생적인 마을중심의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을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노인의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농촌진흥기관·공무원·마을 등 3요소를 활용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자족마을로 육성
- 고령농업인이 은퇴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조기은퇴직불제도 도입 검토
  - 맞춤형농정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영이양직불 제도개선 추진

## (2) 세부과제

### <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보건복지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 해소를 위해 가정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담 해소 및 복지혜택의 지역적 편재 해소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농어촌 지역 공공부문 기본 인프라 확충

#####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농어촌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구

#####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대상 선정(복지부) → 예산신청(시·군·구)  
→ 예산 지원(복지부) → 사업시행(시·군·구)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총액 51억, 14개소 신축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3억 4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사업신청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한해 설치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4개소 신축비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4	1	1	5	4	1	2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750				2,750	2,750		5,500
2007			2,550		2,550	2,550		5,100
(증△감)	△2,750		2,250		△200	△200		△4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27개소 설치 지원
  - 농어촌 지역 중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
- '07년에 신축된 재가노인복지센터 14개소에 대한 장비비 등 지원
  - 노인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의료장비, 목욕용 차량 등을 지원

(사업담당자 : 노인요양운영팀 송한목 사무관, 연락처 : 031-440-9634)

### < 1-4-2-3.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리적 조건, 인구밀도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등의 문제로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사회중심의 자생적인 노인 보호체계 구축 기반 조성
- 농촌지역의 다양한 노인보호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인 수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노인 인력활용 및 복지욕구 충족

##### ○ 사업추진방향

- 노인보호자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노인봉사원 프로그램 개발('06~'08)
  - 노인수발을 위한 마을단위 인적자원의 특성별 활동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여 대상자별 전문화된 노인수발 기술 프로그램 개발 : 2종
- 지역사회중심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단위 老-老돌봄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06~'08)
  - 老-老돌봄 운영체계에 대한 한·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의 마을단위 老-老돌봄 적용을 위한 문제점 및 운영방안 도출
  - 노인에 의한 노인보호활동 사례분석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1종
- 농촌지역 노인복지수준 진단지표 개발 지원('06~'08)
  -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균형을 위하여 노인복지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마을단위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老-老돌봄 참여 및 농촌주민용 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 2종
- 지원금액 및 형태 : 100백만원, 국비 100%
- 지원조건
  -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
  - 기존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해당과제 연구추진 능력이 검증된 부서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 운영절차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
  -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이 없는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촌지역 마을단위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지원

###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8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00		100			100
2007			100		100			10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자생적인 마을중심의 노인보호활동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실시
-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검증 작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 향상
-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사업으로 연계하여 농촌노인의 재가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
- 농촌진흥청과 해당 부서는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윤순덕 연구사, 연락처 : 031-299-0495)

#### < 1-4-2-4.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 학습·사회활동, 안전한 환경조성, 경제·소득 활동 등 4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
- 농촌노인에게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 등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 영위와 저강도의 노동을 투입하여 농업·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는 일거리 개발 및 참여로 생산적인 활동 영위와 생활환경 정비, 건강하고 당당한 성공적인 노년생활 영위와 생활의 질 향상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더불어 사는 문화 조성과 장기적 도시민 유치 효과
- \* 2006년도 건강장수마을 노인의 생활만족도 '05년 55.4%에서 '06년 57.6%로 향상

###### ○ 사업 추진 방향

- 노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의 전승기반 조성
-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정비 등 종합적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고령화 대책(문제해결)의 시범 운영
- 생산적인 일거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도모 등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 1교-1촌, 어린이-노인 등 세대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간, 가족간 통합
- 건강한 노인, 농촌여성조직체 협력으로 거동 불편노인의 안전 체계 구축
- 도시은퇴자 등 도·농 교류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강화
- 3년간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 시행, 마을민의 자발적 참여 조장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고령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절차 : 사업신청(마을) → 심의회, 대상마을 선정(시군농업기술센터) → 마을추천(시군→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예산지원(농촌진흥청→시·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시행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마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마을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
- 사업규모 : 350개 농촌건강장수마을('05년 100, '06년 200, '07년 50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연간 45~50백만원 (국고 50%·지방비 50%, 개소당 3년간 지원)
- 지원조건
  - 마을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 55세 이상의 예비노인 중 희망자와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 전승이 가능하며 주민협의를 거쳐 합의가 된 마을(2007 신규 마을은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
  - 노인들의 농업·공예품 제조 등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운동, 학습활동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왕성한 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마을
  -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복지기반이 되어 있으며 노인생활지도마을, 농촌여성 일감 갖기, 향토 음식 맥 잇기 등 가급적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이 기존에 투입되어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마을 우선
  - 일반 마을 중 마을의 중심 주제 발굴이 가능하고 마을민의 협동심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노인과 마을민간의 교류가 활발한 마을 등
  - 사업추진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어 사후관리가 가능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식생활, 운동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지원으로 장수의 조건 갖추기
- 학습·사회활동 촉구를 통한 뇌의 활동 촉진으로 노화 방지
-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 수질 등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전 생활 유도
- 소득·경제활동 지원으로 경제적·심리적 여유 갖기

- 시도별 배분내역('07년 농촌건강장수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업량 (개소)	'07신규사업	50						
	'05~'06계속 사업	300	2	3	5	1	2	1
	소 계	350	2	3	5	1	2	1
사업비 (백만원)	합 계	8,000	45	67.5	112.5	22.5	45	22.5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개소)	3	11	6	5	9	5	3	6	2
	25	57	25	38	25	36	28	42	10
	28	68	31	43	34	41	31	48	12
사업비 (백만원)	637.5	1,557.5	712.5	980	762.5	935	705	1,095	300

○ 예 산

- 사업기간 : '05년 ~ '11년 (총 7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7,600				7,600	7,500		15,100
2007	8,000				8,000	8,000		16,000
(증△감)	400				400	500		9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고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 마을 대표자, 지도자, 노인, 마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현장교육 강화
  - 생활에 활력을 주는 즐거운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으로 활기찬 마을 조성
  - '05, '06년도 장수마을을 모델로 '07신규마을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제 강화
  - 수질 등 환경 개선으로 '건강·장수' 컨셉에 맞는 환경 조성
- 농촌진흥기관·공무원·마을 등 3요소를 활용한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자족마을로 육성
  - 농촌진흥기관 교육 및 마케팅, 공무원 연구·상품개발, 마을 생산활동 등
  - 건강한 노인, 농촌여성 조직체를 활용하여 안부 묻고 확인하기, 비상시 대응 체제 정비, 노인봉사원 교육 등으로 서로 돌보는 노인돌봄체계 기반 조성
  - 어르신이 공경 받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조성

(사업담당자 : 농촌생활과 이금옥 생활지도관, 연락처 : 031-299-2878)

### <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13년까지 고령·은퇴농업인의 30%(97천호)를 경영이양시켜 쌀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 쌀 전업농 49.6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49.1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농가당 0.99ha 영농규모를 확대 및 생산비 절감

##### ○ 사업추진방향

- '13년까지 97천명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3.5천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 81.6천ha('04~'13년 48.2천ha)의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이양함으로써 '13년 쌀 전업농 경영목표 면적 430천ha 달성에 기여

##### ○ 사업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 사업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신청(농업인→농촌공사) → 현지조사(농촌공사) → 대상자선정·심의(농촌공사) → 대상자 통보(농촌공사→신청 농업인)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약정체결(농촌공사↔농업인)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농촌공사→농업인) → 사후관리(농촌공사)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10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69세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소유농지를 완전 탈농 조건

- 한국농촌공사 또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ha당 일정금액을 지급
- 사업 규모 : 81,558ha ('06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49,076ha)
- 사업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451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1,412억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국고 100%)
  - 지급상한 : 2.0ha까지
  - 지원연령 및 단가
    - \* 매 도 : 만 70세까지 ha당 241천원을 매월 분할지급(연간 2,896천원/ha)
    - \* 임 대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

○ 예 산

- 사업기간 : '97년 ~ '13년 (총 17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농특회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4,391				14,397			14,391
2007	11,263				11,263			11,263
(증△감)	△ 3,128				△ 3,128			△ 3,128

\* 사업물량 : '06년 3,709ha, '07년(P) 2,000ha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고령농업인이 은퇴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조기은퇴직불제도 도입 검토
  - 맞춤형농정 기본계획(장관결재, '06.12.29)과 연계하여 경영이양직불 개선 추진
  - 경영이양직불제가 규모화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개선 추진

(사업담당자 : 농산경영과 김기훈 서기관, 연락처 : 02-500-1777)

##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 가.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 (1) 개 관

##### □ '07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전국 농산어촌 88개군 지역에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
  -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성화된 우수 고등학교 모델로 집중 육성
- 통학거리내에 있는 인근 2~3개의 소규모학교를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중심 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및 체육관, 도서실 등 공동 활용시설 구비
  - 다양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운영 및 통학버스 제공
-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
  - 전남 곡성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 강화
-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육수단 개선
  - e-learning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형의 교육자료 개발 및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청 단위 적용프로그램 개발 지원
-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학습능력향상, 적성·소질 개발
  -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적·물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므로써 방과후 교육활동의 교육적 효과 제고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 기회 부여
  -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방학캠프 운영프로그램 시행
- 농어촌지역에 공립 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교실 개·보수비 지원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교육비 지원
- 농산어촌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유아교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예산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 계			
우수고교 육성	24,000				24,000	24,000		48,000
한국농업전문학교 운영	6,820			560	7,380			7,380
학교군 구성·운영	3,000				3,000	3,000		6,000
복식수업교재등 개발	200				200	200		400
방과후 교육활동	13,200		16,620		29,820	69,580		99,400
방학캠프 지원	1,100				1,100	1,000		2,100
공립병설유치원신증설	642				642	642		1,284
유치원유아교육비			207,814		207,814	207,814		415,628
사립유치원교사처우개선	2,175				2,175	2,175		4,350
합계	51,137		224,434	560	276,131	308,411		584,542

□ '08년도 추진방향

- 농산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안심하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08년이후 실제적으로 농산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시 지역으로 대상 확대 검토
-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 등 확산 추진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자생력을 갖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습지도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하므로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 시·도 교육청별 도시체험학습 프로그램개발 권장
- 만5세아 전체수의 70%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및 두자녀 교육 병행 실시

## (2) 세부과제

### < 2-1-1-1.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 방지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 사업 추진방향

- 전국 농산어촌 88개군 지역에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
-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성화된 우수 고등학교 모델로 집중 육성

#####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 대통령 보고('04.2.23.)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04.3)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05.4.)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교육청
- 수혜자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학생
- 집행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선정(시·도교육청)→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단위학교)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 군단위 고등학교

- 사업규모 : 전국 농산어촌 군단위에 우수고 88개 선정 지원
  - \* '07년 신규 44개 선정 지원 240억원(국비)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교육과정 운영, 학생선발 등에 자율 부여(자율학교 지정)
  - 교장 초빙·공모제 우선 적용
  -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숙사 확충, 다목적실, 특별실, 어학실 설치, 장학금 지원 등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6,800		7,120		23,920	23,920		47,840
2007	24,000				24,000	24,000		48,000
(증△감)	7,200		△7,120		80	80		16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속 추진)
- '08년이후 실제적으로 농산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시 지역으로 대상 확대 검토

(사업담당자 : 교육복지정책과 김두용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45)

## <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와 DDA/FTA협상체결 등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농촌의 회생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육성
-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농촌관광 증가 등 농업·농촌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 장기현장 실습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습교육생 학교 소집교육 강화 및 실습교육비 지원금액 증액
-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Network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신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농 직업훈련과정 신설 운영
- 우수학생 유치 등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명변경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농업전문학교 등 설치령(2003.2.24대통령령 제17910호)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
- 사업추진절차 : 계획수립 보고(학교→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 심사 및 결과 통보(농림부 및 농촌진흥청→학교)→ 사업 시행(학교)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한국농업전문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재학생 720, 졸업생 1,442)
- 사업 규모(사업량) :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육운영(1)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100%(농특회계,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육운영 : 6,820백만원(재학생 성적 장학금 20백만원포함)
  - 창업농 직업훈련과정 시범운영 147백만원
  - 국내·외 장기현장실습교육생 보상금 : 560백만원(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지원조건
  - 학교 입학 후 재학기간 동안 입학금, 수업료 및 숙식비를 전액 지원
  - 졸업 후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영농 종사
- 사업 주요내용
  - 우수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운영을 내실화하고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 강화 등

○ 예산

- 사업기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농특회계,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608			560	7,168			7,168
2007	6,820			560	7,380			7,380
(증△감)	212				212			212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학제 개편(3+1)에 따른 전공심화과정 설치 운영 준비 및 학과 계열화
- 졸업생간 지식 및 정보의 공유 활용을 위한 network 구축
- 정규과정 이외의 신규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농 직업훈련과정 활성화

(사업담당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이희용, 연락처 : 031-229-5161)

## < 2-1-2-1. 학교군 구성·운영(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통학거리 내에 있는 인근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를 두고, 교육인력·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으로 소규모 학교 운영 정상화

####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대통령 보고('04.2.2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05.4.)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선정(시·도교육청)→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단위학교)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 초, 중학교
- 사업규모 : 20개 학교군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학교군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및 공동 활용시설 구비
  - 다양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운영 (외국어교육,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등)

- 이동수업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제공
- 지원액 : 30억원 (20개학교군×3억원×50%)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2010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000				3,000	3,000		6,000
2007	3,000				3,000	3,000		6,00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확산

(사업담당자 : 교육복지정책과 고광휘 서기관, 연락처 : 02-2100-6345)

## <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지역의 이농,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육과정 질 개선에 기여
- 소규모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복식수업 운영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지원

#### ○ 사업추진방향

- e-Learning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형의 교육 자료로 개발
-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자료 및 적용 프로그램 개발
-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현장교원 적극 참여 유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농특회계)에 대한 「중기(’05~’09) 사업계획」
- 농어촌특별회계(1318-212-305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추진계획수립 및 운영(사업기관)

#### ○ 사업 내용(계속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대응투자를 고려한 선정과정에 있음



- 사업 규모(사업량)
  - 복식수업 교재 개발(6종),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2과제)
- 지원금액 : 4억원
- 지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복식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교육청단위 (시교육청은 제외)
  -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선정
  - 복식수업교재 개발 실적과 요구도를 고려하여 선정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복식수업 교재 개발 : 6종 >

- 기존 개발된 텍스트 형의 교수·학습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멀티형이면서 On-Line 탑재가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
- 획일적인 방식은 지양하고, 소규모 학교의 상황 및 복식학급의 구성 유형에 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시간, 공간, 활동 등 상황, 조건에 따라서 담당교사가 재구성하여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로 제공

<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2과제 >

- 소규모 벽지학교 교육과정 운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의 제시를 통해 '복식학교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 개발한 복식수업 교재를 수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 시도별 배분내역 : 국비 2억원 (적합한 도를 선정중)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총 4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00				200	15		215
2007	200				200	200		400
(증△감)						185		185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자료 제공이 필요한 교육청을 선정하여 추진
- 자체 사업으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는 교육청에 우선 대응 투자
-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 신규 연구학교 선정으로 개발 교재와 프로그램의 현장 적응성 제고

(사업담당자 : 교육과정정책과 박형규 교육연구사, 연락처 : 02-2100-6283)

#### <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소질·적성 개발 등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 방과 후 보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활동을 지원
- 학교 밖에서 충족되고 있는 다양한 과외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 지방자치단체·지역교육청·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성 제고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 사업추진주체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시·도교육감
  - \* 2002. 3월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업무 위임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88개 시·군

###### - 사업추진절차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기본계획수립(시·도교육청) → 예산확보 및 지원(시·도교육청)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 공모(교육부) →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교육청) → 사업계획서 심사 후 최종 선정(교육부) → 사업시행(지자체·교육청)

○ 사업 내용(기존사업)

< 방과후교육활동 지원(기존) >

- 총사업비 : 203,400백만원('07)
-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교
- 사업 규모(사업량)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 30%, 지방비 70%
- 사업 주요내용
  - 교육소외 지역·계층을 위한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역교육청 단위 순회강사 확보 및 강사비 지원
  - 교재·교구, 통학버스 등 운영비 지원
  - 지역사회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 활용
  - 문광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국악·연극·영화 등) 강사풀제 활용 확대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기존) >

- 총사업비 : 99,400백만원 ('07)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읍·면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 사업 규모 : 88개 기초자치단체 선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30%, 지방비 70% (특별교부금 20%, 지자체 부담 50%)
- 지원조건 :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희망하고, 정부의 국고지원에 상응하는 대응투자 의지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
- 시도별 배분내역 : 1개 시·군당 11.3억원
- 사업 주요내용

-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여 학교별로 프로그램 특화 또는 학교간, 학급간 교육대상 확대 및 시설 개방
- 다양한 지도강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내 재직 교원, 인근 중소도시 학원 강사, 지역소재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강사의 질 관리 노력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 재원형태 : 국비 30%, 특별교부금 2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6,950		16,950
2007	13,200		16,620		29,820	69,580		99,400
(증△감)	13,200		16,620		29,820	52,630		82,450

\* 방과후교육활동 총예산중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예산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지역 학생에게 학습지도 및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역 학습·문화공동체 구축 유도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자생력을 갖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담당자 : 방과후학교기획팀 김세봄 사무관, 연락처 2100-6590)

## < 2-1-3-5. 도시문화 체험학습(방학캠프) 운영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교육복지 증진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문화 체험학습으로 문화 지체 완화

#### ○ 사업추진방향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 기회 부여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시문화 체험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
-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도시체험학습으로 인한 학부모 경비 부담 완화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보고('04.2.23))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예산지원(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세부계획수립(시·도교육청)→도시문화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해당학교)→계획 검토 및 선정·지원(시·도교육청)→도시체험학습 운영(해당학교)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면지역 이하(도서벽지 포함) 초등학교
- 사업 규모 : 면지역이하 초등학교 중에서 사업 신청학교

- \* 2,000개교 대상 (학교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교당 100만원 내외 (국비 50% · 지방비 50%)
    - \* 국비 1,000백만원 (2,000교 \* 500천원)
    - \* 농산어촌 운영관리비 : 100백만원
  - 지원조건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가 제출한 도시문화체험학습 계획서 심사 후 학교 규모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
    - \* 교육부는 시도별 면지역 이하 학교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은 계획서 심사 후 차등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문화 체험학습 실시
      - 문화유적 : 사찰, 성터, 궁궐 등 유적지 및 문화재
      - 공공기관 : 시청, 소방서, 교육청 등
      - 문화시설 : 각종 전시회, 영화관, 도서관 등
      - 산업시설 : 산업체, 공장, 백화점 등
      - 체육시설 : 운동장, 경기관람 등
  - 시도별 배분내역 : 면지역 이하 2000교 \* 500천원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08년 (총 4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035				1,035	1,035		2,070
2007	1,100				1,100	1,000		2,100
(증△감)	65				65	△35		3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6년도 국고 대비 지방비 확보율이 낮은 교육청은 차등배분
- 시·도 교육청별 도시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권장
- 단위학교는 전년도 운영 결과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체험학습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 여건에 따라 방학이나 학기 중, 선택하여 운영 가능
- 학부모의 추가적인 경비 부담은 가급적 억제
- 교과와 관련이 없는 체험활동은 지양

(사업담당자 : 학교폭력대책팀 신현철 연구관, 연락처 : 2100-6362)



## < 2-1-4-1.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공립 유치원 신·증설로 질 높은 유아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사업추진방향

- 유아교육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공립 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교실 개·보수비 지원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장
- 사업추진절차 : 지원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자체계획 수립 및 집행(시·도 교육청)→ 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시·도교육청)

####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총사업비 : 642백만원 (30학급×42,800천원×50%)
- 사업규모 : 30학급

####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재원형태 : 국비(농특회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750				3,750	3,750		7,500
2007	642				642	642		1,284
(증△감)	△3,108				△3,108	△3,108		△6,21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7년 사업추진결과를 검토하여 '08년이후 사업 계속여부 등 추진방안 마련

(사업담당자 : 유아교육지원과 임장주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77)

## <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만5세아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 구현
- 저소득층 만3·4세아에게 교육기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아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확대 ('04년도 신규)
- 저소득층 가정으로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 취원시 둘째 자녀 이상의 교육비 일부 지원 ('05년도 신규)
- \* 동 사업은 농어촌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소득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 ○ 사업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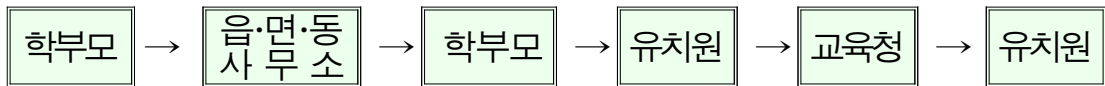
- 지원범위 및 지원액 증액으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범위 확대
  - 만 5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수준이하 (4인가족기준 369만원)
  - 만 3,4세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수준이하 (4인가족기준 369만원)
  - 지원액 증액
    - 국·공립 : 월 53천원(급식비 포함)이내
    - 사 립 : 월 180천원 이내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장
- 사업추진절차

(증명발급신청) (확 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지원)



○ 사업 내용(도시지역 포함)

구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교육비	비고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월 소득 인정액	369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369만원 이하	4인 기준
지원 금액	균등 지원 ▪ 국·공립 53천원 ▪ 사립 162천원	소득계층/연령별 차등 ▪ 국·공립 10.6천원~53천원 ▪ 사립: 32.4천원~180천원	▪ 국·공립: 53천원 이내 ▪ 사립: 3세 90천원, 4세 81천원 이내	월 단위
지원 인원	152,341명	167,562명	10,000명	329,903명
지원 예산	1,282억원	751억원	45억원	2,078억원

○ 예산

- 사업기간 : '99년~계속(만5세아), '04~계속(만3·4세아), '05~계속(두자녀 이상)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48,091		148,091	148,091		296,182
2007			207,814		207,814	207,814		415,628
(증△감)			59,723		59,723	59,723		199,446

\* 만 5세아, 만 3·4세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전체 예산임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유아교육비 지방 이양

(사업담당자 : 유아교육지원과 임장주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77)

#### <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지역간 양극화 해소
- 농어촌 지역 교육의 제도적, 질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구현
- 사립유치원 교사의 유아교육 담당교사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유아교육의 지역간 양극화 해소
- 교사의 질적 수준제고를 통한 유아교육의 학부모 만족도 제고

######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 및 30만 미만 도농복합도시에서 중소도시 및 전국으로 확대 추진을 통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 \* 교사 연봉 : 공립 2,372만원, 사립 1,214만원('04, 5년 이하 경력, '04년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

###### ○ 사업추진근거

- 「유아교육법」 제26조, 동법시행령제 32조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특별법 제26조
- 보육시설·유치원 서비스개선비용 지원 필요성 보고(「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VIP 보고,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05.5.4)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및 30만 미만 도농복합도시지역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
- 사업 규모(사업량) : 약 3,295명('06.4월 기준)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급담임수당 월 11만원
- 지원조건 : 사립유치원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학급담임교사에게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30만이하 도농복합지역에 소재하는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 월 11만원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시·도	전체 학급수	지원 학급수('05.4기준)
서울특별시	3,197	0
부산광역시	1,269	27
대구광역시	821	53
인천광역시	799	13
광주광역시	475	0
대전광역시	665	0
울산광역시	480	131
경기도	3,741	772
강원도	352	304
충청북도	330	145
충청남도	476	282
전라북도	635	190
전라남도	408	258
경상북도	909	564
경상남도	1,176	538
제주도	125	18
합계	15,958	3,295

\* 상기 기준은 예산 수립에 반영된 '05.4월 기준으로 '07년에는 230여 학급 증가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175					2,175		4,350
2007	2,175					2,175		4,35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촌 지역 및 도농복합도시 지역 확대 : 3,318백만원
- 5,027명 × 110천원 × 12개월 × 50%

**사립유치원 교원 현황**

(자료 : '05. 4 기준)

구 분		학급수	교원수
농 어 촌		2,028	2,954
중소도시		6,358	9,452
대 도 시		7,567	11,731
계		15,953	24,137
도 농 복 합 도 시	인구 30만명 미만 · 화성 등 40개 시, 복합도시중 12개 제외	1,399	2,088
	인구 40만명 미만 · 화성 등 45개 시, 복합도시중 7개 제외	2,039	3,085
	인구 50만명 미만 · 화성 등 48개 시, 복합도시중 4개 제외	2,302	3,499
	전체 (화성 등 52개 시)	2,999	4,559
농어촌 지역	+ 도농복합 30만명 미만	3,427 (2,261백만원)	5,042 (3,327백만원)
농어촌 지역	+ 도농복합 40만명 미만	4,067 (2,684백만원)	6,039 (3,986백만원)
농어촌 지역	+ 도농복합 50만명 미만	4,330 (2,924백만원)	6,453 (4,259백만원)
농어촌 지역	+ 도농복합도시 전체	5,027 (3,318백만원)	7,513 (4,959백만원)

(사업담당자 : 유아교육지원과 박정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6375)

## 나.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 (1) 개 관

#### □ '07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제한(1.5ha 이하)을 폐지하고 전농가로 확대('05이후)
- 농림어업인 교육비 부담경감 및 농산어촌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대
  - 지원인원 : 26천명(학기당 13천명), 지원금액 : 747억원(예산 441억원)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후계농업인 양성 및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속 지원을 통해 선도 농업인 육성 기반조성 및 잠재 인력군 확충
  - 전국 농과대 2학년생 이상중 졸업후 영농종사 희망자 2,500명
  -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중 성적우수·저소득층 자녀 4,000명
-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노력
- 자영 농수산계고 급식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젊고 유능한 농어업 전문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
-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60개소의 운영지원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지원 및 지역 장애인, 장애인가족, 특수교육 관련자에게 특수교육 정보, 장애인 진로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추진



□ 예산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91,985		91,985
대학생 학자금 용자	44,097				44,097			44,097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7,000	7,000			7,000
초중고생 급식비지원						65,961		65,961
자영농업계고 급식비지원						1,841	254	2,095
자영수산계고 급식비지원						114	114	228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3,000				3,000	3,000		6,000
합계	47,097				54,097	162,901	368	217,366

□ '08년도 추진방향

- 농어업인 고교생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 추진
- 농산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용자금의 회수율제고로 사업비 확충
- 재원확대를 통한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지원 확대와 지원내용과 사업 홍보
- 초·중·고 학생의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비 확대와 농어업 특별세 등 재원확대 추진
- 농수산고 급식대상자가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급식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 농산어촌 지역(군단위) 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90개소 운영 지원
  - 장애학생 순회교육 확대 지원, 지역의 장애아·가족, 특수교육 관련자에게 특수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 지역 특성과 수혜자 요구에 적합한 지원 서비스 운영

## (2) 세부과제

### <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지방자치단체)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도모
- 고교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에 대하여 연간 평균 926천원의 교육비 지원

##### ○ 사업추진방향

-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전 농가로 확대('05이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사업추진절차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보호자 → 이장경유 → 읍·면·동·장) → 학적확인 조회(읍·면·동장 → 학교장)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읍·면·동장 → 보호자)
- 지원근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사업규모('07)
  - 지원인원 : 99천명 수준 (1인당 926천원정도)
  - 지원금액 : 920억원 수준
- 사업주요내용
  - 지원금액 : 해당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원제외 : 국가, 자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은 제외
    -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자에 대하여는 지원가능

○ 예산

- 사업기간 : '90년 ~ (계속)
- 재원형태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86,357		86,357
2007						91,985		91,985
(증△감)						5,628		5,628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
- 농림어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총괄담당자 : 농림부 농촌사회과 김낙신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6)

## <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93년 UR타결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어촌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지원
-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하여 농산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 \* '06년도 1인당 평균 지원금액 : 271 만원

#### ○ 사업추진방향

- 농림어업인 교육비 부담경감 및 농산어촌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대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시행주체 : 농림부
- 사업위탁 : 한국학술진흥재단
- 추진절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국고를 출연하여 학자금 융자·회수 등의 사업추진
  - 학자금 신청(대학생) → 접수·추천(대학교) → 심사·선정(학술진흥재단)  
→ 학자금 송금(대학교) → 학자금 지급(대학생)
- 지원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농산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 사업규모 ('07)
  - 지원인원 : 26천명 수준 (학기당 13천명)
  - 지원금액(용자금) : 747억원 수준 ('07년 출연금 441억원)
- \* 용자금 = 당해연도 출연금 + 용자회수금
- 사업주요내용
  -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 용자
  -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출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48,288				48,288			48,288
2007	44,097				44,097			44,097
(증△감)	△4,191				△4,191			△4,191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학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07) 26천명, 747억원 → ('08) 28천명, 857억원
- 용자학자금의 회수율을 제고시켜 사업비 확충 : ('07) 90% → ('08) 91%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김낙신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6)

## <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양성
  - 우리 농업을 지식집약적 첨단산업으로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선도 농업인의 육성기반 조성 및 잠재인력군 확충
-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 사업추진방향

- 후계농업인 양성 및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속 지원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사업추진절차 : 재단(지침홈페이지 공고) → 대학생(재단 홈페이지에 신청서 등록) → 대학생(출력 후 대학에 신청서 제출) → 대학(장학금 지원 대상자 추천) → 농촌희망재단(장학생 확정 및 장학금 통장 입금)

#### ○ 사업내용(기존사업)

##### < 영농희망장학생 >

- 지원대상 : 전국 농과 대 2학년생 이상 중 졸업 후 영농종사희망자
- 선발인원 : 연간 2,500명
- 지원액 : 학기당 120만원이내, 농업인은 60만원

- 선발방법 :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

< 성적우수장학생 >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우수·저소득층 자녀
- 선발인원 : 연간 4,000명 (학기당 2,000명)
- 지원액 : 학기당 100만원이내
- 선발방법 : 학교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별로 할당하여 학교의 추천을 받아 재단 심사를 거쳐 확정

○ 예산

- 사업기간 : '04. 2학기 ~ (계속)
- 재원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100%
- 지원형태 : 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000	6,000			6,000
2007				7,000	7,000			7,000
(증△감)				1,000	1,000			1,0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희망장학금 지원내용과 재단 사업 홍보 강화
- 재원의 확대를 통한 학자금 지원 확대

(사업담당자 : 여성정책과 이상목 사무관, 연락처 : 02-500-1609)

## <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지방자치단체)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복지 증진
- 농산어촌지역 학부모 급식비 부담경감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추진절차 : 농산어촌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시·도교육청)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시·도교육청) → 예산지원(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 → 사업시행(학교)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724천명 정도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간 660억원(추정), 지방교육비 100%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비)
- 사업 주요내용 : 급식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연간 180일)



○ 예산

- 사업기간 : '07. 3 ~ '08. 2월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73,670		73,670
2007						65,961		65,961
(증△감)						△7,709		△7,709

\* '07년도 추진계획은 확보액을 근거로 하였음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 계속 추진
- 급식비 지원확대를 위한 농어업특별세 등 재원 확대 요구

(총괄담당자 :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김동로 , 연락처 : 02-2100-6397)

## < 2-2-3-2. 자영 농업계고 급식비 지원(지방자치단체)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의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도교육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 사업추진절차

- 급식비 지원신청서 제출(도교육감 → 도지사) → 급식비 지원통보(도지사 → 도교육감) → 급식비 지원(도교육감 → 해당 학교장)

- 지원근거 : 대통령지시사항('84. 11. 3)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전국 11개 농과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생

- 사업규모 ('07)

- 지원인원 : 2,610명 수준
- 지원금액 : 21억원 수준 (지방비 및 교부세)

- 사업주요내용

- 지원단가 : 기숙사생 3,090원/일, 비기숙사생 1,030원/일
- \* 국비 예산외 지방비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대상 학생에 대한 양질의 급식을 위해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집행도 가능
- 지원일수 : 연간 260일

○ 예산

- 사업기간 : '86년 ~ (계속)
- 재원형태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605	238	1,843
2007						1,841	254	2,095
(증△감)						236	16	252

\* '05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교부세(국비) 지원분은 지방비에 합산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급식대상자가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급식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

(총괄담당자 : 농림부 농촌사회과 김낙신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6)

## <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지방자치단체)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공동화되어 가는 농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수산인력의 조기 양성

#### ○ 사업 추진 방향

-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자영할 수 있는 우수한 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계고등학교 자영수산학과 학생의 식비 일부를 보조

#### ○ 사업 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3조 (농산 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
- 수산계학교 육성방안('86 교육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주체 : 시·도
- 사업 추진 절차 : 지원대상 등 사전 협의 → 보조금 지급신청(해당학교 → 교육청) → 보조금 교부신청(교육청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교육청) → 보조금 정산(교육청 → 시·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4개 수산계고 자영수산과 재학생  
· 충남해양과학고, 전남 완도수고·신안압해중고, 경북 포항해양과학고
- 사업규모(사업량) : 4개 고교 자영수산과가 재학생 432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228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87 ~ 계속

- 재원형태 : 도비(분권교부세 포함) 50%, 교육인적자원부 30%,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10	110	220
· 충남						14	14	28
· 전남						54	54	108
· 경북						42	42	84
2007						114	114	228
· 충남						18	18	36
· 전남						54	54	108
· 경북						42	42	84
(증△감)						4	4	8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4개 수산계고(충남해양과학고, 전남 완도수고·신안 압해중고, 경북 포항해양과학고)에 대한 급식비 지원 계속 추진
-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학생수 감소에 대한 우수한 학생 유치계획 등을 수립

(총괄담당자 : 해수부 수산경영과 김동욱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61)

## < 2-2-4-2.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 제공, 특수교육 관련 상담,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확대

####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지역(군단위)의 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재택장애학생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지원 및 지역의 장애인, 장애인 가족, 특수교육 관계자에게 특수교육 정보 및 상담 제공, 진단·평가 수행, 진로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업무 수행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관리, 지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관할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가 수행
- 지역교육청별 수요 및 특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 특수교육 선도

#### ○ 사업추진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순회교육)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규모 요구 신청(시도교육청)→ 사업요구 분석 및 지원 계획 수립(교육부)→ 지원계획 통보(교육부)→ 시도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역교육청 지원계획 통보(시도교육청)→ 사업집행계획서 수립 및 집행(지역교육청)→ 사업집행결과 보고(시도교육청)→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교육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의 장애아 및 가족, 교사
- 사업규모 : 60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1억원, 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지역선택 · 결정
- 사업 주요내용
  - 재택장애학생 및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교육지원 (학교 수업시간 이외 별도 시간 편성하여 치료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 및 홍보 (홈페이지 개설 운영)
  - 장애아 진단 · 평가 지원
  -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만 3세부터 취학전 유아)
  -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 활동 추진
  - 특수교육 관련 연수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 · 도별 배분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국비	지방비	계	비고 (지원센터수)
인 천	50	50	100	1
울 산	50	50	100	1
경 기	200	200	400	4
강 원	200	200	400	4
충 북	250	250	500	5
충 남	400	400	800	8
전 북	250	250	500	5
전 남	400	400	800	8
경 북	300	300	600	6
경 남	850	850	1,700	17
제 주	50	50	100	1
계	3,000	3,000	6,000	60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000				3,000	3,000		6,000
2007	3,000				3,000	3,000		6,00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지역(군단위)의 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90개소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장애학생 순회교육 확대 지원, 지역의 장애아, 장애아 가족, 특수교육 관련자에게 특수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장애인 진로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 수행, 취학 전 장애영유아 상담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화 추진
- 지역 특성과 수혜자 요구에 적합한 지원 서비스 운영
- 농어촌 지역사회의 병·의원, 보건소, 대학, 복지관, 교사연구회, 업체, 자원 봉사단 등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 지원의 중심 센터로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관리, 지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농어촌 지역교육청에서 담당

(사업담당자 : 특수교육정책과 김계옥 교육연구사, 연락처 : 02-2100-6387)



## 다.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 (1) 개 관

#### □ '07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유능한 교장을 농어촌 학교에 임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교육의 내실화 도모
  - 농·어촌 지역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시범 운영
-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통한 교원 사기 진작
  - 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순회근무 및 복식수업 담당교원에게 월 5만원(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 3만원)지급
-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교원에게 주거편의 제공
  -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학교도서관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학교도서관 계획 수립 추진

#### □ 예산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농산어촌학교 교원및복식수당	3,083				3,083			3,083
농산어촌교원수당 및복식수당						3,780		3,780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946		946
합 계	3,083				3,083	4,726		7,809

□ '08년도 추진방향

-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지급을 1년간 시행 실적을 점검하여 실적을 점검하여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 시행
-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06~'07년도 시행 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08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지속 추진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 마련 추진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장서확충 사업 지속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과 연계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국비(농특)와 지방비 1 : 1 매칭펀드로 지원

## (2) 세부과제

### <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유능한 교장을 놓어준 학교에 임용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놓어준 지역교육의 내실화 도모

##### ○ 사업 추진 방향

- 놓어준 1군 1우수고 등 혁신의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에 유능한 교장을 영입하기 위해 '06년 9월부터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 ○ 사업 추진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계획('06.5)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시범학교 선정 및 교장 공모, 교장 임용추천(시·도교육청) → 교장임용(대통령)

##### ○ 사업 내용

- 놓·어촌 지역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특성화중·고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06년 50개교)인 시범 운영
- 특성화중·고 약 20개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CEO) 등에게 공모기회 부여
-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교장 임용추천 심사 강화 및 2년 주기의 정기적인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담보

##### ○ 예산 : 비예산사업

####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8년도 계획 없음

(사업담당자 : 교원정책과 마소정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15)

## <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소속 교원 중에서도 특히 업무가 가중되는 복식수업담당교원 및 농산어촌 지역 순회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질 제고

#### ○ 사업추진방향

- 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순회근무 및 복식수업 담당교원에게 월 5만원(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 3만원) 지급
- 열악한 환경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통한 교원 사기 진작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추진절차
  - 각 시·도교육청 소요액 조사 → 분기별 자금 지원 → 분기별 정산보고 등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 학교 복식수업교원 및 순회교원
- 사업 규모(사업량) : 연인원 63,788명 (복식수업교원 22,477명, 순회교원 41,311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3,083백만원을 시·도교육청에 분기별 교부

- 지원조건 : 전액 국비지원

- 사업 주요내용

- 시·도별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교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시·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예산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말에 정산 후 잔액 반납

○ 예산

-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 (총 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409							2,409
2007	3,083							3,083
(증△감)	674							674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7년도와 동일하되 1년간 시행 실적을 점검하여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행

(사업담당자 : 교육단체지원과 조대훈 사무관, 연락처 : 02-2100-6330 )

## < 2-3-2-2. 교직원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교원에게 주거편의 제공
-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농산어촌 교직원의 우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05.4.)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

\* 단, '07년도는 국비예산(농특회계) 미확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일부사업을 추진 하고, '08년도부터 예산 확보하여 정상 추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 학교 교직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자체 보조 (시·도교육청)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편의 제공
-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낙후, 교통불편, 자녀 교육문제, 가족과의 별거 및 주거환경 열악 등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000				6,000			6,000
2007						3,780		3,780
(증△감)	△6,000				△6,000	3,780		△2,22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교직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06~'07년도 시행 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08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지속 추진

(사업담당자 : 교육복지정책과 고광휘 서기관, 연락처 : 02-2100-6345)

## <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교육인적자원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교육 및 문화 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본환경을 개선함으로써
-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케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및 방과 후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이하 지역에서 실시 하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는 제외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국비(농특)과 지방비 1 : 1 매칭펀드
-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학교도서관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학교도서관 계획 수립 추진
- 단위학교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05.4.)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청, 단위학교
- 사업절차 : 기본운영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운영계획수립(도교육청) → 사업 공모(도교육청) → 대상학교 공모 제출(해당학교) → 계획 검토 및 선정(도교육청) → 사업시행 준비(해당학교) → 예산지원 (교육부→도교육청→지역교육청, 학교) → 사업시행 (해당학교)



\* 단, '07년도는 국비예산(농특회계) 미확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일부사업을 추진하고, '08년도부터 예산 확보하여 정상 추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학생수 2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100명 이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 제외 단, 교육감이 인정할 경우 300명 이하 학교도 가능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군지역, 도·농 복합시의 읍·면 이하 지역

- 사업규모 : 248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당 5천만원, 국비 50%·지방비 50%

- 지원조건 : 농특(국비) 50%, 지방비 50% Matching Fund

-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자료구입비, 1%이상 도서관운영비로 편성

- 사업 주요내용

-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지원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300				6,300	6,300		12,600
2007						946		946
(증△감)	△6,300				△6,300	△5,354		△5,354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장서확충 사업 지속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과 연계 추진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국비(농특)와 지방비 1 : 1 매칭펀드로 지원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 마련 추진
  - 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학교도서관 계획 수립 추진
  - 단위학교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사업담당자 : 지식정보기반과 홍강표, 연락처 : 02-2100-6555)

###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 가. 인적역량 강화

##### (1) 개 관

##### □ '07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개발 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과정(순회교육), 특별과정 운영
- 체계적인 교육 관리·지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마련
  - 지역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검색·자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 농산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산어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제도 시행

##### □ 예산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850				850			850

##### □ '08년도 추진 방향

- 정주여건 개선·소득기반확충 등 전체 농촌지역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역량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개설

## (2) 세부과제

### < 3-1-1-0.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농림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마을 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비전 제시·사업기획방법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역량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 시행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Infra) 확충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 및 제38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및 승인(농림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한국농촌공사) → 사업비 정산(농림부)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지역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 사업규모 : 22개 전문교육과정 운영 (교육인원 총 3,452명, 교육횟수 131회)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사업주요내용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과정 등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
- 체계적인 교육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 .. 농촌지역개발 교육생의 교육이력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풀(Pool)을 관리하는 「학적관리 및 인재뱅크시스템」 운영
  - .. 지역별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지역개발 CEO와 우수 컨설팅업체 정보 제공
- 농촌지역개발을 지원할 외부인력 육성
  - .. 출향도시민 대상 내고향 잠재자원 개발 콘테스트 개최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재원형태 : 정액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810				810			810
2007	850				850			850
(증△감)	40				40			4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정주여건 개선·소득기반확충 등 전체 농촌지역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역량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개설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강혜영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4)

## 나.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 개발

### (1) 개 관

#### □ '07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생활권·영농권 등이 동일한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하여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 농촌지역에 잠재된 인적·물적자원을 활성화하여 농촌관광 등을 통한 농의 소득 증대로 농촌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 마을경관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도시민유치계획, S/W관련사업 등
- 권역별 타수산분야 및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사업권역의 중심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
  -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24권역을 선정 지원
- 산촌을 자연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도록 산촌생태마을사업을 추진
  - 소득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정비가 시급하고, 주민의 의욕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 연관사업의 투자가 용이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우선 지원
- 성장잠재력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지원대상 선정은 시·군의 제안서를 심사하는 상향식 공모제 방식 채택
  - 단체장 책임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육성협약제도 도입
-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200개소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3년간 70억원이내 지원
  - 5일장 등 실질적인 중심면소재지 기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
  - '07~'09기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과정을 거쳐 확대 추진

□ 예산 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촌마을 종합개발	6,150	66,918			73,068	10,850		83,918
어 촌 종합개발		28,600			28,600	5,363	1,787	35,750
산 촌 종합개발		21,097			21,097	8,294		29,391
소도읍육성		67,679		90,679	158,358	181,615	55,813	395,786
합 계	6,150	184,294		90,679	281,123	206,122	57,600	544,845

□ '08년도 추진 방향

- 기본계획수립 대상 40개 권역에 대해 지자체별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통해 '08년도 신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착수
  - 50개 권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40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기존의 생산·소득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과 함께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개발사업 지원
-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정 임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체험형 산촌관광의 결합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 숲이 있는 귀농마을 조성은 현재 추진중인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연차별로 추진
- 소도읍을 배후농어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58개 소도읍을 지속적으로 추진
- '07년 기본계획수립 대상 4개 권역에 대해 마을종합개발사업비에 포함하여 면소재지 활력증진 신규사업 착수
  - 16개 권역에 대한 서류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4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2) 세부과제

### < 3-2-1-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을 농촌다운 경관의 유지·보전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농촌권역의 종합정비로 지역개발 효율성 증대
- 농촌고유기능 활성화로 농촌의 농촌다움 회복
- 농촌지역에 잠재된 인적·물적자원을 활성화하여 농촌관광 등을 통한 농외 소득 증대로 농촌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 ○ 사업추진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 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로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및 지역주민



-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시·군→시·도→균형위·농림부)  
→ 예비타당성조사(한국농촌공사, 전문가)→기본계획수립  
(한국농촌공사 작성→시·군 수립→시·도 확정)→시행계획수립(시·군)→사업시행(시·군)→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의 면지역
- 사업 규모 : '17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권역을 우선 지원

구 분	계	'03까지	'04	'05	'06	'07	'08~'17
사업량(권역)	1000	-	36	40	20	40	(864)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업비) 66,918백만원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
- 사업 주요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S/W 관련사업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 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 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도시민유치계획 : 마을재개발, 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 공급계획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 사업비 지원 : 권역당 3~5년간 70억원 범위내 (국비 80%, 지방비 20%)
- 시도별배분내역 ('07년 사업시행권역)

(단위 : 사업시행 권역수)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6	1	8	10	8	10	11	17	16	13	2

○ 예산

- 사업기간 : '04 ~ '17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계획수립비 : 국비 100%(농특))
- '07사업비 : 66,918백만원 (계속 54,318, 신규 12,600)
  - 계속사업 : '05년에 사업착수한 36개권역과 '06년에 착수한 20개권역에 대한 계속사업 추진
  - 신규사업 : '05년도 기본계획수립한 40개권역중 2006년 착수(20개권역)에서 제외된 20개권역과 2006년도 기본계획수립한 20개권역 등 40개 권역 신규 착공(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후 '07.9월이후 착공)
- 계획수립 : 6,150백만원(예비타당성조사 2,000, 기본계획 4,000, 행정경비 150)
  - \* 예비타당성조사 40백만원/권역당, 기본계획 100백만원 (국비 100%, 농특)
  - 시·도지사가 신청한 73개권역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50개권역 선정
  - 서류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50개권역과 '06년 예비타당성조사 후순위 4개 권역 등 54개권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계획수립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 이중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되는 36개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250	43,400			46,650	10,850		57,500
2007	6,150	66,918			73,068	10,850		83,918
(증△감)	2,900	23,518			△26,418			△26,418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2007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 40개권역에 대해 지자체별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통해 신규 사업착수
- 50개 권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40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한준희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1)

### <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낙후어촌의 생산·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조성 및 소득증대
- 어촌부존자원의 특산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권역을 선정 지원
- 사업권역의 중심항·포구를 축으로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
- 권역별 타수산분야 및 지역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개발

##### ○ 사업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의 지원)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개선)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권역 선정 →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확정(시·도지사) → 예산지원(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및 관리(시·도지사, 시·군·구)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군·구(어촌계)

- 사업 규모 : 225개 권역 중 24개 권역 ('06까지 152개 권역 완료)
- 지원금액 및 형태 : 권역당 35억원~50억원(1단계 160권역 35억원, 2단계 65 권역 50억원)
- 지원조건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신규사업예정 어촌계의 계장 또는 임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정(해양수산인력개발원) 교육을 사업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권역별 기본계획서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대상 권역의 투자규모를 감안, 세부사업시행계획을 투명성 있게 확정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 주요내용
  - 다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사업을 우선 지원
  - 권역내 이미 구비된 각종 수산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다수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업지원시설 및 수산물 생산·저장·유통시설 등 소득기반시설 외의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 소득사업은 지원 제외
  - 어촌정주어항의 기본시설은 투자사업비 규모, 다수어업인 이용도 등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시도별 배분내역 (2007년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수)

계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고
24권역	1	1	1	1	10	3	6	1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3년 (총20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15%, 자부담 5%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0,917			30,917	5,797	1,932	38,646
2007		28,600			28,600	5,363	1,787	35,750
(증△감)		△2,317			△2,317	△434	△145	△2,89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기존의 생산·소득기반시설 위주의 지원과 함께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개발사업 지원

(사업담당자 : 어촌어항과 전성래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56)

### <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산림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도시와의 교류기반을 조성
- 산촌지역을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 ○ 사업추진 방향

- 산촌을 자연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
- 산촌개발 대상지는 여건 등이 뛰어난 곳을 우선 선정
- 산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 기여
- 설계심사 강화 등 사업추진 체계의 정비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산촌지역 담당공무원과 주민의 산촌경영마인드 역량 함양
- 숲이 있는 귀농마을을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29조(산촌의 진흥 등에 필요한 지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촌개발사업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절차 : 사업신청(마을→시·군) → 마을추천(시·군→도) → 마을선정(도) → 예산신청(도→산림청→예산처) → 개발계획수립(시장·군수) → 개발계획승인(도→산림청) → 사업실행(시·군 및 마을) → 정산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지원대상 : 산촌개발 예정 마을
- 사업규모 : 66개소 (사전설계 : 33개소, 마을조성 : 33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사전설계 : 마을당 45백만원~72백만원 (국비 100%)
  - 마을조성 : 마을당 10억원~16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조건
  - 산촌진흥지역 내 마을중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정비가 시급한 마을
  - 산촌마을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욕과 참여도가 높은 지역
  - 뚜렷한 산림소득원(개발가능성)이 있어 임업발전의 잠재력이 크고, 개발 후 임업경영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
  - 연관사업의 투자가 용이하여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의 파급 효과가 높은 지역 등
  - 마을 공동시설 부지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 사업 주요내용
  - 생활환경개선 :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마을회관, 오폐수 처리시설, 소화천 정비, 재해방지시설
  - 생산기반조성 :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 임산물판매·집하장, 가공이용시설
  - 산촌녹색체험시설 : 산림욕장, 임업체험시설 등 산촌휴양시설의 설치사업
  - 마을기획 및 운영(s/w) :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훈련, 마을브랜드(캐릭터) 개발, 마을홈페이지 구축, 컨설팅, 공사감리 등

- 시도별 배분내역(균특사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66	7	13	6	6	13	6	11	4
설 계	33		7	4	4	7	2	6	3
조 성	33	7	6	2	2	6	4	5	1

○ 예 산

- 사업기간 : '98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70~10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8,279			18,279	7,350		25,629
2007		21,097			21,097	8,294		29,391
(증△감)		2,818			2,818	944		3,762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청정 임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체험형 산촌관광의 결합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 산촌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산촌체험 관광을 집중 육성하고 산촌과 도시의 교류관계를 구축하여 산촌관광 활성화 도모
- 산촌지역 산림관리를 담당할 경영주체와 기능 인력을 육성하고 산촌지역간 네트워킹을 통해 발전역량을 강화
- 숲이 있는 귀농마을 조성은 현재 추진중인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 하여 연차별로 추진

(사업담당자 : 산촌소득팀 김성우, 연락처 : 042-481-4122)



### < 3-2-2-1. 소도읍 육성사업(행정자치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추소도시로 육성
  - 2003년부터 10년간 소도읍내 정주여건 조성에 총12조원을 투자할 경우
    - 총27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소도읍에 33만1천 여 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 80여만 명의 인구유입 등 인구의 균형적 재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공동연구 보고자료

##### ○ 사업추진방향

- 성장잠재력이 높은 거점소도읍을 선정하고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으로 추진
- 지원대상 선정은 시·군의 제안서를 심사하는 「상향식공모제」 방식 채택
- 단체장 책임시행을 담보하기 위한 「육성협약제도」 도입

##### ○ 사업추진근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신청(시·군→시·도) → 대상지역 심사(시·도 → 행자부) → 대상지역 확정(행자부) → 육성협약체결(행자부, 시·도, 시·군) → 사업시행(시·군)
- \* 선정지역 : 총 72개 ('03년 14, '04년 22, '05년 7, '06년 23, '07년 6)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12조 (국비2조, 지방비2조, 타부처국비, 민자 등 기타 8조)

- 사업규모 : 194개 소도읍('01.11.9 지정·고시)중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4년  
간에 걸쳐 100억원 분할지원
- 지원금액 : 676.79억(균특회계)
- 지원조건 : 국비 50%·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확충, 관광활성화사업 등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억원)

계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76.79	17	15	20	75	75	55	80	45.46	100	108.8	64.53	21

○ 예산

- 사업기간 : '03년 ~ '12년 (총 10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1,700		61,700	123,400	170,960	106,893	401,253
2007		67,679		90,679	158,358	181,615	55,813	395,786
(증△감)		5,979		28,979	34,958	10,655	△51,080	△5,467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소도읍을 배후농어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58개 소도읍을 지속적으로 추진
  - '03년 선정된 14개읍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종합평가 분석 후 향후 정책  
지표로 활용
- 시·도로부터 추천된 소도읍 대상지역을 지역개발·건축·문화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소도읍육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08년 대상  
지역 추가 선정 추진계획(20개 소도읍)

(사업담당자 : 지역발전정책팀 김성립, 연락처 : 02-2100-3858)

### <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도시, 소도읍의 서비스권역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면 소재지(중심마을)를 군당 2~3개소 적극 육성
- 거점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행정, 주거, 기초서비스,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배후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서비스 기능을 보강
-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복지시설을 면소재지에 집중 배치하여 중심지역의 회복을 통한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200개소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3년간 70억원 이내 지원
  - 5일장 등 실질적인 중심면소재지 기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
  - \* 중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존시설 현대화, 시가지 정비 등
  - 우선, '07~'09기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과정을 거쳐 확대 추진
- 소도읍과 함께 농어촌 서비스중심지로 기능하도록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인근 마을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절차에 준하여 추진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의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 사업 규모 : '17년 농어촌의 거점면 소재지 중시마을 200개소 지원

구 분	계	'03까지	'04	'05	'06	'07	'08~'17
사업량(권역)	200	-	-	-	-	4	(196)

\* 사업량 : 선정권역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 지원조건 : 권역당 3년간 70억원 범위내
- 사업 주요내용 : 생활편익, 문화·복지,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지원
  - 생활편익시설 : 가로정비,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정비 등
  -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 복지회관,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마을숲 및 녹지정비, 가로경관정비, 경관저해시설정비, 불량간판정비, 경관조형물 등
  - 지역상권시설 : 재래시장정비, 특산품홍보, 지역축제활성화 등
  - 기획운영S/W : 주민문화활동, 지역홍보, 시설물운영프로그램개발, 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활성화지원 등
- 시도별배분내역 ('07년 사업시행권역)

(단위 : 사업시행 권역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								

\*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로부터 2개 권역을 신청을 받아 4개 권역 선정

○ 예 산

- 사업기간 : '07 ~ '17년
- 재원형태
  - 사업비 : 국비 80%, 지방비 20%
  - 계획수립비 : 국비 100%(농특)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 마을종합개발사업비에 포함하여 시행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2007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 4개 권역에 대해 마을종합개발사업비에 포함하여 신규 사업착수
- 16개 권역에 대한 서류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4개 권역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한준희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1)

## 다. 기초생활여건 개선

### (1) 개 관

#### □ '07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농촌주택의 투자효율성 증대를 위해 빈집정비 및 경관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
- 상수도 보급체계 구성 및 청정한 상수원을 다원적으로 확대 개발하여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 전국 어디서나 고른 급수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보급체계 구성 및 청정한 상수원을 다원적으로 확대 개발
-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
  - 시·군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및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기반 향상과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 소하천 특성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형 소하천 정비
-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군단위 또는 광역단위(2개군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생적인 매립 시설로 확충
- 농어촌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지역의 접근성 강화 및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 해소
- 농산어촌 지역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 및 공영버스 구립 및 폐차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제고

- 정주면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환경인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편익시설 정비
- 오지종합개발사업이 '07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오지개발촉진법 및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1관당 평균건립(20억) 비용을 적용하여 80%(16억원)까지 지원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유사체육시설이 없는 읍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10년까지 읍·면 단위에 35개소를 지원
- 전국 3,571개의 읍·면·동 단위에 농구장·족구장·게이트볼장·베드민턴장 등 간이 운동시설, 체력단력기구, 휴게시설, 산책로 등 주민선호시설 설치
- 인근 유희 공공시설(폐교, 마을회관 등) 활용을 극대화하여 문화적 접근도 향상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도
- 지방문화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당 4백만원~20백만원 지원
- 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0억원 범위내에서 지방 테마과학관 건립비용과 전시시설 비용 지원
- 산림박물관을 공립수목원의 부속시설로 건립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학술연구와 산림 문화공간으로 조성
- 정보화마을을 지역정보화 거점 및 미래 농어촌 개발 모델로 육성하여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전국에 787개의 정보화마을 조성
  - 마을 특성에 따라 일반형(소득형)과 정보격차해소형 마을로 구분하여 유형을 간소화하고, 조성 예산의 차별화 지원 및 사업 내용의 다양화 추진
-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07년까지 50가구 미만 초고속망 미구축 지역(11만여 가구)에 대한 망 구축
-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통해 영농과 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전국 32개 도매시장, 대도시, 산지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도소매 가격정보 및 농업정책·기술, 농촌관광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

□ 예산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농어촌주택개량	18,000			108,000	126,000	54,000	44,000	224,000
마을하수도정비			115,420		115,420	50,041		165,461
농촌주거모델보급			350		350	350		700
면단위생활용수개발		138,038			138,038	34,509		172,547
마을단위생활용수개발		34,151			34,151	8,576		42,727
면단위 하수도사업	79,518				79,518	34,081	3,590	117,189
소하천정비	58,983	280			59,263	59,263		118,526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10,900				10,900		48,125	59,025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	3,000				3,000			3,000
다목적 인양기설치		743			743	743		1,486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9,800	2,400	12,200	1,600		13,800
양식장 정화사업 지원		7,617			7,617	864	864	9,345
해수욕장주변정비사업			2,600		2,600			2,600
양식장 폐사어 처리	400				400	400	200	1,000
농어촌도로 정비						328,471		328,471
교통서비스 강화						34,013		34,013
국고여객선 건조	1,600				1,600			1,600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70	5,430		5,700	5,700		11,400
농촌정주기반확충		192,073			192,073	48,018		240,091
오지종합개발		113,391			113,391	48,596		161,987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도서개발촉진사업		100,127			100,127	42,912		143,039
공공도서관 건립		5,556			5,556	8,615		14,171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1,800	1,800	1,800		3,600
생활친화형문화공간				2,000	2,000			2,000
문화체험프로그램				2,000	2,000			2,000
테마과학관건립				5,400	5,400	10,600		16,000
산림박물관 건립		4,300			4,300	4,300		8,600
복합체육시설				3,750	3,750	1,500		5,250
정보화마을 조성		150	8,392		8,542	7,950		16,492
초고속인터넷환경			9,000		9,000	8,800	17,600	35,400
농업경영체시스템	495				495	134	134	763
디지털어촌구축	712				712			712
농업인정보화교육	3,085				3,085	450	111	3,646
정보제공 확대	3,096				3,096			3,096
합계	179,789	596,696	150,992	125,350	1,052,827	844,411	66,499	1,963,737

□ '08년도 추진방향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를 동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도 3.4%에서 3.0%대로 낮추어 시행하도록 추진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수도 업무담당부서에서 추진
  -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오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07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여 담당업무를 하수도 업무담당부서에 추진하도록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통합지침개정 통보

- 생활용수를 소규모 상수도, 우물 등에서 깨끗한 수돗물로 개선하고 계속 사업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
  - 1개시·군에 1개 사업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2개지역을 신청한 지자체는 선 완료된 사업에 통합하여 1개 사업만 추진
- 면단위 하수도 사업을 계속 사업지역의 완공목표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지역으로서 재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기간은 2~3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예정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
- 농어촌도로 정비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활력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 기존의 시행중인 사업은 완공 위주로 집중적 투자
- '08년 이후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국가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
- 오지종합개발사업은 '08년 이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통합하여 (가칭)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재편
  - 생활여건개선부분에 한정하여 국가 최소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 농어촌의 체육시설 소외지역에 지원 및 사업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함
- 문화소외지역의 유희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토록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
-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지 및 지방비 확보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
- 산림박물관을 지역산림 사료 및 표본의 수집·전시 등 향토 산림사료 전시관으로써 특성화 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
- 정보 활용수준과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정보활용모델을 발굴하여 실생활·영농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 농업분야의 u-IT 신기술 융합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등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다양하고 이용하기 쉬운 농업·농촌정보를 제공기반 구축

## (2) 세부과제

### < 3-3-1-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도모
- 기초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를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오염을 초기단계에서 방지
- 농촌마을의 환경과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우범 장소 이용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농촌마을 경관 개선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투자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 및 경관을 고려한 주택개량 추진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 시설관리체계 구축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정비법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 제출	시·군·구 → 시·도 → 행자부, 농림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 확정 시달	행자부, 농림부 → 시·도 → 시·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정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자·농협(통보)
농어촌주택개량추진	신청자
준공 및 대출신청	신청자 → 농협
융자금 대출	농협 → 신청자, 시·군·구 통보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07 ~ '16년(10년간)까지 68,600동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
- 전국의 읍·면지역중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사업규모(사업량)

- '07 ~ '16년(10년간)까지 68,600동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구 분	계	'03까지	'04	'05	'06	'07	'08~'16
사업량(동)	68,600 ( '07~'16)	-	-	-	-	5,600	(63,000)

- 지원금액 및 형태 : 2,240억원(융자)(주거환경개선자금 1,800, 농촌주택정비 440)

- 지원조건

- 신·개축 : 동당 4,000만원
- 부분개량 : 동당 2,000만원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상환
- 이자 : 3.4%
- 빈집정비 : 지방비로 추진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주택개량 : 주거전용면적이 동당 100㎡이하의 주택으로서 신·개축, 부분개량 및 증축 등
- \* 참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빈집정비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불량주택의 철거 및 정비 등

- 도별 배분내역('07년 융자 동수)

- 총 5,600동 (시·도별 물량은 시·도 신청 결과를 분석하여 배분)

○ 예 산

- 사업기간 : '07 ~ '16 ('16이후에도 지속추진)
- 재원형태 : 농특세, 공공기금, 주택기금, 지방비, 이차보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기 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세	공공기금	주택기금	소계	지방비		
2006	18,000	36,000	72,000	126,000	54,000		180,000
2007	18,000	36,000	72,000	126,000	54,000	44,000	224,000
(증△감)						44,000	44,000

\* '06년까지 행자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마을하수도정비사업>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시·군) → 취합·통보(시·도→환경청)→ 검토·보고(환경청→환경부) → 사업계획확정(환경부) → 예산확보(환경부) → 예산확정통보(환경부 → 환경청 및 시·도 → 시·군) → 예산교부요청(시·군 → 환경청) → 예산교부결정통지(환경청 → 시·군) → 사업시행(시·군) → 국고정산(시·군→환경청→환경부)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1,654 (국고 1,154, 지방비 500)
- 사업규모 : 마을하수도정비 315마을
- 지원조건 :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국고 70%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정을 지원)

○ 예산

- 사업기간 : 1991~계속
- 재원형태 : 국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2006년까지는 농특세, 2007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고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소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 특	재 특	기타회계	기금등				
2006	93,300				93,300	68,600		161,900
2007			115,420		115,420	50,041		165,461
(증감)	△93,300		115,420		22,120	△18,559		3,561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8년도 이후에는 대출한도를 동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도 3.4%에서 3.0%대로 낮추어 시행하도록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업무 비전문부서(주택 및 건축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통합지침개정 통보

(사업담당자 : 농림부 정주지원과 이재식 사무관, 연락처 : 02- 500-2171)

(사업담당자 : 환경부 생활하수과 송종운 사무관, 연락처 : 02-2110-6903)

### <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인 설계요소를 도입하여 농촌고유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서의 합리성 및 쾌적성을 살린 농촌주택모델 보급 및 확대
- 농촌주민의 주생활수준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관광 증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및 도농교류 활성화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전통테마마을로서 농촌체험 방문객이 많은 지역의 민박농가 우선 지원
- '07년부터는 농산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에 의거하여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민박농가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 민박농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촌체류형 관광객의 쾌적한 숙박여건 조성
-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한 주택내부 개선, 텃밭·정원·연못·생울타리 등 마을경관과 어울리는 생태적 환경조성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제2조 2항,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농특위 대통령 보고자료, 2005.12)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대상마을선정(도농업기술원) → 대상농가 선정(시군농업기술센터) → 예산지원(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시행(농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행(농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가주택 진단 및 설계, 기술지도(시군농업기술센터, 관련 전문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민박농가
- 사업규모(사업량)
  - 10마을 (마을당 5농가 이상)
- 지원금액 및 형태 : 350백만원 (국비)
- 지원조건
  - 농업·농촌 체험학습, 농가민박 및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농촌생활 활성화와 도농문화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가능 농가
  -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민박농가
  - 환경친화형 소재를 도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농가로서 건축물 이력상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 농가
  -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 농가에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농가
  - 농가주택 및 옥외공간이 시범사업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농가
- 사업 주요내용 : 농촌주택 리모델링 및 옥외공간 정비
  - 부엌·방의 연결, 다용도 공간 설치 등 수납공간계획에 의한 리모델링
  - 생울타리, 조류·야생동물·곤충류를 유인할 수 있는 생태적 식재, 정원 조성
  - 건물외벽 녹화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 활용, 문화생활·휴식공간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 ('07년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 마을 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	1	1	1	1	1	1	1	2	1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20년 (총 17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75		175	175		350
2007			350		350	350		700
(증△감)			△175		△175	△175		△35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의거하여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민박농가까지 신청 받아서 사업량을 확대할 방침
-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마을과 농촌체류형 관광객의 증가를 고려
- 농가의 노후도, 환경친화형 소재 사용, 전문가의 맞춤형 설계 및 컨설팅, 농가 요구 등의 제반사항을 사업량 및 사업단가 상향조정에 반영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과 이수미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3)

### <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환경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생활용수를 소규모상수도, 우물 등을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수량이 풍부하고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97년 20.8%에서 2014년 75%로 제고

##### ○ 사업추진방향

-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급수혜택을 주기 위한 상수도 보급체계 구성 및 청정한 상수원을 다원적으로 확대 개발
-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에 농어촌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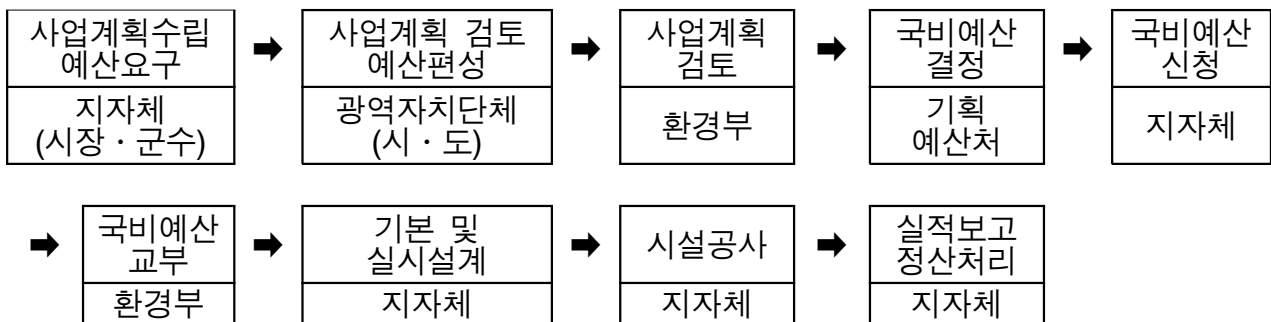
##### ○ 사업추진근거

- 지원근거 : 수도법 제56조, 농어촌특별세사업 통합지침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 사업 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 \* 신규사업은 '07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을 말함

- 사업 지원대상 : 상시 제한급수등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111개지역 (정수장 207천톤/일, 관로 4,243km)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비보조 80% 지원
- 지원조건
  -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상시 제한급수 등으로 식수난을 겪는지역
- 사업 주요내용
  -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건설, 관로 부설비 등 공사비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백만원)

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1	1	10	12	11	16	13	17	19	10	2
138,038	3,200	10,453	8,664	16,649	19,110	26,285	18,886	24,198	8,165	2,428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2014년 (총 21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33,586			133,586	33,396		166,982
2007		138,038			138,038	34,509		172,547
(증△감)		4,452			4,452	1,113		5,565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계속사업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
- 1개시·군에 1개 사업사업비의 지원을 원칙하되, 2개 지역을 신청한 지자체는 선 완료되는 사업에 통합하여 1개 사업만 추진

(사업담당자 : 수도정책과 안연섭 사무관, 연락처 : 2110-6878)

## <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광역 및 지방상수도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면단위지역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암반지하수를 개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여
- 면지역 소규모 농촌자연마을에 다양한 형태의 상수도 공급을 통해 식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문제 해결

#### ○ 사업추진방향

- 오염이 되지 않은 암반 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농업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
- 생활용수 개발 범위를 분산된 소규모 마을까지 확대하여 열악한 주거생활 환경 개선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희망마을 신청(주민)→대상지선정(시·군)→세부설계 및 시행 계획수립(시·군)→시행계획승인(시·도)→사업시행(시·군)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전국 농어촌 면지역 마을
- 사업 규모 : 7,751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비 : 42,727백만원 (국비 34,151, 지방비 8,576)
  - 사 업 량 : 252개소
  - 사업기간 : 1994년 ~ 2014년

- 총사업비 : 12,951억원 (국비 8,230, 지방비 4,721)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보조 80%, 지방비 20%
- 주요사업 내용 : 암반지하수(지하수조사, 시추, 확공, 모타설치) 개발 및 이용시설(양수장옥, 물탱크, 정수기, 송·배수 관로 등)
- 시도별 배분내역

(개소, 백만원)

시도	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252	5	9	12	24	68	3	28	37	66
사업비	42,727	841	1,485	2,040	4,080	11,655	499	4,834	6,058	11,235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4년 (총 20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5,297			35,297	8,824		44,121
2007		34,151			34,151	8,576		42,727
(증△감)		△1,146			△1,146	△248		△1,394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기 수립된 농촌생활용수 증장기계획에 맞추어 지자체에서 균특예산에 반영된 지구를 최대한 지원하여 면단위 지역 소재 농촌지역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한 식수문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사업담당자 : 정주지원과 이재식 사무관, 연락처 : 02-500-2171)

###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환경부)>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증가로 하수도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

##### ○ 사업추진방향

- 농어촌 지역의 '면' 소재지를 기본단위로 사업 추진
- 시·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하수처리장 설치인가와 국비지원예산 편성과정에서 오수발생량, 수질 등 농어촌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추진

##### ○ 사업추진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하수도법 제35조(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 사업추진절차 :

- 예산신청(시·군→시·도→환경청)→ 예산신청 검토의견 보고(환경청→환경부)  
→ 예산지원(환경부→환경청→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운영(시·군)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면'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 사업규모 : 54개 하수처리장 건설 (계속 40개소 포함)
- 지원금액 및 형태 : 자치단체 국비보조 79,518백만원

- 지원조건
  - 하수도정비기본에 반영된 면 단위 지역
  - 국비지원금에 대한 매칭자금을 지방비로 확보(30%)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설치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06년)

(단위 : 개소)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4	1	14	5	3	6	9	5	11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6,667				66,667	28,572		95,239
2007	79,518				79,518	34,081	3,590	117,189
(증△감)	12,851				12,851	5,509	3,590	21,95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계속사업지역의 완공 목표로 우선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지역으로서 재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
- 사업기간은 2~3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예정

(사업담당자 : 생활하수과 성남준, 연락처 : 02-2110-6893)

### < 3-3-2-4. 소하천 정비(소방방재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친수환경조성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기반 향상과 안전한 주민의 삶의 터전 마련

##### ○ 사업추진방향

-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의 우선 정비로,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에 기여
- 소하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 규정의 소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지침 시달 및 소하천 담당공무원 직무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 소하천 특성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형 소하천정비
- 국가정책을 사후복구 위주의 예산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재해발생전 예방 사업에 지속 투자함으로써 피해저감 및 예산 절감 효과 거양
-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특회계 국비보조금과 지방비의 연계 투자 지속 추진
- 국비보조금 배분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소하천정비사업계획 수립

##### ○ 사업추진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 중기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 등을 포함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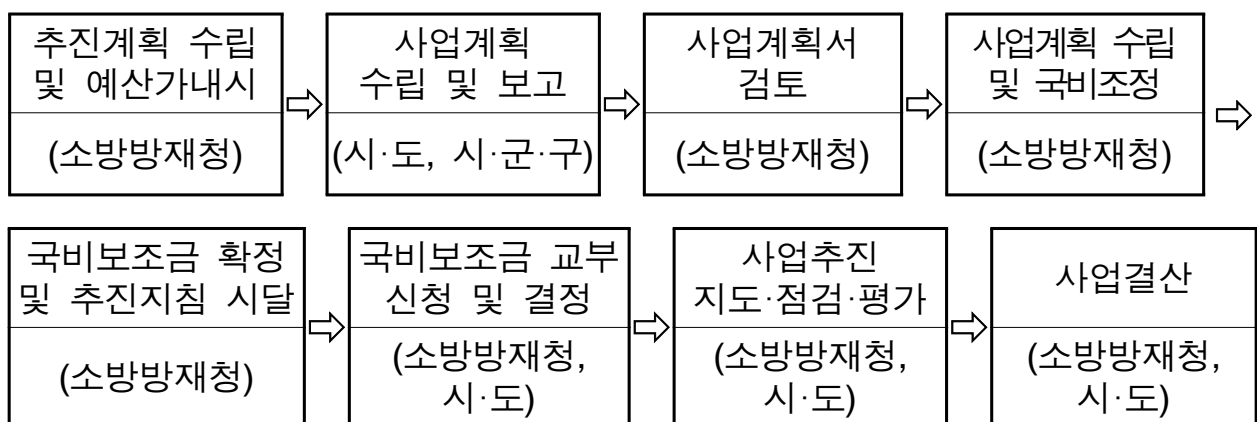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청에 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소하천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가내시(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시·도, 시·군·구) → 사업계획서 검토(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조정(소방방재청) → 국비보조금 확정 및 추진지침 시달(소방방재청) → 국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소방방재청, 시·도) → 사업추진 지도·점검·평가(소방방재청, 시·도) → 사업 결산(소방방재청, 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정비 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농특회계 국비보조금은, 동 재정제도 취지에 맞추어 군(郡)지역과 도농복합시(都農複合市) 관내 소하천정비사업에 지원
- 사업 규모(사업량) : 139개 시·군·구 430개소 193km 소하천정비
- 지원금액 및 형태 : 593억원,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정률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호안의 비탈덧기를 계획홍수위까지 시공
  - 호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은 산과 접한 구간은 호안 미시공
  - 소하천정비 구간내 수해원인이 되는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정비
  - 소하천 특성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형 하천정비공법 도입
  - 투자효과가 낮은 지역은 침수지역 토지매입 추진
  - 국가 정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국비보조금의 증·감액 조치 등의 인센티브제도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30	1	3	5	1	24	33	27	44	41	78	129	42	2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16년 (총 22년)
- 재원형태 : 국비50%, 지방비50% (Matching Fund)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49,686				49,686	49,686		99,372
2007	58,983	280			59,263	59,263		118,526
(증△감)	9,297	280			9,577	9,577		19,154

\* 농특회계(농특세 전입금) 사업임.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 도모
- 피해 발생후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현 예산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재해 발생전 예방사업에 지속 투자토록, 국비 증액 방안 강구
-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확대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특세 국비보조금과 지방비의 인센티브제도 지속 추진

(사업담당자 : 재해경감팀 신영섭, 연락처 : 02-2100-5455)

### <3-3-2-5. 폐기물처리시설 지원(환경부)>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 사업추진방향

- 면단위 소규모시설 설치를 억제하여 군단위 또는 광역단위(2개군 이상) 처리 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매립지 여유용량 확보와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매립시설 확충
- 군단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보조액(개소당 15억 정액 보조) 상향조정 검토
  - 매립장 1개소 건설에 평균 약 50억원 이상(부지매립비 등 제외한 순수 시설 설치비)이 소요되어 현행 15억원 보조는 실사업비의 약 30%이하로서 총 사업비의 약 50%수준인 약28억원이 적정

#####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 폐기물관리법 제52조(국비보조 등)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지자체) → 사업계획 검토(환경부) → 국비보조 예산편성 및 지원(환경부) → 사업집행(지자체) → 예산집행 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 보조금 정산 등(환경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지자체(郡)
- 사업 기간(사업량) : 1995년~2014년 (175개소 설치 예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15억원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15억 정액보조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에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15	4	2	1	2	4	1	1	1
금 액	10,900	2,550	750	750	1,260	3,340	750	750	750

\* 군지역의 매립여유 용량 등을 감안, 지자체 신청에 의하여 배분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14년 (총 20년)
- 재원형태 : 국비는 정액으로 15억원지원하고 총사업비의 차액은 지방비로 충당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0,900				10,900		40,715	51,615
2007	10,900				10,900		48,125	59,025
(증△감)							7,410	7,41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계속사업인 경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1년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토지매입 및 설계 등이 완료되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곳에 우선하여 지원
- 소규모의 시설설치를 억제하고 군단위 또는 2개군 이상 광역으로 시설설치를 유도하여 오염원 산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도모
- 사업비를 이월한 지자체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점검 및 독려

(사업담당자 : 생활폐기물과 진원기, 연락처 : 2110-6925)

### <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폐비닐수거비 지원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

##### ○ 사업추진방향

- 지자체의 폐비닐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를 위하여 지자체의 자체지원 「폐비닐수거 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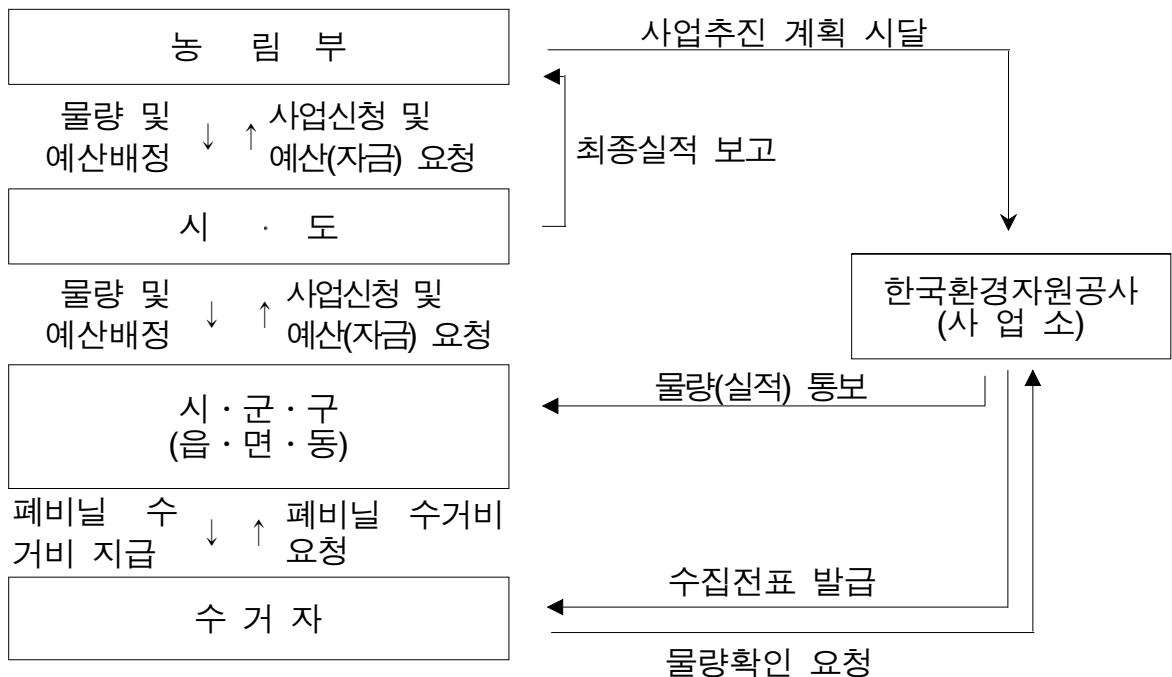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및 제39조

- 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양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을 한다.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 절차



< 수행체계 >

-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 농업인대표, 또는 개인)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 수거물량 확인요청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는 수거자의 수거물량을 확인한 후, 수집전표를 수거자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발급하고, 계량증명서를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시·군·구(읍·면·동사무소)는 수거자 성명, 수집량, 수집전표, 계량증명서, 수거자 통장사본 등을 작성 및 첨부한 후 폐비닐 수거비를 지급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자체 확보한 『폐비닐수거 보상비』와 농림부의 『폐비닐 수거비』를 수거자에게 지급 (통장 입금)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 부녀회장 등 농업인과 개인수거자
- 사업규모(사업량) : 100천톤, 3,000백만원
  - 지원조건 : 30원/kg, 정액지원 (국비보조 100%)
- 사업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상 폐비닐 수거업무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수거 책임이 있으나 농업인의 인식 부족과 고령화로 수거 기피, 수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규정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와 책임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 자체지원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수거비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구분	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사업량 (톤)	100,000	148	37	379	819	425	10,045	11,125
사업비(천원)	3,000,000	4,440	1,110	11,370	24,570	12,750	301,350	333,750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톤)	11,332	13,928	10,778	9,798	19,089	10,797	1,300
사업비(천원)	339,960	417,840	323,340	293,940	572,670	323,910	39,000

\* 시·도별 폐비닐 발생량, 지자체의 자체 예산 확보액, 추진계획량 등을 기준으로 폐비닐수거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자체 예산 확보액이 없는 지자체와 희망하지 않은 지자체는 배정대상에서 제외

○ 예 산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06년까지 81억원 투자)
- 재원형태 : 국비 100% (kg당 30원 정액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000				3,000			3,000
2007	3,000				3,000			3,000
(증△감)								

\* 농특세 전입금 사업(농특회계 전입금계정)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소비자들의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요구에 따라 시설재배와 멀칭재배생산이 증가하여 폐비닐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폐비닐 수거 여건은 악화 예상
- 농촌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원인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폐비닐수거비 단계적 확대 지원

(사업담당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안규정 사무관, 연락처 : 02-500-1806)



### < 3-3-2-7. 다목적 인양기설치 지원(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태풍, 해일 등 재해발생시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인양으로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평시에는 미역 등 수산물 인양으로 부족한 어촌의 노동력을 해소
- 낙후어촌계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를 통해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지역 어항·어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 수산기반시설이 미약하고 5톤미만 소형어선이 다수를 차지하는 어촌에 설치

##### ○ 사업추진근거

- 어항법 제17조(사업비의 보조)
- 수산업법 제87조(보조) 및 시행령 제67조(보조대상)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개선)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사업타당성 검토(해양수산부) → 예산 지원 및 사업지침시달(해양수산부→시·도) → 사업시행(시·도 → 시군구)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등 4개 시·도 연안 어촌계
- 사업 규모(사업량) : 1,486백만원 (국비 743, 지방비 743)

- 지원금액 및 형태 : 743백만원 국비지원(균특회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다목적인양기 29대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07년도)

(단위 : 대수)

계	울산	강원	충남	전남
29	1	2	22	4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0년 (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50			350	350		700
2007		743			743	743		1,486
(증△감)		393			393	393		78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역 어항·어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확대 추진

-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5톤미만 소형어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안 시·군·구 어촌지역에 다목적 인양기설치를 지원, 재해발생시 어선을 보호하고, 평상시 어촌 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부족 일손 해소

(사업담당자 : 해양방재담당관실 김대수 사무관, 연락처 : 02-3674-6334)

### <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매사업(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다속 페어구 등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어업인 들로부터 수거처리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어촌지역 환경보전
- 국가가 관리하는 연근해 주요어장 및 습지 등의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 함으로써 깨끗한 어촌지역 및 해양환경 유지관리

##### ○ 사업추진방향

- 연근해 주요어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거처리 사업지 선정 및 수거처리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0년부터 제2단계 어항 및 항만주변 지역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실태조사 착수
- 수거처리사업의 체계적 관리과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병행 추진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 마련

##### ○ 사업추진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7(해양환경개선조치)제2호, 제62조(국비보조등)제2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해양수산부) → 위탁계약체결(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민간대행기관) → 사업시행지역 관계기관 협조사항통보(시·도, 해경) → 사업착수(민간대행사업기관) → 사업결과보고(민간대행사업기관→해양수산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역 : 지방정부 수요조사에 근거한 41개 연근해 주요어장 및 수거처리 사업이 긴요한 사업지 등

- 사업규모 : 연근해 주요어장 및 습지 등 연 10-15개 어촌지역
- 지원조건 : 국비 100% (단 쓰레기 수매는 국비 60%, 지방비 40%)
- 사업 주요내용
  - 연근해 주요어장의 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실시
- 시도별 배분내역 ('07.2 확정 예정)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일반회계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9,129		2,500	11,629	1,178		12,807
2007		9,800		2,400	12,200	1,600		13,800
(증△감)		671		△100	571	422		993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연근해 주요어장 41개 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거처리 사업의 효율성 증대

(사업담당자 : 해양보전과 천재홍 사무관, 연락처 : 02-3674-6564)

### < 3-3-2-9. 양식어장 정화 사업(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공업화, 산업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심화,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증가 등으로 연안 양식어장의 생산성이 저하되어 어업인 소득이 감소
-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함

##### ○ 사업추진방향

- 연근해 어장수면 633천ha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
- 어장환경의 개선·보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 ○ 사업추진근거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정정화·정비의 실시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7호(생활폐기물의 처리)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어촌계, 수협) → 사업자선정/보조금 교부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시·도/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시장·군수·구청장)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어촌계 및 수협어장 (인근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
  - 다수어장의 설치된 해역으로 정화작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인접한 5개 이상의 개인어장 (어장과 어장 사이의 공유수면 포함)

- 사업 규모(사업량) : 7,539ha
- 지원조건 : 국비보조 80%, 지방비 10%, 자담 10%
- 사업 주요내용 :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객토, 해적생물 구제 등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백만원/ha)

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7,617 (11,531ha)	420 (568ha)	100 (155ha)	172 (268ha)	30 (47ha)	440 (686ha)	638 (987ha)	1,397 (2,164ha)	190 (313ha)	3,530 (5,468ha)	700 (875ha)

※단가 : 807천원/ha

○ 예산

- 사업기간 : '86년 ~ '11년 (총26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5,869			5,869	734	733	7,336
2007		7,617			7,617	864	864	9,345
(증△감)		1,748			1,748	130	130	2,009

\* 균특회계 사업임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어장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어장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금후 기본 환경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체계적인 어장정화사업추진
- 어장정화·정비등록업체 등록기준 강화로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정화사업추진
- 어장관리기본계획수립 등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어촌계, 수협, 지자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 홍보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집행 유도

(사업담당자 : 양식개발과 양희범 사무관, 연락처 : 02-3674-6964)

### < 3-3-2-10. 해수욕장 주변정비 및 시설개선 사업(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해수욕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각종 편의·기능시설 및 서비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해수욕장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권 개선으로 어촌지역 개발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해수욕장 평가결과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해수욕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동해안 군 경계시설에 대해 철조망 철거 및 경관펜스 대체 등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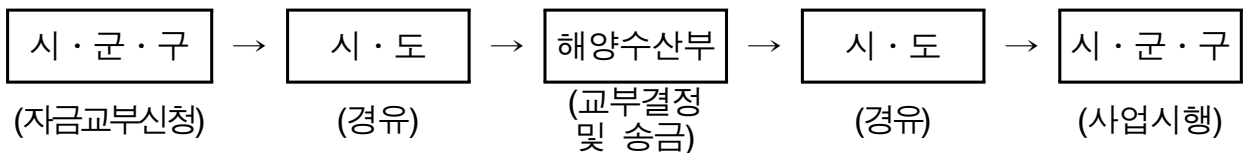
##### ○ 사업추진근거

- 연안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연안관리법 제20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각 시·도
- 사업추진절차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 :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수해수욕장 20선' 중 별도선정
  -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 강원도

- 사업 규모 : 우수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및 동해안 군경계 철조망 (8km) 철거·경관펜스 대체
- 지원금액 및 형태 : 우수해수욕장 6억원, 주변정비 20억원 정액보조
- 지원조건
  -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 :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우수해수욕장 20선' 중 사업의 필요성, 국비보조금의 적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별도선정('07.2)
  -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 완료된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일부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매년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해수욕장에 대해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
  -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에 설치된 군 경계시설 중 군 작전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철조망을 철거하고 경관펜스 등 대체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 '07.2 결정 예정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09년 (총 5년)
- 재원형태 : 정액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600		2,600			2,600
2007			2,600		2,600			2,60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역민들에 의한 해수욕장 자율관리체제 구축 및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통해 연안지역의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사업담당자 : 연안계획과 권준영 서기관, 연락처 : 02-3674-6571)

### < 3-3-2-11.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사업(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육상양식장의 증가로 병충해 등에 의한 폐사어는 증가 추세이나, '05년부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매립 금지로 이에 대한 처리 시급
- 양식장에서 폐사된 어류의 유통을 방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신과 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양식장 수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화 등 재활용 자원화 필요

##### ○ 사업추진방향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를 전문적으로 수거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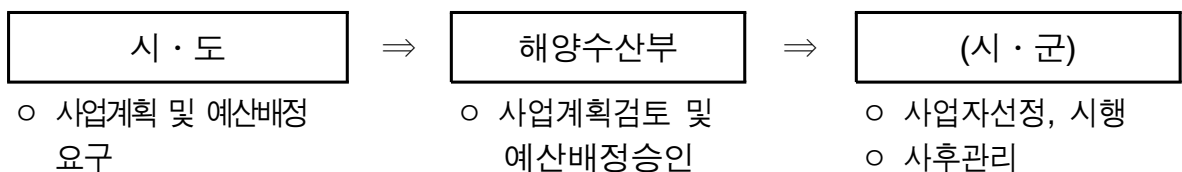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7호(생활폐기물의 처리)
- 수산업법 제87조(보조 등)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
- 사업추진절차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지자체 (해수어류수협 또는 지구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 사업규모 : 1개소 (총사업비 10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4억원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
- 지원조건 : 국비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사업 주요내용 : 건축물(전처리동, 발효동), 기계설비, 운송장비 등
- 시도별 배분내역 : 전남도 1개소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00				200	200	100	500
2007	400				400	400	200	1,000
(증△감)	200				200	200	100	5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 지원대상 : 해수어류수협 또는 지구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 사업 규모(사업량) : 2개소 (총사업비 20억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5억원(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
- 지원조건 : 국비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
- 사업 주요내용 : 건축물(전처리동, 발효동), 기계설비, 운송장비 등

(사업담당자 : 양식개발과 박환준 사무관, 연락처 : 02-3674-6962)

### < 3-3-3-1. 농어촌도로 정비(지방자치단체)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을 촉진하여 농산어촌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정비 지속추진
  - 농어민 생활에 필요한 농어촌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 해소
- \* ('04) 포장연장 18,120km(포장율 : 29.4%) → ('09) 포장연장 19,270km(포장율 : 31.2%)

##### ○ 사업추진방향

- 지역간 연결 등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 사업 추진
-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 위주의 획일적인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자연경관과 농산어촌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도로를 조성하여 농산어촌지역의 독특한 환경을 살리고 다양한 재질의 자연친화적인 공법도입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반영 면도, 리도보다 농도에 대한 많은 수요를 감안 농도에 대한 더많은 지원 유도
- 사업량에 따른 일정 비율을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여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 체계개선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절차 : 기초자료조사및평가(시군) → 사업계획수립(시군) → 노선 우선 순위결정(시·군) → 예산반영(시·군) → 자체 사업시행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3,284억원
- 사업규모 : 455.9km
- 지원조건 : 없음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도로 정비 (면도, 리도, 농도)

○ 예산

- 사업기간 : '91년 법제정 이후 계속사업
- 재원형태 : '08년까지 양여금법 폐지전 시행중이던 사업에 한하여 교부세 지원
  - ※ 교부세액 : ('06) 54,873백만원, ('07) 328,471백만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 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 계			
2006						279,943		279,943
2007						328,471		328,471
(증△감)						48,528		48,528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역별 특성을 고려 지역활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조기배정 및 적기 집행 유도 (연말 사업평가지 반영)
- 시행중인 사업은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

(총괄담당자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팀 이문주, 연락처 : 02-2100-3856)

< 3-3-3-2. 교통서비스 강화(지방자치단체)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 및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제고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차량고급화 및 이용편의 제고 등 서비스 강화

○ 사업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사업절차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에 의한 분권교부세 교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의거 벽지노선 등의 운행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동법 제51조에의거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 사업 규모 :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및 전국 1,423개읍면 공영버스 구입 등 지원(대당 1,800만원)
- 사업 주요내용 : 사업규모 참조
- 시·도별 배분내역 ('0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439	83	103	93	91	258	417	638	461	856	938	656	582	263
벽지 보상	3,324	83	85	93	91	114	219	422	245	586	479	422	294	191
공영 버스	2,115		18			144	198	216	216	270	459	234	288	72

○ 예 산

- 사업기간

- 벽지노선 손실보상 : '82년 ~ (국비는 '99년부터)
- 공영버스 : '94년 ~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분권교부세로 지원)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벽지노선 손실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7,892		27,892
2007						27,892		27,892
(증△감)								

\* '05년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분권교부세 33억, 지방비 246억원 추정)

- 공영버스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121		6,121
2007						6,121		6,121
(증△감)								

\* '05년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분권교부세 21억, 지방비 40억원 추정)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공영버스사업은 '05년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행자부 분권교부세로 지자체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
- 다만, 분권교부세가 '09년까지 한시적인 제도이고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므로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총괄담당자 :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김희천 사무관, 연락처 : 2110-8679)

### < 3-3-3-3. 국고여객선 건조(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낙도 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투입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

##### ○ 사업추진방향

- 노후 여객선은 우선적으로 대체하고 차도선이 접안 가능한 항로의 일반 여객선은 연차적으로 차도선으로 대체

#####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국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추진절차 : 여객선을 국고 건조후 낙도보조운항선사에 위탁관리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낙도 도서주민
- 사업 규모(사업량) : 차도선 1척 건조
- 지원금액 및 형태 : 1,6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27개 낙도보조항로에 28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으로 노후선 또는 항로특성에 부적격한 여객선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대체 건조



- '07년에는 낙도 보조항로인 이목/어룡항로의 일반선을 차도선으로 대체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없음

○ 예산

- 사업기간 : '95년 ~ '14년 (총 20년)
- 농특법 유효기간 연장(10년)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당초 '04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600				1,600			1,600
2007	1,600				1,600			1,60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선령 10년 이상된 노후 일반여객선은 연차적으로 항로특성에 맞는 차도선 등으로 대체 지속 추진
- 매년 1~2척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중인 여객선 대체

(사업담당자 : 연안해운과 최종욱 사무관, 연락처 : 02-3674-6622)

#### <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 완화
- 도서지역과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도모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

###### ○ 사업추진방향

- 한정된 예산과 운임지원의 취지를 감안, 고액 운임항로의 운임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된 “최고운임제(5,000원)”와 “정률지원제(20%)” 지속 실시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사업자가 여객선 이용객에 대하여 할인 매표한 실적을 첨부하여 지원액을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심사) 후 사업자에게 지급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지역의 주민
- 사업 규모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연 300만명의 도서민
- 지원금액 및 형태 : 11,4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 여객운임의 20 ~ 70%를 지원

- 현재 최고운임으로 설정된 5,000원 이상을 초과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고 최고운임 이하의 운임에 대하여는 운임의 20%를 정률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국고지원액(50%)만 배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액	5,700	1,500	10	140	190	2,000	1,360	230	270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5,000		5,000	5,000		10,000
2007		270	5,430		5,700	5,700		11,400
(증△감)		270	430		700	700		1,4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서민의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객운임 지원 필요
- '08년 이후에는 여객선 운임인상 및 이용객 증가에 따라 소요예산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사업담당자 : 연안해운과 최종욱 사무관, 연락처 : 02-3674-6622)

<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지역(면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시설을 종합 정비(정주기반확충)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농촌활력증진을 도모

○ 사업추진방향

- 정주면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환경 등 편익시설 정비
- 은퇴 도시민 및 이주 도시민의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농촌의 어메니티를 유지·복원하도록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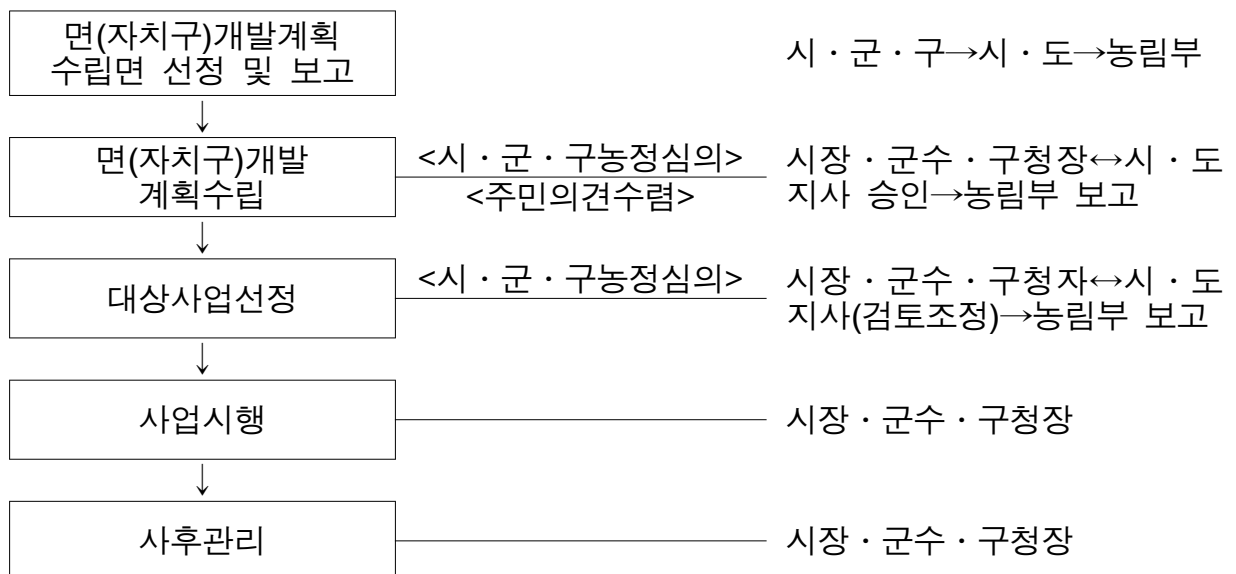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정주권개발대상 800개면 (15개 자치구 포함)

- 사업규모(사업량)

- '13까지 정주권개발대상 800개면을 정비

구 분	계	'03까지	'04	'05	'06	'07	'08~'13
사업량(면수)	800	618	152	338	300	300	(800)

\* '90~'04까지 1단계 770개면 지원완료(지방양여금), '05부터 2단계 800개면을 대상으로 지원(균특회계)

- 지원금액 및 형태 : 2,401억원(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면당 3~5년간 30억원 보조

- 사업 주요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시설, 교량, 주차장 등
- 농촌경관개선 :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철거·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 문화복지시설 설치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시도별 배분내역 ('07년 사업 시행면수)

(단위 : 시행면수)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0	4	5	1	3	3	4	32	29	25	31	35	39	39	47	3

○ 예 산

- 사업기간 : '90 ~ '14 ('14이후에도 지속추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 '06년까지 국비 100%로 추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기 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지방비		
2006		190,000						190,000
2007		192,073				48,018		240,091
(증△감)		2,073				48,018		50,091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8년도 이후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통합하여 (가칭)농어촌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
  - 생활여건개선부문에 한정하여 국가 최소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 \* 마을안길, 마을연결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정비, 기초적인 문화·복지 시설, 소하천정비, 배수로정비, 재해예방시설, 주거환경개선 등
  - 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5개년계획으로 기 확정된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 기 확정된 사업을 우선 반영
    - '09이후 소득사업, 생산기반정비 등 산업부문의 사업은 별도의 지역특화 사업 및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추진
- 사업간 차이가 있는 지원기준을 단일화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 지역개발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비 보조율을 단일화
    - \* '07년도에는 현행 보조율을 유지하되, '08년도부터 사업을 통합하여 보조율을 단일화 (국비 80%)
  - 기초생활서비스 수준을 감안한 낙후지역 평가를 통하여 낙후지역 추가지원
    - \* 단계별 면당 평균지원 한도에서 낙후지역은 30% 내에서 추가지원, 낙후도 평가는 기초생활서비스 지표를 개발, 별도 검토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이행우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8)

<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행정자치부, 농림부) >

□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추진방향
  -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법령이외의 사항과 예산편성, 사업시행이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오지개발촉진법 및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근거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은 관련법령 정비 전까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
- 사업추진근거 : 오지개발촉진법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오지면 361개면

- 사업규모(사업량) : '09까지 오지면을 대상으로 361개면을 정비

구 분	계	'03까지	'04	'05	'06	'07	'08~'13
사업량(면수)	361			310	210	223	(361)

\* '05부터 제3차 오지종합개발 361개면을 대상으로 지원 (균특회계)

- 지원금액 및 형태 : 1,620억원(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면당 2~3년간 면당 평균 25억원 보조

- 사업 주요내용

· 고용 및 지역경제 부문 :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농외 소득원의 개발 : 지역특성, 부존자원활용 특화사업 추진

관광 및 휴양시설 : 관광농원, 농사체험장, 유원지 등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 농림·어업시설의 정비

관광마을, 부업단지 조성 및 지역특산물, 토속음식 등 전통산업 육성

· 생활환경 및 교통부문 : 도로·환경위생 등 생활기반시설 보강

\* 도로개설(확포장) : 수혜주민, 이용률 등 감안 노선선정

환경위생시설 : 간이상하수도, 오수처리등 위생시설 설치

· 문화 및 복지부문 : 기초적 문화생활시설

\*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 광장, 마을회관 등 위락·복지시설 확충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 : 운동시설, 산림욕장, 산책로 등

- 도별 배분내역('07년 사업 시행면수)

(단위 : 시행면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23	1	22	20	24	27	43	50	36

○ 예 산

- 사업기간 : '05 ~ '09 ('09이후에도 지속추진)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기 타 (자부담 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지방비		
2006		108,300				46,416		154,716
2007		113,391				48,596		161,987
(증△감)		5,091				2,180		7,271

※ 2006년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

####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8년도 이후에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통합하여 (가칭)농어촌생활여건개선 사업으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
  - 생활여건개선부문에 한정하여 국가 최소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 \* 마을안길, 마을연결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정비, 기초적인 문화·복지 시설, 소하천정비, 배수로정비, 재해예방시설, 주거환경개선 등
  - 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5개년계획으로 기 확정된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 기 확정된 사업을 우선 반영
  - '09이후 소득사업, 생산기반정비 등 산업부문의 사업은 별도의 지역특화사업 및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추진
- 사업간 차이가 있는 지원기준을 단일화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 지역개발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비 보조율을 단일화
  - \* '07년도에는 현행 보조율을 유지하되, '08년도부터 사업을 통합하여 보조율을 단일화(국비 80%)
  - 기초생활서비스 수준을 감안한 낙후지역 평가를 통하여 낙후지역 추가지원
  - \* 단계별 면당 평균지원 한도에서 낙후지역은 30% 내에서 추가지원, 낙후도 평가는 기초생활서비스 지표를 개발, 별도 검토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이행우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8)

### <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행정자치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서의 생산·소득 등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낙후지역의 장기적·종합적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 ○ 사업방향

- 도서별 생활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관광인프라 구축 등 생산·소득연계사업추진
- 개발여건, 주민숙원도,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 선택과 집중방식 적극 도입
-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연육·연도교건설 등 접근성 제고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 '07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구청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구선정(시·군) → 시·군별 사업계획 취합(시·도)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행자부)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심의(행자부) → 확정·시달(행자부)

##### ○ 사업내용

- 호안도로, 연육·연도교, 마을연결도로 등 지역교통여건 개선사업
- 선착장, 물량장, 방파제 등 생산기반시설 정비
- 복지회관 건립, 하천정비, 하수처리시설 등 문화·환경시설 확충

○ 예산

- 사업기간 : 1998 ~ 2007 (10개년)
- 지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년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6		90,000			90,000	38,571		128,571
2007		100,127			100,127	42,912		143,039
(증△감)		10,127			10,127	4,341		14,468

□ '08년도 사업의 기본방향

-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과 연계 생활·생산환경개선 및 관광·소득증대 기반 조성 확대
- 지역안배와 분산투자방식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개선
- 사업선정시 주민대표, 지역개발위원 등의 참여 활성화

(사업담당자 : 지역발전정책팀 주대영, 연락처 : 02-2100-3852)

### <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관광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인프라 구축에 기여
-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

##### ○ 사업추진방향

- 수요자 예측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규모의 적정성 유도
- 1관당 평균건립(20억) 비용을 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80%(16억)까지 지원
  - 총사업비가 평균건립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방비 추가부담

##### ○ 사업추진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 특별법 제17조 및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포함('94)
- 대선 공약사항(2002. 12) : 공공도서관 임기 내 2배 확충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자치단체) → 예산신청서 검토(문광부, 균형위) → 예산확정(기획예산처·국회) →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결정(문광부) → 사업집행 및 정산(자치단체) → 정산 확정(문광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2013년까지 260관 조성 목표
- 지원금액 및 형태

- 1관 당 16억원 한도 내 총 건립비의 80%까지 국비지원
- 자지단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및 부지 확보
- 사업 주요내용
  -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건립비의 80%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 07년도 지원 내역 : 11개관(신규 4관, 계속 7관) 5,556백만원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계
지원관 수	2	1	1	1	4	2	11

○ 예산

- 사업기간 : '94년 ~ '13년 (총 20년)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0,086				3,919		14,005
2007		5,556				8,615		14,171
(증△감)		△4,530				4,696		16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서 지속적 확충 추진
  - 총 목표대비 연도별 실적 점검
- 보조사업자의 집행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방법 모색
  - 국비 교부시마다 평가표를 작성하여 준비상황 점검 및 적시의 국비 교부
  - 수시 집행실적 파악 등 집행독려

(사업담당자 : 도서관정책과 김순정, 연락처 : 02-590-0544)

### <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문화관광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등 인근 지역주민의 활용이 용이한 곳에 소규모 간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전국 3,571개의 읍·면·동 단위에 2개소씩 설치 목표로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생활체육시설) 및 시행령 4조
- 대통령지시사항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침통보(문화부/국민체육진흥공단) → 시도별 배분 금액 내에서 대상사업 추천(시·군→시·도→국민체육진흥공단) → 대상 사업 확정 통보(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시행준비(지자체)→예산지원(국민체육진흥공단→시·도→시·군)→사업시행 및 준공(시·군 및 마을)→정산보고(시·도→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시설 운영(지자체)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읍·면·동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년에 약 120 개소 지원 ('06년 163개소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40백만원 내외 (기금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지역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활용부지의 확보

- 사업 주요내용
  - 학교 내 야간체육시설,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등 간이 운동시설, 체력단련기구(윗몸일으키기, 철봉 등),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및 조깅로 등 주민 선호시설의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
  - 시·도 별 읍·면·동 분포수 및 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배분 시행
- 사업실적 : 2006년까지 5,151개소 지원 (449억원)
- 장기계획 : 전국 읍·면·동에 2개소 지원 (7,142개소)

총사업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1이후
1079	449	18	30	30	30	520

○ 예산

- 사업기간 : '90년 ~ (단년도 지원)
- 재원형태 : 기금 50 %, 지방비 50 %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000		2,000		4,000
2007				1,800		1,800		3,600
(증△감)				△200		△200		△4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마을단위체육시설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예산 확충에 주력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토록 함
- 기금사업의 농구장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추진
- 사업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준공토록 촉구하고 사업 만족도를 조사하여 결과 반영

(사업담당자 : 생활체육과 류성렬, 연락처 : 02-3704-9836

국민체육진흥공단 김명희, 연락처: 02-4101-636)

#### <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문화관광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 문화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 대규모 문화공간의 폐해를 지양하고 주민과 근거리에 있는 소규모 복합 참여형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여가·휴식기능을 강조한 주민친화적 문화서비스 제공

###### ○ 사업추진방향

- 주민 인근 유휴 공공시설(폐교, 마을회관 등) 활용을 극대화하여 문화적 접근도 향상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도
- 기존의 문화공간과는 차별화된 참여자가 주인되는 소비자적 공간 조성으로 소외지역 문화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 consulting 위원회 조성으로 성과체계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
- 전문 회계법인의 검수·감리를 실시하여 사업비의 적절성, 투명성을 재고하고 수혜주민들의 만족도 증가 최적치 유도

###### ○ 사업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시책과 권장)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개괄적으로 서술)

- 사업추진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우리부)→ 공모(우리부, 전국문화원연합회)→ 사업자 선정→사업집행→감수·감리(외부 회계법인)→총괄평가(외부 평가기관)→정산(사업자→문화원연합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주민 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15개소 내외 조성
  - \* '04년 28개소, '05년 11개소, '06년 12개소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 20억원(1개소당 1억원 내외)/복권기금
- 지원조건
  -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유휴공간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동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허락(동의)을 받은 곳
  -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근접성 등이 용이한 곳
  - 기 사용중인 문화공간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
  - 생활문화공간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 의지 및 능력이 구축된 곳
- 사업 주요내용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대상으로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한 선정 기준에 의거 지원사업자를 선정, 유휴공간을 문화공간화로 리노베이션(90%)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10%) 지원
    - \* 타 문화공간 조성사업과의 차별점
- 지역생활문화 체험관, 문화정보관, 평생문화교육관, 공연·전시관 등
-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저소득 인구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우선 배려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구분	계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4	28	1	1		3	7	3	1	2	4	1	3	2
2005	11				2	1	1		2	3		1	1
2006	12	1		1	2	1	1	1	1	3	1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총 1년)

- 재원형태 : 기금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500	1,500			1,500
2007				2,000	2,000			2,000
(증△감)				500	500			5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문화소외지역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토록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의 건전 여가문화 정착 유도
- 조성공간과 지자체 또는 단체 등과의 매칭을 강화·유도하여 사업 추진

(사업담당자 : 지역문화팀 이홍직 사무관, 연락처 : 02-3704-9552)

### <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문화관광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적, 신체적, 경제적 사유로 문화현장에서 배제된 문화소의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한 문화 민주주의 실현
- 문화향수권 확대의 전국적 균점을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적 가치와 확산을 통한 농어산촌 주민의 질 높은 삶 구현

##### ○ 사업추진방향

- 농어산촌 문화소외지역 주민과 실버세대 대상별로 사업 추진
- 농어산촌 문화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내 노인문화·복지전문가의 공동참여와 지역복지 및 문화기반시설 간 연계 강화
- 사업대상 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으로 사업효과 제고
- 수혜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기준 등을 제도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강화하고, 사업의 다양성과 효과성 제고

##### ○ 사업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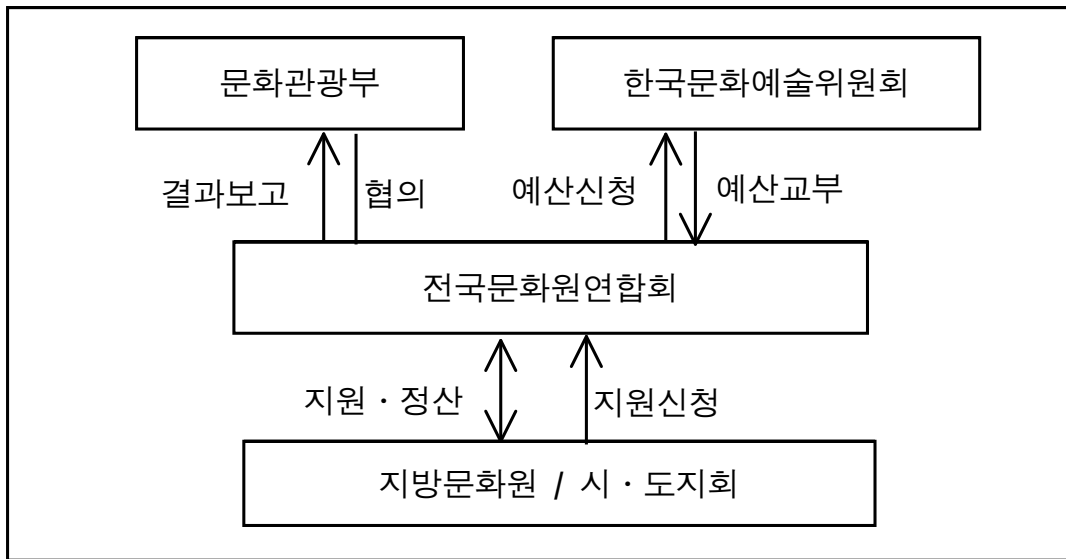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제2항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15조 (경비의 보조 등)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포함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시행주체 : 지방문화원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 사업추진절차



- 시행절차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기금 신청 (전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지원 신청 (지방문화원 및 시·도지회 등 ⇒ 전국문화원연합회)
- 심사 및 지원(전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무작위 표본추출 현장평가 실시
- 사업시행·결과보고 (지방문화원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정산보고 (전국문화원연합회 ⇒ 문예진흥원)

○ 사업내용 (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산촌 도서지방 등 지역적으로 문화향수에 소외된 지역 주민 및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수용 아동,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 사업규모 : 1,763개 프로그램 시행

- 2004년 876개, 2005년 696개, 2006년 191개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액 및 형태 : 10,096백만원, 정액보조 ('04년-3,664백만원, '05년-3,432백만원, '06년-3,000백만원)

- 프로그램 당 4,000천원 ~ 20,000천원 지원
- 지방문화원 1개원 당 1 ~ 4개 프로그램 지원

- 지원조건

- 역사,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관광성 프로그램은 지원 배제
-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선택과 집중
- 농어산촌지역 노인대상의 문화활동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지역내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 지역문화 및 언어교육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새터민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문화적 소양교육 프로그램

- 주요 사업내용

- 실버문화학교 :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지원과 일자리창출 및 세대간 문화계승  
※ 2006 실버문화사랑축제 개최
- 역사문화유적탐방 프로그램 : 능과 원의 비교체험, 대가야 유적탐방, 천년 고도 탐방 등
- 예술체험·참여 프로그램 : 공연, 전시 등의 관람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판소리 배워보기 등
- 생활문화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떡만들기, 외국인며느리 김치 담그기 등
- 전통문화프로그램 : 향교체험, 서원체험, 한국유교문화체험, 전통문화교실 등
-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 부래미 생태마을 체험, 갯벌생태체험, 녹색곤충 생태체험 등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 재원형태 : 기금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000	3,000			3,000
2007				2,000	2,000			2,000
(증△감)				△ 1,000	△ 1,000			△ 1,000

- 시도별 배분내역 ('04, '05년 프로그램 시행회수)

(단위 : 시행회수)

	2004년	2005년	2006	계
서울특별시	104	76	11	191
부산광역시	17	16	6	39
대구광역시	25	16	1	42
인천광역시	32	25	4	61
광주광역시	21	24	7	52
대전광역시	39	27	10	76
울산광역시	33	15	6	54
경기도	107	102	14	223
강원도	85	76	24	185
충청북도	42	21	7	70
충청남도	91	73	20	184
전라북도	41	50	12	103
전라남도	57	57	26	140
경상북도	99	59	19	177
경상남도	73	54	19	146
제주도	10	5	5	20
계	876	696	191	1,763

※2006년 : 1년 단위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04~05년도 대비 지원금을 증액했고, 지역별 균등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차등 지원함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어산촌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주민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화향수권 확대 제고
- 생산적 실버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단순 체험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연중시행 가능 프로그램 개발

(사업담당자 : 지역문화팀 정창엽, 연락처 : 02-3704-9553)

### < 3-3-5-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과학기술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자체가 추진하는 과학관 설립 등을 국가가 적극 보조하여 줌으로써 지방의 과학기술문화확산의 계기를 제공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활친화적인 과학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의식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인근의 관광지, 휴양지 등과 연계가 용이한 곳을 선정

##### ○ 사업추진근거

-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 2(과학관육성기본계획 수립)
  - “과학관육성기본계획(‘03.12)”에 의거 2012년까지 과학관 100개 육성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전시용 장비의 확보를 위한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사업절차 : 사업신청(지자체) → 지원대상선정(과기부) → 기금확보(과기부) → 기금교부(과기부/과학재단) → 사업수행(지방자치단체) → 기금지원금에 대한 정산(과기부/과학재단)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71,500백만원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지원조건 : 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학관별 10억원 범위에서 건립비용과 전시시설 비용의 50%이내 지원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용의 50%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주요시설 : 주제별 전시관, 영상관, 생태체험관 등
- 지원현황 : '06년까지 시도별 건립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계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2	1	3	1	3	3	2	2	4	1	22

- 추진계획 : '07년에는 신규로 테마과학관 5개소를 지원할 계획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000	6,000	11,000		17,000
2007				5,400	5,400	10,600		16,000
(증△감)				600	600	400		1,0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테마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지 및 지방비 확보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

(사업담당자 : 과학기술문화과 김희상 사무관, 연락처 : 031-436-8614)



### < 3-3-5-7. 산림박물관 건립(산림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술연구의 장으로 제공
- 점차 훼손·멸실되어 가는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 표본의 체계적인 보존으로 산림자원 학술연구 기반 조성에 기여
- 산림문화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생활 공간 수요 충족

##### ○ 사업추진 방향

- 국립수목원의 부속시설로 건립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학술연구와 산림문화 공간으로 조성

##### ○ 사업추진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  
<시행령 제3조>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조성사업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산림청 →시·도) → 사업시행(시·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국립수목원내 산림박물관
- 사업 규모 : 7개(조성·보완) 산림박물관('06년까지 10개 완료·조성 중)건립
- 지원금액 및 형태 : 43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공립수목원내 부속시설로 건립
- 사업 주요내용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 전시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계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	1	1	1	1	1	1	1

○ 예 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050			3,050	3,050		6,100
2007		4,300			4,300	4,300		8,600
(증△감)		1,250			1,250	1,250		2,500

□ '08도 사업 기본방향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림박물관 조성 추진
- 지역산림 사료 및 표본의 수집·전시 등 향토 산림사료 전시관으로써 특성화 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

(사업담당자 : 산림환경보호팀 윤찬균, 연락처 : 042-481-4242)

### < 3-3-5-8.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문화관광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의 읍·면 지역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노인 등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을 위한 체육진흥 활성화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2010년까지 읍·면 단위에 7개소씩 35개소 지원
-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검토

#####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생활체육시설) 및 시행령 4조
- 대통령지시사항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침통보(문화부/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 대상 추천 (시·군→시·도→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대상 확정 통보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시행준비(지자체)→예산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준공 (지자체) → 정산보고(시·도) 및 시설 운영

#####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읍·면
- 사업 규모(사업량) : 1개년에 7개소 지원 ('06년 7개소 지원)
- 사업비 규모 : 개소당 7.5억원 이상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450 ~ 600백만원 (부족사업비 지자체 부담)

- 지원조건 : 지역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활용부지의 확보 및 인근 유사 체육시설의 부재시 검토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다목적구장 및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설치
  - 부대 편의시설(아쿠아시설 및 커뮤니케이션룸 등) 설치
- 시도별 배분내역
  -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도 중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등 유사체육시설이 없는 읍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적정 사업대상 선정 (1/4분기)
- 사업실적 : 2006년까지 7개소 지원 (37.5억원)
- 장기계획 : 2010년까지 35개소 지원 후 확대 검토 예정

총사업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0이후
187.5(억원)	37.5	37.5	37.5	37.5	37.5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지원)
- 재원형태 :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금 차등지원 (개소당 4.5 ~ 6억원)  
부족사업비는 지자체에서 부담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750		1,500		5,250
2007				3,750		1,500		5,25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7년 사업과 같이 농어촌의 체육시설 소외지역에 지원 및 2006년 신규 추진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함
- 2006 ~2007년 지원사업의 조기 완공 독려 (사업 규모상 단년도 완공은 어려움)

(사업담당자 : 생활체육과 류성렬, 연락처 : 02-3704-9836

국민체육진흥공단 최양락, 연락처: 02-4101-252)

### < 3-3-6-1. 정보화마을 조성(행정자치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정보생활화를 통해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부가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등 정보콘텐츠 구축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추구
- UN, OECD 및 세계 각국의 정부는 물론 인텔 등 유수의 IT 기업으로부터 정보격차 해소 성공사례로 인식되어 대한민국 정보화의 위상 제고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정보화마을을 지역정보화 거점 및 미래 농어촌 개발 모델로 육성하여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전국에 787개의 정보화마을 조성
- 자치단체 및 민간(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의 권한 강화 및 재정 분담으로 중앙 차원의 지원 축소와 자율운영 역량 강화 및 기반 확립
- 마을 특성에 따라 일반형(소득형)과 정보격차해소형 마을로 구분하여 유형을 간소화하고, 조성 예산의 차별화 지원 및 사업 내용의 다양화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행정자치부, 광역·기초 자치단체
- 사업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마을) → 사업신청(시군구) → 대상마을 1차 평가(시도) → 행자부 추천 민간·타부처 평가위원단 실사 → 대상마을 최종확정(행자부) → 예산지원 → 사업시행 및 정보화마을 운영(행자부, 시도·시군구, 마을)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2개 이내로 구성된 마을
- 사업규모 : 32개 정보화마을('06년까지 306개) 조성 (국비 50% 지원 11개, 지방비 100% 투입 21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3억원 (매칭펀드 방식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인터넷 인프라 미 구축 지역 등 정보화 소외 지역 (가점부여)
  - 타 부처 테마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된 마을 (가점부여)
  - \* 사업계획서에 운영성과 및 연계 추진방안 작성 제출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자생적 운영 의지
  - 일정지역 내 30가구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인터넷 통신료 부담의사가 있는 지역
  - 마을회관, 폐교 등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보, 구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있는 지역
  - 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의 상거래가 가능하고, 농촌민박·체험상품 운영 등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
- 사업 주요내용
  - 초고속인터넷망·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PC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및 가구별 정보이용환경 조성 지원
  - 마을소개, 특산물 홍보 상거래 판매를 위한 콘텐츠 구축 등 마을별 테마 홈페이지 및 콘텐츠 구축 지원
  - 마을 소득증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07년 정보화마을 조성계획)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2	6	5	4	2	2	4	3	3	3

○ 예산

- 사업기간 : '01년 ~ '14년 (총 14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운영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50	6,077		6,227	3,600		9,827
2007		150	8,392		8,542	7,950		16,492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정보화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국비로 1개 마을 지원시 자치단체에서 100% 지방비를 투입하여 1개 마을을 조성하도록 의무화 하여 자치단체의 참여 강화
-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를 매년 정례화하여 마을간 경쟁을 통한 활성화 추진 및 성공사례 발굴하고, 미흡한 마을의 경우 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유도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www.invil.org)를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어촌 관광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로 발전
- 인터넷·PC보급 등이 열악한 정보화 소외지역을 우선 선정 지원하고, 농림부·해수부 등 농어촌 테마마을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사업담당자 : 서비스정보화팀 이대영 사무관, 연락처 : 02-2100-3580)

### <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정보통신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
- \* '06년까지 전체 농어촌 지역(377만 가구)의 99%인 373만 가구에 초고속망 구축

##### ○ 사업추진방향

-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07년까지 50가구 미만 초고속망 미구축 지역(11만여 가구)에 대한 망 구축
- 재원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분담(25%:25%:50%)하고, 마을 규모, 이용 희망 가구 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구축
-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 체신청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 협의회'를 통해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 사업추진근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부
- 사업절차 : 사업협약체결(정통부↔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지자체)→계약체결(한국정보사회진흥원↔지자체↔통신사업자) → 예산지원(한국정보사회진흥원·지자체→통신사업자) → 사업 시행(통신사업자)

##### ○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 지역
- 사업규모 : 50가구 미만 초고속망 미구축 마을 2,416개 마을 4만여 가구
- 지원금액 및 형태 : 354억원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 50%)
- \* 지자체별 미구축 마을 수에 따라 국비 지원
- 지원조건
- 50가구 미만 초고속망 미구축 지역 중 초고속인터넷 이용 희망가구가 있는 지역



- 사업 주요내용

- 광케이블, 옥외 합체, xDSL 장비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 구축비용 지원
- 도서, 산간오지 등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은 위성인터넷망 구축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가구수, 백만원)

시도	'07년 구축 예정 물량(가구 수)		예산(백만원)
	유선	위성	
울산광역시	97	-	80
인천광역시	-	118	300
경기도	322	57	510
강원도	4,374	-	3,358
충청북도	4,243	-	2,938
충청남도	3,121	425	4,128
경상북도	9,305	8	8,948
경상남도	8,613	121	4,790
전라북도	4,360	183	5,072
전라남도	5,194	122	5,076
계	39,629	1,034	35,200

○ 예산

- 사업기간 : '06 ~ '07년 (총 2년)
- 재원형태 :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9,000		9,000	8,800	17,600	35,400
2007			9,000		9,000	8,800	17,600	35,400
(증△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예상 예산 30억원

- '07년 이후에도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이용 희망가구를 파악하여 지자체·사업자와 함께 초고속망 지속 구축

(사업담당자 : 정보문화팀 정재훈 사무관, 연락처 : 02-750-1281)

### <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경영체의 경영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 농업인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 ○ 사업추진방향

- 산자부, 정통부 등의 쇼핑몰 인증제도에 농산물의 거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기준 마련
- 홈페이지 운영농가 중 상품성 있는 우수자료 보유농가를 선정하여 콘텐츠 개선지원
- 사이버동호회 형성 및 운영지원과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농가 스스로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유도
- 우수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등)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구축 지원 확대  
· ('07)17개소 → ('08)20 → ('09)30 → ('10)40 → ('11)45개소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도, 시·군), 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추진절차(지자체) : 지원대상 선정(시군) → 개발업체 선정(농림수산정보센터 지원) → 컨설팅 계약(시군·농업법인·개발업체) → 컨설팅 실시(2개월, 개발업체) → 정보시스템구축 계약(시군·농업법인·개발업체) → 정보시스템구축(3개월, 개발업체) → 사업결과보고(도, 시군) → 사업평가 및 정산(농림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 사업규모 : 17개 농업법인, 홈페이지 운영농가

- 지원금액 및 형태 : 495백만원, 국비 100%  
(단,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구축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자부담이 가능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인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구축시)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계획서 컨설팅 후,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생산·거래처·회계관리 및 경영분석 등 개별적 자원에 대한 통합관리
  - 도별 정보시스템 구축수요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	1	-	-	3	2	3	2	4	2

※ 상기내역은 '06. 12월 수요조사 결과임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단, 정보시스템구축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480				480	38	95	613
2007	495				495	134	134	763
(증△감)	15				15	96	39	15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업인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 홈페이지 관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홈페이지 보유농가간 정보교류 촉진
- 농업법인 및 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실시
- ('07년) 17개 → ('08년) 20개 계획

(사업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이대영 사무관, 연락처 : 02-500-1631)

### <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촌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열린 교육 가능

##### ○ 사업추진방향

- 어촌정보화사업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강화
- 어촌정보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확대
  - 원격영상교육시스템 유지·보수 및 S/W 개발보급
- 수산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바다로 21 홈페이지)
- 어촌지역 중고 PC 확대 보급

##### ○ 사업추진근거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추진절차 : 총괄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 배정(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지방청, 해양수산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 종합분석(해양수산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어업인
- 사업규모

- 원격영상교육시스템 관리운영 (31개소)
- 어업인 정보화교육 (7천명)
-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30개소)
- 어업인단문자서비스 (30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712백만원/직접 수행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원격영상교육시스템유지·보수(31개소) : 348백만원
  - 어업인정보화교육 : 213백만원
  -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 124백만원
  - 어업인단문자서비스(SMS) : 27백만원

○ 예 산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696				696			696
2007	712				712			712
(증△감)	16				16			1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원격영상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지속추진 : 33개소
- 어업인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 : 7,000명
- 정보화 교육장 노후 PC 교체 및 유지보수 : 30개소
- 어업인단문자서비스 추진(SMS) : 30개소

(사업담당자 : 수산경영과 김금조 지도관, 연락처 : 02-3674-6864)

### <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영농과 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여 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 ○ 사업추진방향

- 정보화 선도자 등과의 대면 접촉을 통한 정보생활의 필요성 홍보 등으로 정보화 무관심층의 교육참여를 적극 독려
- 인터넷뱅킹, 전자정부 이용방법, 온라인쇼핑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각 과정에 대응하여 교재 및 실습도구 등의 개발병행
- 농업인에게 소득창출로 연결 가능한 영농 형태·규모별 정보활용 모델을 발굴하여 수준별 맞춤교육 실시
  - 교육생의 이력·콘텐츠·강사·시설 등의 공유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1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전문교육 공모기관
- 사업집행절차 : 사업계획수립(농림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보조사업자) → 세부사업계획 조정 및 승인(농림부)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사업결과보고(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및 정산(농림부)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업인
- 사업 규모 : 농업인 55천명 정보화교육 실시('07년)
- 지원금액 및 형태 : 3,085백만원, 국비 100%
  - 단, 지자체는 국비50% 지방비50%, 농협은 국비50%, 자부담50%
- 사업 주요내용
  - 컴퓨터·인터넷활용, 농업정보활용, 농업경영정보 등 기초·중급·전문 단계별 맞춤형 집합교육 실시
  - 정보화선도자, 농업정보119요원 및 이동버스를 활용한 방문교육 실시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
  - 온라인교육, 사후 원격지원서비스, 표준교재 제작·배부 등 농업인 정보화 교육 지원, 홍보, 결과분석 등

○ 예산

- 사업기간 : '98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100% (단, 지자체는 국비50% 지방비50%, 농협은 국비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501				2,501		222(농협)	2,723
2007	3,085				3,085	450	111(농협)	3,646
(증△감)	584				584	450	△111(농협)	923

\* 2007년부터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사업이 동 사업에 편성됨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정보 활용수준과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정보활용모델을 발굴하여 실생활·영농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실시
- 재정비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LMS와 패키징하여 농민단체 등에 무상제공 하며, 교육생이력·강사·교육장·장비 등의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관리시스템 및 ICT 프로그램 보완개편 등 교육내실화를 위한 종합지원

(사업담당자 : 정보화기획팀 최재용 주무관, 연락처 : 02-500-1632)

### < 3-3-7-3. 농어업관련 정보제공 확대(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분산된 농업·농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영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전국 32개 도매시장, 대도시, 산지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도소매 가격정보 및 농업정책·기술, 농촌관광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
- 의료·문화·교육 등 농촌거주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
- 품목별 동호회 집중 육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 사업추진근거

- 농업 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8조 3항(농어민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 사업자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 사업절차 :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사업정산(농림부) → 사업수행 및 운영(보조사업자)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보조사업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다음커뮤니케이션)
- 사업규모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및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운영
- 지원금액 및 형태 : 3,096백만원 (국비 100%)
- 사업주요내용 :



- 이용자가 살아있는 현장정보를 직접 생성·제공할 수 있도록 UCC(User Created Contents) Platform 구축
  - 초기에는 이미지, 동영상 업로드, 편집이 가능한 블로그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향후 '데스크탑 브로드캐스팅' 기능부여
- 유통가격정보, 품목별 재배기술 등 농림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표, 그래프 등으로 분석·가공하여 제공
- 도·농간 사이버 커뮤니티 지원기능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참여,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이벤트 홍보 등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
- 농림관련 사이트 및 정보를 추가 발굴하여 농림지식정보 확대
  - '06년 30개 기관(137개 홈페이지) → '07년 40개 기관(150개 홈페이지)
-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콘텐츠 기획 및 홍보추진으로 농림지식정보 확산

○ 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946				2,946			2,946
2007	3,096				3,096			3,096
(증△감)	150				150			15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업분야의 u-IT 신기술 융합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등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다양하고 이용하기 쉬운 농업·농촌정보를 제공기반 구축
- 우리 농산물 바로알기, 농촌어메니티, 지역정보 등 인터넷 기반 콘텐츠를 TV윈도우 기반에 맞추어 변환·재구성 및 신규제작

- 정보제공자(CP)에게 UCC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계약된 정보제공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생성하도록 유도
-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 향토자원을 콘텐츠화하여 인터넷(IPTV, PC 등), 모바일(PDA, 휴대폰 등) 등을 통해 제공
- 텔레매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관광농원의 위치 및 볼거리·먹거리 등을 알려줌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담당자 : 정보화기획팀 최재웅, 연락처 : 02-500-1632)

##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 가. 향토산업의 진흥

#### (1) 개 관

##### □ '07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향토자원의 가치,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DB화하여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전통자원 중에서 산업화 유망자원을 선별하고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향토산업 기반 조성
-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신활력지역지원상 등 각종 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및 차별성을 유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유·무형의 향토자원으로 적극 발굴
- 향토음식 숨씨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향토음식 숨씨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향토음식 체험자원화 촉진
  - 향토음식 체험컨텐츠 개발운영, 사업참여자의 자질향상 등 기반조성
  - 음식재료의 지역 농산물 활용으로 농업 생산·유통 및 경제 활성화
- 농촌에 공단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취업기회 확대, 수도권 등 대도시 소재 공장의 이전촉진, 도시 교통난, 주택난, 공장입지난 완화 등 공장유치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매년 10개소 수준 준공추진으로 농촌인력과 도시민의 취업기회 확충
-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이농예상 농어업인의 전업 및 취업 지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예산 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			234		234			234
향토산업육성		4,308			4,308	3,754	5,234	13,296
향토음식자원화사업	350				350	350		70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31,413			31,413	17,707		49,120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1,190	87			1,277			1,277
합 계	1,540	35,808	234		37,582	21,811	5,234	64,627

□ '08년도 추진 방향

- 구축된 DB 아이템을 이용하여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활용
- 향토자원 추가 발굴 및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추진
  - 기본계획수립 : ('06) 19개 지원 → ('07) 30 → ('08) 30 → ('09) 30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 지원
  - 지역특화사업과 신활력 사업을 통합하여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제도 개편
- 각 지역별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중앙단위 교육추진
  - 기본 기술교육을 위한 사업자 집합교육과 농촌 현지교육
    - 조리기술 전수, 한국음식의 이해, 홍보·마케팅 전략, 상품화 교육 등
- 농림어업 등의 산업위주의 지역특화단지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단지 조성
  - 시·군 농공단지 유형구분 개선,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 낙후지역의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의식 고취로 이농예상 농어민의 전업 및 취업 적극지원

## (2) 세부과제

### <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로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향토전통자원 중에서 산업화 유망자원을 선별하고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 사업추진방향

- 지역적 여건에 정통한 향토학자, 대학교수, 산업 및 마케팅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향토전통자원 조사
- 향토자원의 가치,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DB를 구축하여 향토산업 아이템 제공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연구과제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 (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 연구부서
- 사업규모 : 5개 시군지역
- 지원금액 및 형태 : 2.3억, 국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구축 연구사업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00		300			300
2007			234		234			234
(증△감)			△66		△66			△6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전국에서 매년 5개 시군을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를 구축하여 향토 산업 아이템을 제공
  - 지역 향토자원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현장조사 수행
- 구축된 DB 아이템을 이용하여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사회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함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안옥선 연구관, 연락처 : 031-299-0521)

## < 4-1-1-2. 향토산업 육성(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추진

#### ○ 사업추진방향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적극 발굴
-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방지 및 차별성 유지 :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계획수립과정의 컨설팅, 마케팅, 예산지원 등 측면지원에 역점
- '07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08년부터 본격 추진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된 세부단위사업을 포괄 지원
  - 사업기간을 1~3년으로 하여 사업의 탄력성을 유지

### □ 07년도 계획

#### ○ 향토산업육성 로드맵 수립(보완) 및 향토제품 DB 구축 등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 ○ '07년도 시범사업 추진

- 사업규모 : 19개 시범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133억원(국비43) 지원 계획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50%(기준보조율)
- 향토자원의 발굴 및 지원절차 : 향토자원현황 및 실태조사(시군, 시도) → 향토자원평가, 사업대상자 선정(농림부)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 → 예산신청 및 조정(시군, 시도) → 검토 의견 제출(농림부) → 로드맵 수립(농림부)

-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균특보조
합계	19개사업	4,308
광주광역시	1개사업	150
경기도	2개사업	100
강원도	1개사업	250
충청북도	2개사업	805
충청남도	2개사업	390
전라북도	1개사업	100
전라남도	3개사업	440
경상북도	2개사업	323
경상남도	3개사업	500
제주도	2개사업	1,250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기준보조율), 자부담가능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007		4,308			4,308	3,754	5,234	13,296
(증△감)		4,308			4,308	3,754	5,234	13,296

○ '08년도 사업 준비

- '06년에 발굴된 '08년도 사업대상 향토자원 30개에 대한 사업 준비
  - 지자체 공무원대상 사업설명회 개최('07.1월) : 70명
  -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보완('07.1월~5월) : 30개자원



- '09년도 사업 준비
  - 향토자원 추가조사 및 사업성 평가 ('07.7월~10월)
  -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보완 ('08.1 ~'08.5월)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향토자원 추가 발굴 및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 추진
  - 기본계획수립 : ('06) 19개자원 → ('07) 30 → ('08) 30 → ('09) 30
-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신청 이전에 사업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조사 및 평가)하고,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원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적극 지원
  -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수립된 세부단위사업을 포괄 지원
-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방지 및 차별성 유지 :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과의 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계획수립과정의 컨설팅, 마케팅, 예산지원 등 측면지원에 역점
- 행정자치부로부터 신활력사업이 이관('07)됨에 따라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역특화사업과 신활력 사업을 통합하여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제도개편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최호종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7)

### < 4-1-1-3.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향토음식 체험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자원화
-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제조기술 보전 및 전수 및 바람직한 한국형 우리 식문화의 계승발전 및 균형식 실천
- 향토음식을 통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발전 : 향토문화 계승, 지역 특색 보존 및 향토애 제고, 음식문화 및 관련산업 발전

##### ○ 사업추진방향

- 향토음식 솜씨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향토음식 솜씨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향토음식 체험자원화 촉진 (농촌체험마을 또는 영농조합법인 우선지원)
- 향토음식 체험컨텐츠 개발운영, 사업참여자의 자질향상 등 기반조성
- 음식재료의 지역 농산물 활용으로 농업 생산·유통 및 경제 활성화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
- 삶의질향상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에 고유하거나 문화, 기술, 특산품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및 계승에 대한 지원)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대상마을 선정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시행 준비 (마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 예산지원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시행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자, 마을)

### ○ 사업 내용(신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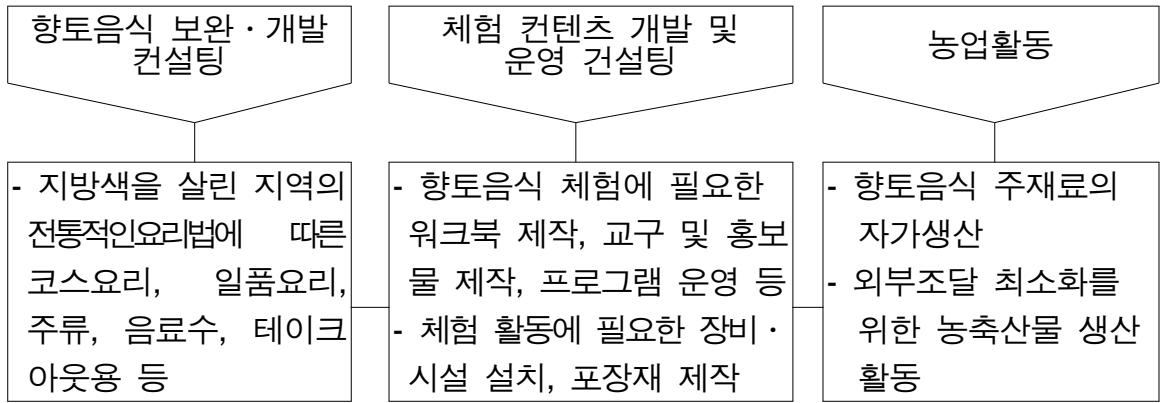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마을 또는 영농조합법인, 향토음식 솜씨 보유농가
- 사업 규모(사업량) : 10개('11년까지 160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개소당 7천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향토음식과 인적자원을 갖춘 시군
  - 지역특산물 이용 향토음식 보유 농촌체험마을 또는 영농조합법인 우선지원
  - 향토음식 솜씨 보유농가 (농업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 한함)
- 사업 주요내용

<시군 농업기술센터> : 향토음식의 보전 및 명품화 기반 조성

- 시범사업 대상자 및 후계자 교육 : 향토음식 품질향상기술, 손님맞이, 위생 규정 및 안전수칙 등
- 지역의 솜씨보유자를 발굴하여 조리법의 채록·재현
- 정통성을 인정받은 지역의 향토음식을 대상으로 품질, 맛, 조리법 개선
- 지역 향토음식 홍보 전시·자료화 및 기자재 구입활용
- 발굴된 향토음식의 향토지적재산 등록, 특허출원, 고장 대표음식 지정

<농촌체험마을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향토음식 솜씨 보유농가>

- : 향토음식의 체험상품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반조성 등



- 사업대상자는 향토음식 체험관련 기본소양 및 자질함양 교육이수
- 민사상책임, 사고, 식중독, 도난, 화재 등의 위험대비 보험가입
- 예약을 통한 향토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체험시설은 마을 및 농가내에 위치하고, 일반식당 경우와 같은 시설설치 및 운영을 해서는 아니됨.
- \* 향토음식 솜씨 보유농가의 경우는 농가주 또는 가족구성원이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향토음식 체험활동에 참여해야 함.

- 시도별 배분내역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사업량(개소)	10	1	1	1	1	1	1	1	1	1	1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11년 (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007	350				350	350		700
(증△감)	350				350	350		7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각 지역별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중앙단위 교육추진
  - 기본 기술교육을 위한 사업자 집합교육 : 조리기술 전수, 한국음식의 이해, 홍보·마케팅 전략, 고객서비스대응법 등
  - 농촌 현지 교육 : 상품화 교육, 음식 포장방법, 푸드코디네이트등 상품개발 지도 및 체험장 운영 지도
-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센터는 향토음식 체험상품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에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과 박수선, 연락처 : 031-299-2681)

## <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에 공단을 조성하여 공장유치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지역 취업기회 확대, 수도권 등 대도시소재 공장의 이전촉진, 도시교통난, 주택난, 공장입지난 완화

#### ○ 사업추진방향

- 2013까지 총 400개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인력과 도시민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 매년 10개소 수준 준공추진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도개선 추진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91부터 농림부등 4개부처 소관사항별로 지원
  - 농 림 부 : 농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
  - 산업자원부 : 농공단지시책 총괄,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농공단지 관리
  - 건설교통부 : 농공단지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 농공단지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관리

#### ○ 사업 내용

- 사업 시행대상 : 7개도 25개시·군 28개단지 (준공6, 계속12, 신규10)
- 사업 규모 : 단지당 30천m<sup>2</sup>이상 330천m<sup>2</sup>이하
-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비 : 50,120백만원 (국비 31,413, 지방비18,707)
  - 사업규모 : 1,427천평 (28개단지)
  - 지원형태 : 국비보조, 국비용자
  - 지원조건 : 평당정액지원 (3~10만원/평)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농공단지 지정·승인신청(시장·군수) → 지정·승인(시·도지사) → 지정 및 고시(시장·군수) → 공사, 준공(시장·군수)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도별	2007예산			
	사업량	사업비		
		계	균특보조	농특용자
계	28	31,413	31,413	-
강원도	6	6,580	6,580	-
충청북도	1	1,569	1,569	-
충청남도	8	2,338	2,338	-
전라북도	5	13,377	13,377	-
전라남도	2	3,962	3,962	-
경상북도	-	-	-	-
경상남도	8	3,587	3,587	-

○ 예산

- 사업기간 : '84년 ~ '14년 (총 31년)
- 지원형태 : 평당정액지원 (3~10만원/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5,995			25,995	29,813		55,808
2007		31,413			31,413	17,707		49,120
(증△감)		5,418			5,418	△12,106		△5,688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림어업 등의 산업위주의 지역특화단지 조성을 활성화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단지 조성
- 낙후지역의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시·군 농공단지 유형구분 개선,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등

(사업담당자 : 농촌사회과 최호종 사무관, 연락처 : 02-500-2087)

<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노동부) >

□ 사업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UR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농예상 농어민에 대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전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여 농어민의 소득향상 등 가계안정에 기여

○ 사업추진방향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이농예상 농어업인의 전업 및 취업 지원

○ 사업추진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제16조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절 차	주요 내용	일정
① 시·도별 계획 수립	○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수 및 취업률, 수료율 등 훈련 성과를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06. 10월
② 훈련 실시 기관 지정	○ 시·군·구청장은 훈련기관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 훈련기관 지정	'06. 12월
③ 훈련과정 승인	○ 시·군·구청장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과정 승인 요청 ○ 지방노동관서장은 교과내용, 시설·장비 등을 검토한 후 훈련과정 승인 결정 및 통보	'07. 1 ~10월
④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 시·군·구청장은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 훈련생에 대하여 월별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07. 1 ~12월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시행대상 및 규모 : 농어업인 515명
-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 총사업비 : 13억원(균특회계 포함)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훈련실시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훈련 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는 훈련수당 지원
- 시·도별 훈련인원 및 예산 등 배분 내역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목표인원	예산액	비고
계	515	1,277,000	
경 기	78	193,373	
강 원	12	29,841	
충 북	12	29,841	
충 남	189	468,404	
전 북	26	64,528	
전 남	49	121,518	
경 북	54	133,907	
경 남	60	148,774	
제 주	35	86,814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 계			
2006	1,344				1,344			1,344
2007	1,190	87			1,277			1,277
(증△감)	△154	87			△67			△67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확대
- 훈련 내실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의식 고취로 이농예상 농어민의 전업 및 취업 적극지원

(사업담당자 : 능력개발지원팀 박종환 사무관, 연락처 : 02-507-7238)

## 나. 농산어촌 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1) 개 관

#### □ '07년도 추진방향 및 전략

- 주민 합의에 따라 마을을 중심으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여 자연·문화자산, 농업 및 농촌체험활동 자원을 다양하게 연계
  -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여 유흥·위락 위주의 기존의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
- 마을의 자연경관과 농업, 문화, 생활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유지·보전과 연차적 지원과 연계사업의 유치 사업의 완성도 제고
- 문화역사마을 조성은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도시민들의 창조적인 여가활동,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체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촌관광 모델개발로 방문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 조성
- 생산기반 위주의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하여 고품격 어촌관광단지를 개발하여 관광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어항·어촌의 통합개발을 통해 관광어촌의 새로운 모델제시 및 어업인 의식전환 유도
- 산림휴양공간 조성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국민의 여가패턴 및 휴양 수요를 고려한 산림휴양시설 개발·조성으로 가족단위 휴양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체험형태 휴양서비스 제공
-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로 전문분야의 인력을 보충하여 새로운 어촌관광 S/W업무를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어촌관광사업 체제 구축

□ 예산내역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8,362			8,362	8,338		16,700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3,272				3,272	3,228		6,500
문화역사마을조성				2,250	2,250	1,125		3,375
어촌체험마을조성		4,050			4,050	3,645	405	8,100
어촌관광활성화	39,100	11,972			51,072	11,972		63,044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수목원 조성		40,269	21,051		61,320	19,694		81,014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1,570			1,570	1,570		3,140
해양관광자원 개발		4,650			4,650	5,275	6,000	15,925
도농교류페스티벌개최	500				500			500
농촌체험교육농장	600				600	600	300	1,500
향토문화관광축제육성				4,000	4,000	4,000		8,000
합계	43,472	70,873	21,051	6,250	141,646	59,447	6,705	207,798

□ '08년도 추진 방향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마을대표자, 전문운영자, 참여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견학 등 실시
- '08년까지 5~8개 문화역사마을이 준공될 예정으로 지방문화원,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과 연계한 홍보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및 전시박람회 등 참여를 통한 도시민 유치에 지원하고 혁신경진대회를 통한 마을 자생력강화 확대 추진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립수목원 조성
- 도시측에는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 붐을 조성하고, 농촌측에는 지역간 벤치마킹을 통해 체험관광의 질적향상 도모
  - 농산어촌의 소중한 가치 전달 및 농촌방문 유도

## (2) 세부과제

### <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등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사업을 추진
  -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자연·문화자산, 농업 및 농촌체험활동자원을 다양하게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여 유흥·위락 위주의 기존의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
-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 계획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사업,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등 마을여건에 맞게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화 유도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시·도)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예산지원 (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마을협정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
- 사업규모 : 84개 녹색농촌체험마을('06년까지 190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2억원(국비 50%·지방비 50%)
  -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60, 지방비 40%
  -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지원조건
  - 농촌관광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
    - \* 마을협정 체결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 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능력이 구축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생활 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 ('07년 녹색농촌체험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4	1	7	15	6	14	14	7	9	10	1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17년 (총 16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6		6,750			6,750	6,650		13,400
2007		8,362			8,362	8,338		16,700
(증△감)		1,612			1,612	1,688		3,3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을 갖추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마을리더, 참여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견학 등 실시
-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적용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원 추진
  -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지원,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에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전영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7)

## <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마을 고유의 농업·농촌자원을 포함한 전통문화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과 체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농촌전통생활문화의 계승 발전 및 공동체 유지 보전, 화합·협동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고유의 전통문화자원과 테마가 있는 마을에 대해 자원을 활용할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학습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확대
- 마을의 자연경관과 농업, 문화, 생활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유지·보전
- 주민합의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과 마을별 내외부 지원 시스템 구축
  - 마을별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위촉, 전문가 자문 등
- 사업단계별 연차적 지원과 연계사업의 유치로 사업의 완성도 제고

####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시·군, 시·도)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예산지원(농진청→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마을 고유의 특성화된 자원 또는 개발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한 마을
- 사업규모 : 34개 농촌전통테마마을('06년까지 97개) 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2억원, 국비 50% · 지방비 50%
  -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60, 지방비 40%
  - \* 1차년도 1억, 2차년도 1억을 연차별로 지원
- 지원조건
  - 농촌다운 마을경관과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와 마을운영에 참여할 인적자원이 있으며 마을 내의 조직 활동이 활발한 마을
  - 농촌지도기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투입되어 성과를 도출했던 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추진의 합의가 된 마을로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
- 사업 주요내용
  - 마을 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
  - 하드웨어 측면 : 체험 · 학습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경관 조성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마을주민 교육 : 마을 경영 및 운영, 프로그램 실행방법, 시설물 관리, 농촌 관광 마인드 및 서비스, 민박 운영, 마케팅 등
    - 소득자원 개발 : 친환경 농특산물, 농산물 가공, 테마상품, 캐릭터 등
    - 홍보 · 마케팅 :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농교류 활동 지원, 이벤트 개최, 홍보물 발간 등
    - 추진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빈집활용 지원, 가정원에 생활화 등 관련 시범사업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 시도별 배분내역('07년 농촌전통테마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4	2	5	1	14	6	3	1	2

○ 예산

- 사업기간 : '02년 ~ '09년 (총 8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520				2,520	2,480		5,000
2007	3,272				3,272	3,228		6,500
(증△감)	752				752	748		1,500

\* 균특회계(농특세전입금) 사업임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시작 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 마을 대표자의 전문 운영자 육성과정 이수, 참여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교육 및 견학 실시 등
- 지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후 확산)
- 농촌진흥청과 지방 지도기관은 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과 서만용 지도사, 031-299-2677)

### <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문화관광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

##### ○ 사업추진방향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 사업추진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참여정부 문화비전(창의한국) :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 문화관광부 업무보고(‘05.4)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지역추진위원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도→연합회) → 대상마을 선정(연합회)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문화원) → 예산지원(문화부→연합회→문화원/시·군→문화원) → 사업 시행 및 문화역사마을 운영(문화원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문화역사적 소재를 보유하고,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농어촌 마을
- 사업 규모(사업량) : 12개 문화역사마을 조성 추진
  - '04년 : 1개 마을(안동) 조성 추진
  - '05년 : 6개 마을(영광, 서귀포, 원주, 강릉, 서천, 통영) 조성 추진
  - '06년 : 3개 마을(고창, 의령, 정읍) 조성 추진
  - '07년 : 2개 마을(목계, 진천) 조성 추진
- 지원금액 및 형태
  - 총사업비 : 255억원 (관광기금 170억원/지방비 85억원)
  - 각 도별 30억원 (기금 20억원·지방비 10억원) 지원
  - 기금 보조금(20억원)에 대한 지방비 50%(10억원) 분담 조건
- 지원조건
  - 기금 보조금(20억원)에 대한 지방비 50%(10억원) 분담 조건
- 사업 주요내용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시도별 배분내역
  - 9개 도를 대상으로 각 도에 1개 마을 조성 원칙, 지자체 희망시 도 단위 사업비(30억원 : 기금 20억, 지방비 10억)내에서 2개 마을 조성 허용

- 2개 마을 조성시 마을별 지원규모는 해당 마을의 기반시설 현황에 따라 차등 교부 가능

(단위 : 개소수)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07 재공모	2	2	1	2	1	1	2	1

○ 예산

- 사업기간 : '04년 ~ '09년 (총 5년/1개 마을당 사업기간 : 2년)
- 재원형태 : 국비 67%, 지방비 33%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3,500	3,500	1,750		5,250
2007				2,250	2,250	1,125		3,375
(증△감)				△1,250	△1,250	△625		△1,875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07년 6월 준공 예정인 안동 군자마을의 우수 사례 및 성과를 분석한 후, 이를 타 마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 하도록 노력
- '07년 2개 마을, '08년 5~8개 마을이 준공될 예정이므로 지방문화원, 지방자치 단체, 언론 등과 연계한 사업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동 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확산 및 전 국민의 (농어민 포함)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도록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사업담당자 : 공간문화팀 배양희 사무관, 연락처 : 02-3704-9452)

#### <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
-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

###### ○ 사업추진방향

- 도시인들의 창조적인 여가활동,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체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촌관광 모델개발」
-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 방문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 조성

###### ○ 사업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 및 제4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선정(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시·군, 시·도) → 사업시행 준비(마을, 시·군) → 예산지원(해양수산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703억원 ('07년 11개 마을 81억원)
- 사업 시행대상
  - 어촌계 단위 마을
- 사업 규모 : 112개 어촌체험마을('06년까지 76개) 조성 사업 중 11개 마을
- 지원금액 및 형태 : 마을당 5억원, 국비 50%, 지방비 45%, 자담 5%
  - \* 지자체에서 투자소요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증·감 요구가능
- 지원조건
  -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신규사업예정 어촌계의 계장, 마을 이장등과 시·도(시·군) 관계공무원은 어촌관광리더·가이더교육과정(국립수산과학원 교육지원팀)의 교육을 사업전에 이수하여야 함
  - 체험어장조성, 체험장비 준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등은 시·군·구, 어촌계가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고, 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마을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반영시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관광기초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컨설팅, 실시설계비, 주민교육 훈련, 팸플렛 제작 등)
- 시도별 배분내역 ('07년 어촌체험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	-	-	1	-	-	6	-	4	-

○ 예산

- 사업기간 : '01년 ~ '13년 (총 13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45%, 자부담 5%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6		6,900			6,900	6,210	690	13,800
2007		4,050			4,050	3,645	405	8,100
(증△감)		△2,850			△2,850	△2,565	△285	△5,700

※ 균특회계(농특세전입금) 사업임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
  - 예비선정제(마을주민교육, 마을운영 조직구축, 개발계획수립 등) 운영
- 어촌체험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사무장보수지원, 컨설팅 지원, 국내외 교육) 및 전시박람회 등 참여를 통한 도시민 유치를 적극지원하고, 혁신경진대회를 통한 마을 자생력강화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어촌어항과 전성래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55)



## <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업의 소득 창출
- 어촌관광 기반시설의 증대, 어한기를 활용한 어촌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어업의 소득증대 기대
- 국토균형개발과 대국민 해양휴식공간제공 및 어촌관광기반 및 정주환경 기반시설 지원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제고

#### ○ 사업추진방향

- 생산기반 위주의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하여 고품격 어촌관광단지를 개발
- 관광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어항·어촌의 통합개발을 통해 관광어촌의 새로운 모델제시 및 어업인 의식전환 유도
- 관광 잠재력이 있는 어촌지역의 집중개발로 특성화 된 해양관광 서비스 제공

#### ○ 사업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및 제49조(사업비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지 선정(해양수산부) → 기본설계(해양수산부) → 실시설계(어항부문:국가, 어촌부문:지자체) → 사업계획 확정 → 예산지원 → 사업시행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 규모 : 19개소 51,072백만원
  - 기본설계 : 3개소 300백만원 (Ⅲ모델 3개소)
  - 실시설계 : 1개소 300백만원 (Ⅰ 모델 1개소)
  - 공사추진 : 15개소 50,472백만원 (Ⅰ 모델 5개소, Ⅱ모델 4개소, Ⅲ모델 6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4,732억원 (국비 4,227억원, 지방비 505억원)
  - 어항부문 : 국비 100%, 어촌부문(Matching fund)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관광활성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기본설계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 사업대상 선정시 사업집행주체가 지자체인 경우는 제외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당해연도 지원대상 사업의 투자규모를 감안, 세부사업시행계획(실시설계)을 확정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국가어항부문에 대한 사업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하고, 그 외의 어촌 어항부문에 대한 사업은 시·도지사(시·군·구)가 시행
  -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대상사업중 어업인 소득기반사업은 해양수산사업실시 규정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시 관광전문가를 포함하여 어촌관광활성화가 가능한 사업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주요내용
  - 주요지원내용 :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청소년야영장, 생태체험장, 낚시터(잔교식), 해수욕장, 경관전망대, 생태공원, 해안산책로, 주차장, 조형물 등

- 사업구역내 이미 구비된 각종 수산시설(수산물직매장, 활선어위판 등 유사 시설)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유사시설 건립이 불가피할 경우는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센터 및 지역특산물판매장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어촌관광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함
  - 어항기본 시설은 어항개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제외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해수부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사업량	19	4	2	3	2	1	3	2	2
사업비	51,072	600	6,080	13,500	7,000-	12,000	2,000	8,967	925

○ 예 산

- 사업기간 : '05년 ~ '09년 (총 5년)
- 재원형태 : 어항부문 (국비 100%), 어촌부문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	소계			
2006		3,500	14,000		17,500	3,500		21,000
2007	39,100	11,972			51,072	11,972		63,044
(증△감)	39,100	8,472	△14,000		33,572	8,472		42,044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집중투자

(사업담당자 : 어촌어항과 전성래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56)

## < 4-2-1-6.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수목원조성(산림청) >

### □ 사업 개요

####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 목적 및 기대효과

-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산림여가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산림휴양시설 확충
- 건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자연학습 및 체험활동 공간 제공

#### < 수목원 조성 >

##### ○ 목적 및 기대효과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그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
- 식물자원의 수집·보전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생물유전자원 확보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산림문화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생활 공간 수요 충족

####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 사업추진 방향

-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국민의 여가패턴 및 휴양수요를 고려한 산림휴양시설 개발·조성
- 권역별 휴양수요를 고려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양시설을 전국적으로 균형적 배치
- 가족단위 휴양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체험형태 휴양서비스 제공

#### < 수목원 조성 >

##### ○ 사업추진 방향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립수목원 확대조성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 사업추진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22조
- 「산림기본법」 제4조 및 제20조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수목원 조성 >

###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조 >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조성사업

## □ '07년도 추진계획

###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 사업절차 : 실태조사 후 대상지 지정 신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  
→ 적지평가 및 환경부 협의(산림청) → 대상지 지정(산림청) → 예산지원(산림청 → 해당기관) → 사업시행

### < 수목원조성 >

####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산림청 →시·도) → 사업시행(시·도)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규모
  - 신규설계 : 5개소 (국가 1, 지방자치단체 4)
  - 조성 1년 : 8개소 (국가2, 지방자치단체 6)
  - 조성 2년 : 8개소 (국가1, 지방자치단체 7)
  - 보완사업 : 70개소 (국가 33, 지방자치단체 37)
  - 산림욕장 : 14개소 (지방자치단체 14)
- 지원조건
  - 국유 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100%
  - 국유 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100%
  - 공유 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70%, 지방자치단체 30%
  - 공유 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 공유 산림욕장 조성(4억) :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 사업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 시도별 배분내역(균특사업)

(단위 : 개소)

	계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계	4								1	1	2	
조성	13	1		2	2	4		1		2		1
보완	37	1	2		1	7	8	3	5	6	2	2
산림욕장	14	2		1	3	1	2	1	2	1	1	

< 수목원 조성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 대상 : 10ha 이상의 공립수목원

- 사업규모 : 18개(조성·보완·확대) 공립수목원('06년까지 22개 완료·조성·보완·확대 중)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122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사업부지 확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해결된 개소
- 사업 주요내용 : 전시시설, 증식 및 재배시설 등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수)

계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1	1	1	3	1	3	1	1	3	2	1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 예 산

- 사업기간 : 1988 ~ 2010
- 재원형태 :
  - 국유 자연휴양림 (국비 100%)
  - 공유 자연휴양림 (국비50~70%, 지방비 30~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 국유 자연휴양림 조성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1,391		21,391			21,391
2007			21,051		21,051			21,051
(증△감)			△340		△340			△340

\* 국유 자연휴양림 조성은 책특회계 사업임

< 공유 자연휴양림 조성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7,555			17,555	12,727		30,282
2007		28,075			28,075	19,694		47,769
(증△감)		10,520			10,520	6,967		17,487

\* 공유 자연휴양림 조성은 균특회계 사업임

< 수목원 조성 >

○ 예 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산림휴양공간 조성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2,467			12,467	12,467		24,934
2007		12,194			12,194	12,194		24,388
(증△감)		△273			△273	△273		△54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자연휴양림을 차질 없이 지정
- 산림휴양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관리
- 자연휴양림 경영수지 개선 및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 수목원 조성 〉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립수목원 조성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산림휴양정책팀 김경목, 연락처 : 042-481-4212)

산림환경보호팀 윤찬균, 연락처 : 042-481-4242)

## < 4-2-1-8.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와 차별된 농업·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
-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2014년까지 각 도별로 2~3개소씩 24개 지구를 조성
-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
- 기존 농촌관광자원과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시·군→시·도)→대상지선정(농림부)→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시·군→시·도)→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시·군→시·도)→사업시행(시·군)

####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시·군
- 사업 규모 : 경기 안성(농협목장), 충북 음성(원남지), 충남 서천(동부지), 전남 영광(불갑지) 등 4개소

- 지원조건 : 1개소당 5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
- 주요사업내용 : 테마를 부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휴양·레저·체험시설, 판매·숙박·음식제공시설 설치 등 관련사업 추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 체험·휴양시설 : 야영장, 학습관, 산책로 등
- 소득시설 : 농산물판매장, 숙박시설, 휴게소 등
- 시도별 배분내역

(개소, 백만원)

시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량	4	1	0	1	1	0	1	0	0
사업비	3,140	1,000	0	200	836	0	1,104	0	0

○ 예 산

- 사업기간 : '07년 ~ '10년 (총 4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6								
2007		1,570			1,570	1,570		3,140
(증△감)		1,570			1,570	1,570		3,14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성이 우수한 지구를 선별 지원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이행우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1)

#### <4-2-1-10.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주5일 근무제 정착,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어촌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촌관광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어촌관광 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 필요
-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어촌관광 S/W를 지원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지역 인구유입 등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사업추진방향

- 한국어촌어항협회내에 가칭 “어촌관광지원센터”설치
  - 컨설팅, 마케팅, 인터넷 전문가 등 전문분야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
- 어촌관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어촌관광 S/W 업무를 개발
  - “바다여행 사이트” 업무이관 및 어촌체험 박람회 개최 등 마케팅
  -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어촌관광사업 성과모니터링 체제 구축
  - 어촌관광 인적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등

###### ○ 사업추진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 농어촌정비법 제89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장관
- 사업추진절차 : 센터설치 근거(안) 마련→ 센터설치 추진 및 시범운영(업무 일부 이관)→ 인력충원→ 센터 정식발족·운영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업규모 : 한국어촌어항협회 내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12명 내외)
  - \* '07년도에는 우선 관광 및 마케팅 전문가 3명 채용
- 사업 주요내용
  - 어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마련 및 센터 설치
  - 전문인력 채용 (관광 및 마케팅 전문가)
  - 우리부 사업 중 어촌관광 S/W관련사업 위탁 (바다여행 사이트 운영 등)

○ 예산(비예산사업)

- \* '08년부터는 우리부 위탁사업을 센터로 이관하고 소요예산 반영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어촌관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촌관광지원 클러스트 구축
  - 새로운 어촌관광 S/W개발 본격화
    - 어촌관광 인적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 컨설팅
    - 어촌관광 성과모니터링 체제 구축
  - 국내 어촌관광 전문여행사 및 지역 관광센터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어촌관광 지원클러스트 추진

(사업담당자 : 어촌어항과 유은원 사무관, 연락처 : 02-3674-6851)

## <4-2-1-11. 해양관광자원 개발(해양수산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 ○ 사업추진방향

- 연안이 지속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양관광자원개발 지원·육성  
· 국민이 연안에 친숙하게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장소 개발
- 해변(연안), 해상 및 해중·해저의 입체적 효율적 활용  
· 해수욕 등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여 4계절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여 보전 및 이용
- 국민이 바다와 친숙하게 접근하여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 기회의 제공
- 어업과 해양레저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의 개발

#### ○ 사업추진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사업의 세입·세출)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지자체) → 사업계획 확정(해양수산부) → 자체 예산편성 및 예산요청(지자체) → 예산 배정(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지자체)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시·도(시·군)
- 사업규모 : 7개 사업 (47억원)
- 지원조건 : 지자체 예산보조 (보조율 : 50%)
- 시도별 배분내역 : 전남 4,500백만원, 경남 150백만원
- 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금액 ('07년도 사업기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예산(국비기준)		사업내용	비고
				'07	'08이후		
계	7개 사업	46,850 (16,954)	'05~'10	4,650	9,750		
보성군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	4,000 (2,000)	'05~'08	500	500	위락형 해상잔교 및 유람선 접안시설 등	
함평군	마리나시설조성	4,050 (1,550)	'05~'07	500	-	요트계류장 및 해상다이빙시설 등	
목포시	요트산업기반구축	7,000 (3,500)	'06~'08	1,000	2,000	요트계류시설 등	
완도군	완도항워터프론트조성	2,000 (1,000)	'07~'08	500	500	야외음악당 및 거리식물원 등	
완도군	해양테마펜션단지조성	10,000 (2,000)	'07~'08	1,000	1,000	진입도로 및 위락시설 등	
영광군	해양테마펜션단지조성	10,000 (2,000)	'07~'08	1,000	1,000	"	
고성군	당항포 마리나시설 조성	9,800 (4,900)	'07~'10	150	4,750	요트계류시설 및 낚시터 등	

○ 예 산

- 사업기간 : '05년 ~ '10년 (총 6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7,900			7,900	8,500	200	16,600
2007		4,650			4,650	5,275	6,000	15,925
(증△감)		△3,250			△3,250	△3,225	△5,800	

\* 기타(자부담)는 기본사업비(국비, 지방비 각각 50%)외의 민간 투자부분임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사업 신청전 충분한 검토

- 사업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및 관계기관 등 협의 절차 및 사업타당성 조사등

○ 사업신청시 사전 협의 철저

- 사업설명서(위치도 및 현장사진포함), 예산내역서 및 산출근거, 부지확보 등

(사업담당자 : 해양정책과 김선종 사무관, 연락처 : 02-3674-6512)



## < 4-2-2-1. 도농교류 페스티벌 개최 (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을 통해 도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인 붐 조성 및 농촌주민의 소득창출 기회로 활용
  - 농산어촌 체험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농촌으로 유도하여 도농교류 확대에 기여
  - 농촌지역의 체험프로그램, 친환경농산물, 특산품 등을 홍보하여 수익으로 연계시켜 지역의 활성화 계기 마련

#### ○ 사업추진방향

- '도농교류페스티벌'을 통해 농촌 체험관광에 관심이 많은 도시민에게 체험·휴양·투자 등 종합적인 정보를 맞춤형 방식으로 제공
- '도농교류페스티벌'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페스티벌을 찾아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등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등)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등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규모 : '도농교류 페스티벌' 격년 개최('07년)
- 지원조건 : 국비보조 100% (회당 10억 수준)
- 사업 주요내용
  -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추진
  - 페스티벌 개최 준비와 관련 시도, 농산어촌체험마을 관계기관과 추진사항 협의
  - 페스티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박람회 참가마을 및 업체 모집 홍보
  - '2007 도농교류 페스티벌' 개최 ('07.5.3~5.6)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13년 (총 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30				130			130
2007	500				500			500
(증△감)	370				370			37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시측에는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 붐을 조성하고, 농촌측에는 지역간 벤치마킹을 통해 체험관광의 질적향상 도모
  -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등에서의 다양한 현장체험교육을 주요컨셉으로 농산어촌의 소중한 가치 전달 및 농촌방문 유도
  - 주민 스스로 타 마을과 차별화된 농산어촌체험 콘텐츠 발굴 및 정보교환,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역량 및 마을 자생력 증진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전영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67)

### <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 (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 및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자원 등 제자원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체험 활동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운영할 농가를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하기 위한 것임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부가가치 증진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체험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차원의 정기적인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장을 개발하고, 농촌체험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
- 농촌체험학습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장주 교육과 협력·지원조직 구축
- 체험, 교육, 체류 등 개별농가 차원의 농촌관광활동의 조직화 및 기존 마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센터)에 병행 지원

#####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어촌정비법 제66조(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 초·중등교육법 제48조 5항 (수업운영 방법 중 교외체험학습 허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촌체험학습 운영능력이 있고 일정규모이상의 농장을 소유한 농가
- 사업량 : 48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15억원 (개소당 31.25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지방비 각 40%, 자부담 20%
- 사업 주요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활동을 농가 또는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
  - S/W 관련사업 : 전문 컨설팅, 보험, 홍보 등
- 시도별 배분내역

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8개소	4	8	4	4	8	8	8	4

\*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투입 시군당 4개소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0년 (총 5년)
- 재원형태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00					100	50	250
2007	600					600	300	900
(증△감)	500					500	250	75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농장주대상 교육 확대
- 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학교와의 연계 확대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과 조은희 생활지도관, 연락처 : 031-299-2676)

#### <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관광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 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사업추진방향

-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및 유망축제 발굴
- 문화관광축제 생산성 및 파급효과 극대화

###### ○ 사업추진근거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
- '99년 관광진흥5개년계획 사업(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시장, 군수
- 사업추진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축제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시·도→시·군·구) → 사업 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관광축제
- 사업 규모(사업량) : 52개 문화관광축제
- 지원금액 및 형태 : 4,0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방비 50% 확보
- 사업 주요내용
  -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52개 축제)
    - ⇒ 최우수축제(7개) : 각 250백만원 지원 (보령머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강진청자문화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춘천마임축제, 양양송이축제)
    - ⇒ 우수축제(9개) : 각 100백만원 지원 (부산자갈치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무주반딧불축제, 함평나비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난계국악축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 ⇒ 유망축제(17개) : 각 50백만원 지원 (대구약령시축제, 광주김치대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이천쌀문화축제, 인제빙어축제 등)
    - ⇒ 예비축제(19개) : 예산지원 없이 행정 지원 (하이서울페스티벌, 강화고인돌축제, 남원춘향제, 풍기인삼축제 등)
  - 제2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 시도별 배분내역('07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

(단위 : 개수)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2	1	2	1	1	1	1	1	4	6	4	6	4	7	5	5	2

○ 예산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재원형태 : 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6				3,800	3,800	3,800		7,600
2007				4,000	4,000	4,000		8,000
(증△감)				200	200	200		40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지역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주제로 한 축제를 대표축제로 집중 육성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최고의 축제 육성

(사업담당자 : 관광산업과 강지태, 연락처 : 02-3704-9753)



## 다.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 (1) 개 관

#### □ '07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주민들이 스스로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경관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10a당 170천원 직불금 지급
- 지역의 잠재자원 개발, 소득화 사업, 경관 및 커뮤니티형성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를 유도하여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주민·지자체 및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획수립과 농촌환경정비 및 공간조성등 농촌경관 어메니티 자원화
- 농촌어메니티 자원 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및 현장보급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체계 개발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전시 및 콘테스트 등을 통하여 은퇴도시민, 농산어촌 주민 등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실제 수요자가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관심 유도
- 자생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학술연구와 자연학습 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자생식물자원의 현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 농촌경관지표 제정·적용, 농촌경관맵 작성·활용, 경관보전협약 체결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경작지 소재 읍·면거주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단위로 직불금 지급

○ 예산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경관보전직불	1,000				1,000	408		1,408
어메니티 지원 관리			54		54			54
어메니티 모델 개발			310		310			310
경관주택 발굴				500	500		360	860
자생식물식재 및 생태숲 조성		13,836	913		14,749	14,749		29,498
조건불리지역직불	52,307				52,307	22,199		74,506
합 계	53,307	13,836	1,277	500	68,920	37,356	360	106,636

□ '08년도 추진 방향

- 경관보전직불제는 시범사업 기간('05~'07)임을 감안 '08년 대폭확대(2,000ha)시행
- 경관보전작물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및 '07년 추가 시범작물 자운영, 연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경관작물 다양화 추진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산어촌 공간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보전·증진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르 위한 지원기반 강화
- 농촌어메니티 자원개발 연구의 성과와 진행중인 농촌어메니티 자원도를 활용하여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확대
- 어메니티 계획모델과 현장보급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자체 지경개발사업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학술연구와 자연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숲 등 조성 추진
- 조건불리지역의 지원대상 확대 추진 : 경사도 ('07) 경사도 14% → ('08) 7%

## (2) 세부과제

### < 4-3-1-0. 경관보전 직불제(농림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 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 시책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
-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거양

##### ○ 사업추진방향

- '05~'07 기간중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진방안을 보완한 후 '08년 이후 확대 추진할 계획임
- 주민들이 스스로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마을계획을 심사·평가한 후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 도모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업인
- 사업추진절차 : 대상지역 신청(주민→시·군→시·도→농림부) → 대상지역 선정(농림부→시·도→시·군) → 경관보전협약 체결(지자체와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 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연접)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사업규모 (면적)

- 사업량 : 800ha

구 분	계	'03까지	'04	'05	'06	'07	'08~
사업량(ha)				470	470	800	( - )

- \*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후 집단화규모, 경관관리계획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 지원금액 및 형태 : 14억원 (직불금)

- 사업 주요내용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

- \* 직 불 금 : 170천원/10a (국비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도별 배분내역 ('07년 대상면적, 800ha)

- \*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후 집단화규모, 경관관리계획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등을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 예산

- 사업기간 : '05년 ~ '07년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별 확대 추진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5	600				600	240		840
2007	1,000				1,000	408		1,408
(증△감)	400				400	168		568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시범사업('05~'07년)을 성과를 평가하여 '08년 대폭확대(2,000ha) 시행
- 경관보전작물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및 '07년 추가 시범작물 자운영, 연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경관작물 다양화 추진

(사업담당자 : 정주지원과 김현수 사무관, 연락처 : 02-500-2172)

#### <4-3-2-1.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기반 기술 구축(농촌진흥청)>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농촌경관의 유형별 관련기술 및 체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산어촌 공간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 사업추진방향

- 지역의 잠재자원 개발, 소득화 사업, 경관 형성, 커뮤니티 형성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를 유도 및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주민·지자체 및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천적 계획수립 유도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정비 및 공간조성
  - 농촌 경관어메니티 자원화를 위한 경관어메니티 계획메뉴얼 작성
- 자연경관, 전통문화경관 등 잠재자원의 특성화를 통한 농촌관광, 도·농 교류 연계 및 소득증대 창출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농촌진흥법(법률 제5153호)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212호) 및 시행규칙(농림부령 제 1454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 및 제 8조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촌경관종합대책('06.12, 농림부)에 의한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외부전문가, 소비자)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 연구과제 중간진도관리 및 현장평가(농촌환경자원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외부전문가, 소비자) → 결과활용심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자원 관리기반 기술개발 연구 추진 부서
- 사업 규모(사업량) : 농촌경관조성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기반 기술 1건
- 지원금액 및 형태 : 54백만원, 국비 100%,
- 지원조건
  - 전문가 등의 심의와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촌경관의 유형 및 공간단위별 주요경관구성요소 도출
  - 농촌경관유형별 개념정립 및 특성분석
  - 농촌경관유형별 농촌경관지표 개발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매뉴얼 작성
- 시도별 배분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예산

- 사업기간 : '07년 ~ '13 (총 7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007			54		54			54
(증△감)			54		54			54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유형별 관련기술 및 체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총체적 추진계획 수립
  - 농촌경관자원의 유형 및 공간영역(규모)에 따른 평가체계 구축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산어촌 공간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보전·증진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강화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김상범 연구사, 연락처 : 031-299-0511)



## <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국민의 농촌어메니티 수요에 대응한 수용여건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산어촌지역 종합 개발 및 어메니티 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한 자원화·소득화 기술 지원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원권역별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 콘텐츠를 활용한 체계적 개발에 필요한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06~'09)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 농촌어메니티 자원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및 현장보급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체계 개발
- 개발 모델의 효과적인 현장 보급 및 대국민 인식 확대를 위한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 ○ 사업추진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5153호)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212호) 및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54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 및 제 8조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사업추진절차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외부전문가, 소비자)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 연구과제 중간 진도 관리 및 현장평가(농촌환경자원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 외부전문가, 소비자) → 결과 활용심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3유형 및 현장보급에 필요한 기반 기술 개발
- 지원금액 및 형태 : 3.1억원, 국비 100%
- 지원조건
  - 삶의 질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
  - 기존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해당과제 연구추진 능력이 검증된 부서
  -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사업 운영절차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
  - 사전 중복과제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이 없는 과제
- 사업 주요내용
  - 농촌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 3유형
  - 농촌어메니티 자원 기반형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 개발 모델의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체계 개발
  - 지식기반의 농촌어메니티자원 정보활용방안 개발
  - 대국민 홍보 및 현장지원을 위한 자원의 시각화 기법 개발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재원형태 : 국비 10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지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400		400			400
2007			310		310			310
(증△감)			△90		△90			△9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그동안의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 연구의 성과와 진행중인 농촌어메니티 자원도('05-'09년까지 600지역 1,230읍면 완료 계획)를 활용하여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확대
- 개발된 모델의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 활용
- 어메니티 계획모델과 현장보급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등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신문방송매체 및 전시행사를 통한 홍보 추진
- \*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 작품전시회(매년 개최)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강방훈 연구사, 연락처 : 031-299-0513)

### < 4-3-3-0 :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지역에 적합한 경관주택을 발굴·보급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주택이 농산어촌 경관의 유지·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전시 및 관련 콘테스트 등을 통하여 은퇴 도시민, 농산어촌 주민 등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실제 수요자가 농산어촌경관 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축하도록 유도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총괄), 한국농촌공사(집행)

##### ○ 사업내용

- 농어촌연구원내 전원마을 모델하우스의 지속적인 전시 및 추가 경관주택 건축을 통한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홍보·보급 추진
  - 스틸하우스와 국산목재를 활용한 주택 2동 증축, 공동화장실 증축, 상담 및 안내 제공, 도시민대상 전원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2007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농촌경관주택표준도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 경관 주택에 대한 개념을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은퇴도시민, 농산어촌지역 주민 등 수요자의 관심 제고 및 전원마을조성사업 시 활용 추진
  - 초청건축가전, 일반공모전, 작품설명회, 경관주택관련 심포지움, 전원마을조성 사업지구에 도입 가능한 경관주택표준도 개발
- 주요사업계획

- 한국농촌건축대전 행사비 : 150백만원
- 농촌경관주택표준도 개발 : 250백만원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유지관리비 : 150백만원
  - \* 모델하우스에 주택2동 추가 건축 : 민간자본 유치
- 공동화장실 : 60백만원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10년 (총 5년)
- 재원형태 : 마사회적립금, 한국농촌공사 자체부담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농촌공사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866	1,866
2007				500			360	860
(증△감)				500			△1,506	△2,726

- \* '06년 예산 : 전시관 대관료 및 시공비, 작품집 제작비 미반영(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 연계 추진)
- \* 농촌공사 자체사업비 (한국농촌건축대전, 모델하우스 유지관리, 공동화장실 설치)
- \* 농촌경관주택표준도 개발은 2개년('07~'08) 사업으로 마사회적립금을 신청하여 추진 예정 (2007 : 2억, 2008 : 3억, 총 5억원)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한국농촌건축대전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07년도 한국건축대전 결과를 활용하여 경관주택표준도 개발 추진
- 전원마을 모델하우스에 도시민 등에게 전원마을시책 홍보 및 농산어촌 경관주택 건축을 위한 상담 실시 및 도시민대상 전원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추진

(사업담당자 : 정주지원과 이재식 사무관 , 연락처 : 02-500-2171)

#### < 4-3-4-0. 자생식물단지 조성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자생식물자원의 보전과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 복원으로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식물자원의 산업화 촉진
- 자생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 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 산림문화 휴식공간 확충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 생활 공간 수요 충족

###### ○ 사업추진 방향

- 자생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학술연구와 자연학습 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조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시행령 제3조> 난대림 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수립(시·도지사) → 예산지원(산림청 →시·도) → 사업시행(시·도)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 지원대상
  - 50ha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한 생태숲
  - 1ha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한 자생식물단지
- 사업 규모
  - 자생식물단지 : 3개소(설계, 조성) 자생식물단지('05년까지 - ) 조성
  - 생태숲 : 23개(조성중) 생태숲('06년까지 21개 조성 중)조성
- 지원금액 및 형태
  - 생태숲 : 138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자생식물단지 : 9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사업부지확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해결된 개소
- 사업 주요내용 : 관찰로, 전문소원, 시험포지 시설 등
- 시도별 배분내역
  - 생태숲

(단위 : 개소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	1	1	1	2	2	3	1	5	6	1

· 자생식물단지

(단위 : 개소수)

계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1	2	

○ 예 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생태숲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12,320			12,320	12,320		24,640
2007		13,836			13,836	13,836		27,672
(증△감)		1,516			1,516	1,516		3,032

· 자생식물단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500		500	500		1,000
2007			913		913	913		1,826
(증△감)			413		413	413		826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학술연구와 자연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생태숲 등 조성 추진

(사업담당자 : 산림환경보호팀 윤찬균, 연락처 : 042-481-4242)



### <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촌경관이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보전·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여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강화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경관지표, 농촌경관계획수립기준 제정
-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경관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 마련
- 농산어촌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홍보 강화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의 경관의 보전)

#### □ '07년도 추진계획

##### ○ 농촌경관지표 제정·적용, 농촌경관맵 작성·활용, 경관보전협약 체결

- 농촌경관구성요소별 시각적·현상적 경관보전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인 농촌경관지표 제정 및 적용
- 사업권역에 대한 농촌경관지표 적용결과는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농촌 경관맵으로 작성·활용
- 지역사회(마을 등)와 지자체간 사업추진지역 농촌경관관리목표 및 자발적 경관관리수단을 규정한 농촌경관보전협약 체결

##### ○ 일정지역단위로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경관계획수립' 추진

##### ○ 특정지역의 농촌경관의 상태에 따라 농촌경관관리단계를 구분하고 구성요소 별로 각각의 경관관리방안으로 구성된 '농촌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농촌경관지표 적용 → 경관맵 작성 → 경관보전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하는 ‘先농촌경관계획-後사업시행’ 체계 구축
  - 농촌경관지표, 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매뉴얼(안) 개발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시범적용 후 확정
- 농촌주택·마을, 농업시설, 마을숲 등 농촌경관 구성요소별 우수경관선정 및 홍보를 통해 농촌경관에 대한 관심 제고
  - 우수경관 DB화 및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홍보 등

####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각종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정에 先농촌경관계획기준을 시범적으로 적용
  - 대상사업 : 농촌지역개발사업(농산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정주·오지개발), 생산기반정비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 개발사업에 시범적용을 토대로 사업별로 일부수정이 필요한 경우, 先농촌경관계획 체계 보완
- 시범적용 후 보완된 先농촌경관계획 체계 확대 적용

(사업담당자 : 정주지원과 김현수 사무관, 연락처 : 02-500-2172)

### <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 지원
  - 조건불리지역은 낮은 농업생산성과 낮은 소득수준, 지속적인 인구감소,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지원도 부족하여 지역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
-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마을공동기금 조성(보조금중 30%이상) 등을 통해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조건불리지역의 입지조건에 맞고 특색있는 농촌개발 및 활성화 추진

##### ○ 사업추진방향

-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사회 유지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되, 경작지 소재 읍·면 거주 실경작자에게 지급
  - \* 단, 경작지와 소재지가 다른 농가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법정리를 포함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단위로 직불금 지급
  -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천이행 의무 부과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계기 제공
  - 환경보전,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농업생산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부과
-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의 밭,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지급

□ '07년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시장·군수
- 추진절차

<업무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자침 시달·홍보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행지침”시달(농림부)</li> <li>▪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면)</li> </ul>
↓		
② 대상마을 선정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 제출(시군)</li> <li>▪ 마을의 영농조건, 마을발전계획 등의 평가를 통해 대상마을 확정(시군)</li> <li>▪ 사업대상마을 확정 통지(시군)</li> </ul>
↓		
③ 마을대표 선정 및 사업신청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로 마을대표 선정, “마을협약” 작성</li> <li>▪ 마을대표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에 제출</li> </ul>
↓		
④ 대상자 선정	(5~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읍·면)</li> <li>▪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li> </ul>
↓		
⑤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 확정	(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의무 이행여부 자체 점검(마을자체)</li> <li>▪ 지급요건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li> <li>-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li> </ul>
↓		
⑥ 보조금 지급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급</li> <li>- 농가별로 지급(통장계좌 입금)</li> <li>-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li> </ul>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총사업비 : 745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525억원)
- 사업대상 : ① 경사도 14%이상 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내 농지  
               ②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내 농지  
               ③ 제주 토지이용적성등급 4·5등급내 농지
- 사업규모 : 187천ha (밭, 과수원, 초지)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 제외
- 지급단가 : 밭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 지급요건 : 마을공동기금 조성(보조금 30%이상), 농지관리 의무 등 이행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시·도별 배분내역('07년 내시안)

(단위 : 백만원)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1,378	39	77	905	49	1,360	13,315	5,010	1,108	1,932	9,163	9,681	4,049	4,690

○ 예 산

- 사업기간 : '04년 ~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6	33,065				33,065	13,959		47,024
2007	52,307				52,307	22,199		74,506
(증△감)	19,242				19,242	8,240		27,482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경사도 완화 등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추진

- 경사도 : ('07) 경사도 14% → ('08) 7%

- 예 산 : ('07) 523억원(187천ha) → ('08) 665억원(243천ha)

\*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부안에 반영

○ 지방비 부담비율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은 현행 30% 유지

○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갱신에 따른 경사도 수정분석과 이행점검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추진

(사업담당자 : 농지과 이영식 사무관, 연락처 : 02-500-1672)

## 라. 도·농교류 활성화

### (1) 개 관

#### □ '07년도 추진 방향 및 전략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전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여 내실있게 추진 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 유도
  -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 독려와 중장기적으로 도농교류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확충과 참여촉진을 위한 마케팅 추진
  -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시상,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개최, 농촌관광 포털 사이트 운영,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개최 등 도농교류 수요 창출
  -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마을사무장제도 운영과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
- 도시민의 성공적 농촌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지도, 소득사업 연계 지원, 귀농인 공동체 모임 운영 등 지원
- 농촌마을내 빈집과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도시민을 위한 전원생활공간 또는 마을주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
  - 농촌 빈집을 웰빙개념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농교류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촉진
- 1사1촌 자매결연 및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추진
  - 도농교류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가능

○ 예산

< 2007년 세부과제별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 과제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 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	23,063				23,063	5,766		28,829
도농교류활성화지원	4,981				4,981			4,981
도시민농촌생활지원	60				60			60
합계	28,104				28,104	5,766		33,870

□ '08년도 추진 방향

- 민간운동 내실화를 위한 자매결연, 교육지원 기능 강화 등 성공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지원 및 도농교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한 도농상생 구현
- 1사1촌 결연마을, 마을사무장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촌지역개발 인적 역량 강화 및 농촌마을 활성화 유도
- 도농교류 수요 창출을 위한 국민동참 프로그램 운영 및 농산어촌체험마을 사후 운영지원
-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보수집의 기회 제공과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이벤트,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메뉴에 포괄적으로 지원
- 농촌 정착 도시민의 전무가적 노하우와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농촌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추진



## (2) 세부과제

### < 4-4-1-0. 1사 1촌운동(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1사1촌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유도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전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유도

##### ○ 사업추진방향

-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정착
-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 독려
- 중장기적으로 도농교류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 □ '07년도 추진과제

##### 1.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 ○ 1사1촌 운동의 교류성과 창출('06~'08)을 위한 내실화 추진

- 도농교류촉진법(안)에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공동숙박 특례,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세제·금융지원 등 마련, 기업체, 학교 등의 동참 여건 조성
- 우리부 본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과의 날 행사, 현장학습 등을 활용 자매결연마을과 교류확대 실시
  - \* 자매결연 우수 실·국 및 기관에 자매결연 마을의 농산물구매 상품권 지급
- (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업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모금('07년 계획 100억원), 홈페이지 구축 등에 적극 측면지원
  - \* 기업체의 지정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 등록('06.12)

-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매결연 사례별 교류 실태 전수 조사(15천건, 상반기) 하여 실적이 미흡한 사례는 자매결연 사례에서 제외
- 자매결연 관리시스템을 상위 기관에서 체크하고 교류횟수·교류인원·교류금액 기준으로 단계별 관리 및 마을담당자 지정운영
- 1사1촌 자매결연 시범마을 육성('07년 15개) 및 소득자원 발굴 추진
- 자매결연마을 1명품·1명소 만들기 지원(330개)과 결연 기업체 홈페이지 마을상품 소개·판매 및 결연마을 활용한 기업 이미지 광고 유도 등 협조 추진

## 2.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육 지원

- 우리부 국장(주무과장)이 마을개발지도자과정(30회)에 직접 출강하여 FTA, 쇠고기 수입문제 등 생생한 농정현안을 설명
  - 지도자연수원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농업인교육훈련비(경영인력과) 및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축산정책과)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06년 마사회특별적립금 568백만원, 교육비지원)
  - 우리부 및 외청 4급이하 직원, 중앙부처·지자체 1사1촌 담당 공무원의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 입교토록 공문조치
  - 1사1촌 농촌사랑운동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농협간 지역개발 워크숍 개최(1/4분기중, 190여명, 제주)
- 마을지도자 과정의 비중 상향조정 및 수준별 맞춤형 연수로 교육과정을 세분화
  - 마을지도자 등 5개 과정('06 : 10,000 → '07 : 11,100명)을 운영, 1사 1촌 농촌사랑 이념 및 도농교류 실천 인력 육성
    - \* 마을지도자('06 : 3,100 → '07 : 4,100명)는 기본과정(30기, 2,400명), 심화과정(2기, 200), 현장연수과정(18기, 1,500)로 세분화
  - 1사1촌 자매결연 단계에 따른 연수과정별 차별화된 콘텐츠 적용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추진
    - \* 초기단계(이념·이론) → 사업시행단계(고객관리·마케팅, 경영·갈등관리) → 정착단계(고객분석, 장기비전 설정 등)

### 3. 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 ○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마케팅 추진

- 마을지도자, 기업·단체, 개인 등 도농교류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실시
  - \* 우수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및 연계 추진
- 1사1촌 농촌사랑운동의 성과보고 및 도농교류유공자 시상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340만 만남의 행사 개최(10월중, 제2회 농촌사랑지도자 대회와 병행 개최, 마을지도자, 기업 임직원, 도시민 등 34천명)
- 제2회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07.5.3~5.6)시 1사1촌 농촌사랑 부스 설치로 현장에서 자매결연 추진 및 홍보
-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과 연계하여 기업체·단체, 학교 등 자매결연 마을 방문 유도

#### ○ 다양한 교류사례 홍보로 저변확대 및 내실화 벤치마킹화

- 우수사례집 발간(1만부), 교류프로그램 개발방법 영상물제작보급(CD 1만개), 농촌사랑소식지(계간지, 매분기 3만부) 배포
- TV, 일간지를 통한 특집 기획기사 시리즈를 통해 대국민 홍보
  - \* 싱싱일요일(KBS-2TV), 6시내고향(KBS-1TV, 행복충전! 체험여행, 30회, 1.5억원), KBS 캠페인(농촌, 우리의 미래입니다. 6~7월, 50회, 5억원), 여름휴가캠페인(KBS-2TV, 7월, 5회, 2억원) 등
  - \* 홍보관리관실의 농업·농촌가치 홍보예산의 협찬 지원 강구

####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성과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 민간운동 내실화를 위한 교류실태 점검 및 교육기능 강화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이영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0)

## < 4-4-2-0.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농림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시민이 농산어촌에 주택을 가지고 노후, 여가를 농산어촌에서 보내도록 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마련 (전원마을조성사업)

\* '13까지 300개소의 전원마을 조성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체계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 사업추진절차
  - 대상지 신청 및 선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준공 → 운영 및 유지관리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기간 : 2004~계속
- 사업규모 : '07년도는 70개(계속 55, 신규 15) 전원마을에 조성을 추진하고, '13까지 전국적으로 300지구의 전원마을 조성

구 분	계	'04	'05	'06	'07	'08~'13
사업량(지구수)	300	2	28	25	15	230

- 지원형태 : 국비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조건 : 마을 규모에 따라 지구당 10~30억원을 2~3년간 지원
  - 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74호 20억원, 75~99호 25억원,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사업주요내용
  - 전원마을(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 마을 기반시설 및 공공성이 있는 시설 설치 등 지원
  - \* 택지 매입 및 주택 건축 등은 입주자 부담

○ 예 산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군특	기타회계	기금등	소계			
2006		26,000			26,000	5,200		31,200
2007		23,063			23,063	5,766		28,829
(증△감)		△2,937			△2,937	566		△2,371

□ '08년도 추진계획

-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 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을 종합하여 연계·추진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시행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도시민 유치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집행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
  - '07~'09년간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농촌이주 지원 토털서비스 확대
  - 행정리 단위로 교육·복지·문화·기초생활시설 등 생활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가칭)「삶의 질 서비스맵」 구축
  - 농촌이주에 필요한 정보분야별 전문상담체제 구축 등 오프라인 상담 및 고객 지향적 서비스 기획기능 강화
- 농촌주택정비 용자지원 개선
  - 농촌주택 신축·개량 지원금리의 인하 및 용자한도·지원대상 확대 추진

(사업담당자 : 정주지원과 박종민 사무관, 연락처 : 02-500-2175)

### < 4-4-3-1.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림부) >

#### □ 사업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활력증진 계기 마련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는 등 도·농간 상생 구현
- 도시·농촌주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에 대한 참여 활성화 도모
- 도시·농촌간 상호교류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도모

##### ○ 사업추진방향

-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개발·확충
-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속적인 전개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등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시행 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 보고(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시행대상 : 농촌주민, 도시민 등
- 사업규모 :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사회적 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추진

##### - 사업주요내용

- 1) 도농교류 수요창출사업 :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시상,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개최, 농촌 관광 포털 사이트 운영·관리,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개최, 도농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농촌지역개발 종합홍보

- 2) 농산어촌체험마을 사후지원 사업 :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평가회, 1인1촌 전문가 지원, 마을사무장제 운영
- 3)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 : 정부의 도농교류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도농교류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보조

○ 예산

- 사업기간 : '02년부터 ~ 계속
- 재원형태 : 정액 보조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또는 자부담	기 타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6	3,852				3,852			3,852
2007	4,981				4,981			4,981
(증△감)	1,129				1,129			1,129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농교류 수요 창출을 위한 국민동참 프로그램 운영 및 농산어촌체험마을 사후 운영지원
- 1사1촌 결연마을, 마을사무장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촌지역개발 인적 역량 강화 및 농촌마을 활성화 유도
-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지원 및 도농교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한 도농상생 구현

(사업담당자 : 농촌지역개발과 이영길 사무관, 연락처 : 02-500-1970)



### < 4-4-3-3.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농촌진흥청) >

#### □ 사업 개요

##### ○ 목적

- 은퇴 도시민 또는 귀농인 대상의 농촌정착 지원을 통하여 고령화·공동화에 의해 낙후된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 및 활력화에 기여
- 농촌 빈집을 웰빙개념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농교류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촉진

##### ○ 사업추진방향

- 농촌마을 내 빈집과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도시민을 위한 전원생활공간 또는 마을주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
- 도시민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지원 병행
  - 영농기술 지도, 소득사업 연계 지원, 귀농인 공동체 모임 운영 등
- 농촌 정착 도시민의 전문가적 노하우와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농촌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5도 2촌,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이 전원으로 회귀하는 국가적 모델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농어촌 주거 모델개발 및 정주지원 확대추진('05.3.22 국정과제 조정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 '07년도 추진계획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절차 : 추진방향 및 기본지침 마련(농촌진흥청) → 사업지역 선정 및 추진점검(도농업기술원) → 대상농가 선정(시군농업기술센터) → 담당공무원·사업대상자 교육(농촌진흥청) →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 내용(신규사업)

- 사업 지원대상 : 농촌에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 주민 또는 도시민, 마을 내 방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는 마을공동 시설물 또는 공간을 도농교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법인 또는 영농법인

- 사업 규모(사업량) : 12개소

- 지원금액 : 60백만원 (개소당 1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지원조건

- 은퇴 후 마을 내 정착 예정자 또는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으로서 마을 개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사업지역 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도시민의 경우 사업 후 개보수한 주택을 도농교류시설, 마을의 공동문화공간,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과의 협의가 된 자
- 건축물의 개요, 이력 검토결과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 주택 소유자로서 조립식 주택이 아닌 건축물 활용가능 자
- 마을공동 시설물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마을 또는 법인의 자산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보수 활용에 대한 마을주민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 주요내용

- 농촌마을 내 방치된 빈집, 불량한 주택 부속건물 리모델링
  - 도시민 5도2촌 전원생활, 귀농인 농촌정착 활용, 마을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 농촌마을 내 방치된 마을공동 시설물 및 공간 리모델링
  - 도농교류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작업장으로 활용
  - 잠재 귀농 희망자의 농촌정착 체험시설

- 시도별 배분내역

(단위 : 개소)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2	1	1	2	1	2	1	2	1	1

○ 예산

- 사업기간 : '06년 ~ '20년 (총 1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400					400		800
2007	60					60		120
(증△감)	△340					△340		△680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보수집의 기회 제공
-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이벤트,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메뉴에 포괄적으로 지원
-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연차 지원
- 농촌 정착 도시민의 전문가적 노하우와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농촌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사업담당자 : 농촌자원과 정명갑 생활지도사, 연락처 : 031-299-2672)

## <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농림부) >

### □ 사업 개요

#### ○ 목적 및 기대효과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1사1촌자매결연 및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농교류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가능

#### ○ 사업추진방향

- 농촌체험관광 및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이 민간주도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부여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07년도 추진과제

#### ○ 입법추진체계

- 입법추진주체 : 농림부
- 입법계획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07.4) → 규제 및 법제처심사('07.4~5) →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07.6) → 국회제출('07.6)

#### ○ 주요 법안내용(안)

-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
-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확대
- 농촌정주 희망 도시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도농교류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
-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 ○ 예산(비예산사업)

### □ '08년도 사업 기본방향

- 법 제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사업담당자 : 농촌정책과 박중신 사무관, 연락처 : 02-500-1955)